

월간
재정포럼 5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5월호 제143호

현안분석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김승래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 우석진 · 조진권

정책토론포트 •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연구 •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외

정책흐름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p>권두칼럼</p> <p>현안분석</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p>정책토론포트</p> <p>정책연구</p> <p>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p> <p>정책흐름</p> <p>재정통계</p> <p>이슈 & 포커스</p>	<p>02 바람직한 신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 김성태</p> <p>06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 김승래</p> <p>29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 조진권</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p>46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p> <p>80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 박기백 · 박상원 · 손원익</p> <p>82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박형수 · 전병목 · 박상원 · 박기백 · 김현아 · 이창용 · 이항용</p> <p>87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 · 김현아</p> <p>89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p> <p>93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p> <p>97 미국, 1억 3천만 가구에 세금 환급 외</p> <p>105 '08. 1분기 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p> <p>108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p> <p>114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p> <p>117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p> <p>122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p> <p>1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p> <p>129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p> <p>136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p> <p>143 내국세 납세 인원 외</p> <p>148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 소득세 인하 고려 안해 외</p>
---	--

바람직한 신정부의 세계개편 방향



김성태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신정부는 대통령선거에서 ‘747’이라는, 실현 가능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치솟는 유가와 곡물가격,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은 금융경색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도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는 경제운용을 고집하지 않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여 약간이나마 정책 선로를 변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성장의 유지보다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 집권 5년 기간은 세계경제가 유사 이래 최고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우리 경제여건도 좋아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한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분배와 복지에 너무 신경쓴 나머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쇠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세계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시점을 놓치고 말았고 나중에는 유아무야 끝나고 말았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업과 가계 및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준거가 되는 게임의 룰을 개혁하는 것인데 바로 세계개혁이 그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세계를 어떻게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무릇 세계는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에 의한 국민경제의 후생 감소를 극소화시켜야 하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세부담을 형평에 맞게 배분시켜야 하며, 조세행정 측면에서는 징수와 납세순응 비용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단, 현

실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개선되는 세제개편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할 수 없이 서로 상충되는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효율성과 형평성 간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신정부 세제개편의 방향은 당연히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성장 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세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성장 친화적인 세제개편의 세 가지 원칙

성장 친화적인 세제개편을 위한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세율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투자의 세후수익률을 제고시킴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증대시키고, 세후 임금률을 제고시킴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기를 유인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세율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행 세제에 산재해 있는 비과세와 감면을 대폭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세제개편의 두 번째 원칙은 세제의 단순화와 간소화이다. 우리나라 세제는 세목의 수도 31개로 너무 많고 개별 세제의 세율구조도 복잡하고 갖가지 특례조항이 많아 전반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이같이 복잡한 세제는 효율성비용을 증가시키고, 조세행정비용도 크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따라서 세제를 보다 단순화하고 간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세목의 수를 줄이고, 조세의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고 과세구간을 줄여야 한다. 또한 납세절차는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개편의 세 번째 원칙은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세수 중립적인(revenue neutral) 세제개편이라 함은 세제를 어떻게 고치든 현재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감세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감세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요가 향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고려할 때 자칫 잘못 하면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제개편 시 현재의

.....
 신정부 세제개편의 방향은 당연히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성장 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세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

바람직한 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에 의한 국민경제의 후생감소를 극소화시켜야 하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세부담을 형평에 맞게 배분시켜야 하며, 조세행정 측면에서는 징수와 납세 순응 비용을 극소화시켜야 한다.

세수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원을 넓혀 세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의 시점과 추진방안이다. 신정부의 세제개편은 아무리 늦어도 집권 초기 1년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한다. 물론 모든 세제를 1년 안에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향후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안과 일정을 1년 안에 확정하여 천명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의 적정 시점을 놓치면 이 정부에서 세제개편은 또 다시 힘들어질 것이다.

끝으로 성장친화적인 세제개편의 구체적인 틀을 잡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국제 조세경쟁에 대비하여 소득세 비중을 감소시키고 소비세 비중을 증가시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세목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여 세원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환경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재정의 분권과 지방자치제의 착근을 목표로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 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제개편의 초점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맞추어져야 될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

미래형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승래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진권 ·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회계사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미래형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srkim@kipf.re.kr)

최근 급등하는 고유가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자동차, 연료전지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I. 문제의 제기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속가능발전’ 이란 명제하에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자동차 관련 무역규제로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대내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대기오염 방지 측면에서 각종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의 억제나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은 아직 미진한 편이다.

최근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하는 고유가로 인해 대체연료의 개발과 환경친화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하이브리드차¹⁾, 저공해자동차, 연료전지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997년 도요타 프리우스의 판매를 시작으로 연평균 120%의 시장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일본업체가 세계시장의 94%를 점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하이브리드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북미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자동차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향후 크게 증

1) 여기서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란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료엔진과 연료전지, 천연가스와 가솔린엔진, 디젤엔진과 전기모터 등 2개 이상의 동력원을 함께 쓰는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모터와 가솔린엔진을 함께 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고효율과 배기가스 절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환경친화자동차는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과 비슷한 기술경쟁을 벌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자칫 붕괴될 수도 있어 관련 기술개발 및 시장 확보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유럽, 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친화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감면과 다양한 정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정부가 앞장서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는 완전 청정자동차가 지금의 내연엔진 자동차처럼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절대강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므로, 우리나라가 30년 뒤에도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수출대국 지위를 지키려면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독자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신규 기술개발 촉진 및 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는 먼저 제Ⅱ장에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및 정책 목표를 알아본다. 제Ⅲ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구조 및 환경친화자동차 지원 현황을, 제Ⅳ장에서는 일본, 유럽, 미국 등의 환경친화자동차 세제지원의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해외사례 및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제Ⅴ장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세제지원 방안 및 전략을 논한다.

II.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및 정책 목표

세계 자동차시장은 2007년말 7,310만대에서 2021년에는 1억대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2007년 기준으로 408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그러나 2008년 4월 22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중국 시장점유율에서 6.6%를 보인 반면 일본은 2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연료 절감, 친환경 기술 등을 앞세운 차종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각종 환경문제의 심화로 말미암아 미래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문제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등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하여 최근 고유가의 지속과 환경문제의 심화로 인해 그동안 자동차산업을 지배해오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라는 신개념의 자동차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편이지만 2014년에는 25%, 2020년에는 43%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등록대수도 2007년말 기준 1,642만 8,245대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자동차등록대수가 총 757만 8,907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등록대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표 1>에서와 보듯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78.0%, 질소산화물은 35.6%, 미세먼지는 46.2%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공해 관리는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등 신규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공해 엔진개발 및 연료개선을 촉진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현황(전국, 서울시, 2004년)

(단위: 톤/년)

배출원(대분류)	Co	NOx	SO ₂	PM10	VOCs
전국배출량	816,954	1,377,526	446,804	62,491	797,240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636,938 (78.0%)	490,481 (35.6%)	6,600 (1.5%)	28,898 (46.2%)	112,435 (14.1%)

자료: 『환경백서 2007』, 환경부

이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각종 환경문제의 심화로 말미암아 미래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자동차업계의 최대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2005년 기준)와 그 증가율이 1위로 향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2차 의무이행 당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국가경제의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 및 예산개혁의 경우, 김승래(2006)에 따르면 <표 2>에서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 기존의 환경적으로 유해한 각종 보조금이나 면제조항은 점진적으로 철폐 ② 환경세 신설을 현행 조세시스템 개혁과 적극적으로 연계 ③ 노동, 자본 및 기타 비환경 관련 소비세 부과대상(개인소득세, 자본과세, 사회보장부담금, 또는 각종 비효율적 특소세)으로부터 환경친화 관련 세원(각종 친환경상품세 신설, 탄소세 등)으로의 점진적 조세부담 이동(tax burden shift)을 통하여 기존 조세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완화 ④ 정부예산편성의 경우,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하고 각종 환경기술/산업 관련 투자(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환경친화자동차 등)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환경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효율적인 정비는 종합적인 차원의 조세 및 예산시스템의 개혁방안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 조세 및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며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신기술보급률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요패턴의 정착과 청정산업 생산기술의 축적은 가장 시급한 요소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력을 자생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내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선진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우리나라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차량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에 따른 조세지원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우리나라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신성장동력의 확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조세 및 예산개혁의 주요 방향과 예시

주요범주	대상 및 내용 예시
환경유해 조세지원 및 보조금 철폐	- 환경에 유해한 조세지원 및 보조금은 광범위하게 정의 OECD국가에서 농업, 에너지, 전력, 도로운송, 물공급, 산업 및 농업용수, 수산업 등 분야에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유발 - 석탄, 특정용도 석유류, 전력, 물, 비료, 폐기물, 농업투입물, 일부 오염산업, 수송, 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조금 폐지
신규 환경세 도입	- 기후변화협약 대비 탄소세 도입, 탄소저감형 에너지 관련 세제 등
기존 환경세제 강화 및 세입비중 조정	- 배출부과금(수질, 대기), 환경 및 수질개선 부담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특소세, 석유류 수입/판매부과금, 자동차관련 세제, 석탄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 쓰레기종량제, 폐기물 예치금/부담금/수수료, 유독물질 부담금, 항공기소음부담금, 자원채취 사용료, 농지 및 산림 조성비,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의 합리화를 일반세제 개편과 적극 연계
환경관련 정부지출 및 투자 확대	- 에너지절약형 산업, 환경친화자동차, 친환경 제품 및 청정기술(R&D), 환경보전 산업,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산업, 수소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투자 촉진, 가속감가상각 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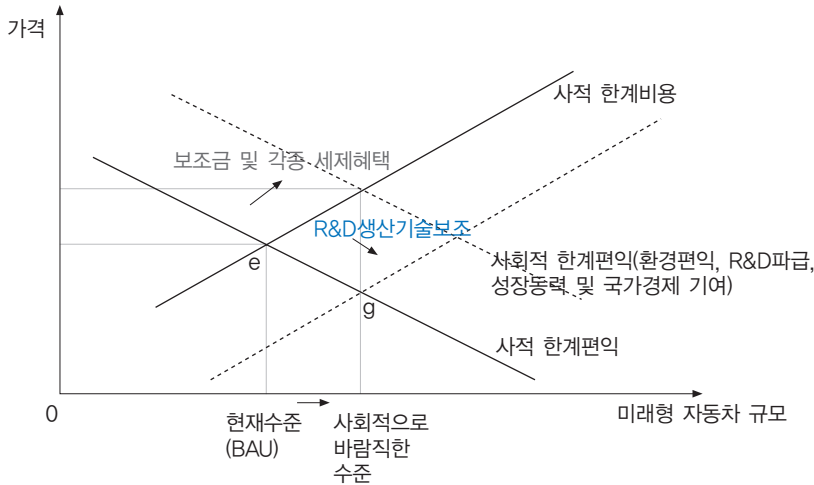
자료: 김승래(2006)

우리나라도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확보와 미래 신성장동력의 확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환경친화자동차의 보급은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R&D 투자 촉진 및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생산 및 투자 패턴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하고 또한 구매자 소비패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대비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송부문의 친환경화로 배출가스 대기오염의 저감에 기여함이 요구된다.

또한 친환경생산기술 및 지식의 경우, 막대한 초기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투자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실행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의 긍정적 비용 효과성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R&D) 투자 촉진 및 적정 수요 확보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정책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그 수급을 현행 수준(BAU)에 대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²⁾.

2)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환경오염의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과 친환경기술 R&D 파급효과 등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그림 1]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대비 낮은 e점에서 초기 균형이 이루어져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가져온다.

[그림 1] 미래형 자동차의 적정 지원 규모



이러한 자동차 관련 조세 및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취득단계, 보유단계, 운행단계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III.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현황

1. 자동차 관련 세제 구조

자동차가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조세 및 공과금은 <표 3>과 같이 일반적으로 취득단계, 보유단계, 운행단계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취득단계에는 특별소비세, 자동차특별소비세분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이 있으며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³⁾. 그리고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분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LPG 등), 특별소비세분 교육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 수입차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업자의 수입부과금, 수입유류에 대한 관세, 보험료 등이 자동차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3)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해 자동차와 유류분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최근 한미 FTA 협상으로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하여 일부 관련 세목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표 3〉 우리나라 자동차/에너지 관련 세제 현황

		징수주체	과세표준	세율(한미FTA 이후)
구매 단계	특별소비세 ¹⁾	국세	승용자동차의 출고가 (수입차는 관세 8% 부과 후)	0, 5, 10% ²⁾ (0, 5, 5%)
	교육세	국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액	30%
	부가가치세	국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 후)	10%
	취득세	지방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 후)	2%
	등록세	지방세	자동차 가격 (특소세 및 특소세분 교육세 부과 후)	5%
	관세	국세	수입 승용차	8%(0%)
보유 단계	자동차세	지방세	승용차 배기량	cc당 80원~220원 (80원~200원)
	지방교육세	지방세	자동차세액	30%
이용 단계	교통세 ³⁾	국세	휘발유 경유	리터당 630원 리터당 350원
	교육세	국세	교통세액	15%
	주행세	지방세	교통세액	26.5%(32.5%)
	부가가치세	국세	휘발유, 경유, 부탄	10%

주: 1)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력세율
(예, 2004.03.24부터 2005.12.31까지 승용차 세율 20% 인하, 4%와 8%가 적용되었음)
2) 800cc 이하 경차 면제, 2000cc 이하 중소형 5%, 2000cc초과 대형 10%
3) 제시된 수치는 기본세율이며, 기본세율의 3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력세율 (2007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 변경)
4) 교육세, 교통세는 목적세(한정시한)로서, 이 중 교통세는 일몰시한이 3년 연장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2009년까지 운영되며, 세수는 건교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80%(종전85.8%),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그 편입분 중 3%는 산지부의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로 15%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용

이러한 자동차 관련 세제는 1970년대 말에 기본체계가 갖추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1996년에 교통세분 교육세가 신설되었으며 1999년에 등록세분 교육세와 농특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세가 인하되었다. 2000년에는 면허세가 폐지되고 주행세가 신설되었다. 2001년에는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조치가 이루어졌고 2003년에는 특소세가 인하되었으며 최근 2007년에는 경유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최근 한미 FTA 협상으로 미국측이 대형차 위주의 수입차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 시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하여 일부 관련 세목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⁴⁾. 이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특소세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0%(경차; 800cc이하), 5%(소·중형; 2000cc이하), 10%(대형; 2000cc초과)의 3단계로 차등 과세되고 있는데, 이 중

4) 이러한 세제개편은 우리나라의 현행 배기량 기준의 누진 세율 구조를 크게 완화시켜 대형차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승래·박상원(2006) 참조.



에서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2000cc 초과の特소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여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유단계의 현행 자동차세는 800cc 이하(cc당 80원), 1000cc 이하(cc당 10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2000cc 이하(cc당 200원), 2000cc 초과(cc당 220원)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되고 있는데, 한미 FTA 타결로 향후 3단계인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2000cc 초과(cc당 200원)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로, 배기량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cc당 세액은 배기량과 영업용 여부에 의해 달라지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세액의 $5/100 \times (\text{차령} - 2)$ 만큼을 공제한다.

그리고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담세력에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부과한다. 이 때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종류와 차령에 따른 과세기준이 적용되며 취·등록세 세율은 각각 2%이다. 세수 측면에서 보면, 교통세의 규모가 커서 국세의 6.5% 정도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이 그 다음 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관련 세수는 전체 세수 대비 15~16%를 차지하고 있다.

보유단계에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차등 과세되고 있는데 한미 FTA 타결로 향후 3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세수 측면에서 보면,
교통세의 규모가 커서
국세의 6.5% 정도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이
그 다음 순이다.

〈표 4〉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목 및 세수 구성

(단위: 억원, %)

단계	세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¹⁾
취득 단계	특별소비세 ²⁾	6,882 (4%)	8,329 (4%)	10,866 (5%)	11,001 (5%)	5,898 (3%)	7,602 (3%)
	교육세 (특소세분) ³⁾	2,065 (1%)	2,499 (1%)	3,260 (1%)	3,300 (1%)	1,769 (1%)	2,281 (1%)
	부가가치세 (자동차분) ⁴⁾	14,490 (8%)	23,630 (12%)	29,287 (13%)	23,022 (10%)	18,592 (8%)	21,574 (9%)
	취득세 ⁵⁾	4,996 (3%)	5,384 (3%)	6,603 (3%)	5,970 (2%)	5,362 (2%)	5,258 (2%)
	등록세	8,612 (5%)	9,615 (5%)	12,015 (5%)	10,933 (5%)	9,942 (4%)	11,185 (4%)
보유 단계	자동차세 ⁶⁾	22,586 (12%)	20,947 (10%)	19,580 (9%)	20,226 (8%)	20,555 (9%)	21,660 (9%)
	지방교육세 (자동차분) ⁷⁾	6,776 (4%)	6,284 (3%)	5,874 (3%)	6,068 (3%)	6,167 (3%)	6,498 (3%)
이용 단계	교통세 ⁸⁾	84,963 (46%)	86,266 (42%)	94,775 (41%)	106,832 (44%)	100,981 (44%)	103,257 (41%)
	교육세 (교통세분) ⁹⁾	12,744 (7%)	12,940 (6%)	14,216 (6%)	16,025 (7%)	15,147 (7%)	15,489 (6%)
	주행세	2,538 (1%)	5,420 (3%)	10,634 (5%)	12,658 (5%)	17,503 (8%)	22,925 (9%)
	부가가치세 (유류분) ¹⁰⁾	19,727 (11%)	22,336 (11%)	21,743 (10%)	24,781 (10%)	29,433 (13%)	31,753 (13%)
자동차 관련세 총계		186,379	203,650	228,853	240,816	231,349	249,481
자동차 관련세/ 세수 총계		17%	18%	18%	17%	16%	15%
자동차 관련 국세/ 국세 총계		16%	17%	18%	17%	16%	14%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방세 총계		22%	18%	17%	17%	17%	18%

주: 1) 2005년 일부 자료는 부처 내부자료를 참고한 수치

2) 8) 수입차분을 포함한 수치이며, 신고기준으로 계상 (자료: 재경부 내부 자료)

3) 특별소비세의 30%로 계산

4) 10) 자동차공업협회자료 참조

5) 등록세와 취득세는 신규등록(취득)외에 이전등록(취득)시에 부과된 금액을 포함

6) 징수가 아닌 부과기준 자료

7) 자동차세액의 30%로 계산

9) 교통세의 15%로 계산

자료: 김승래 · 박상원 (2006)에서 재인용

(『지방세정연감』 각 연호, 『국세통계연보』 각 연호, 행자부 및 재경부 자료)



2. 환경친화자동차 세제지원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10월에 '환경친화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로서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자동차로 정의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구매 및 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운행단계에서의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그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소연료의 생산, 공급, 판매자 및 수소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자금, 세제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먼저 환경부의 주관하에 2004년 50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780대 보급을 추진하였다. 시범운행단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8백만원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구매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대당 14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 구입분은 국고에서 50%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클릭과 베르나(1,399cc),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1,399cc)를 보급차종으로 선정하고 수도권 및 수도권 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로 보급대상지역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실적을 평가한 후 2009년부터 계획을 재수립하여 일반소비자 및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일반인에게 상용화되는 시점부터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계획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양산 및 성공적인 보급과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09~'11년)에서는 국산화 및 양산진입 단계로 국내 시장에 총 75,000대를 정부지원을 통해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공공기관 및 국내 소비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그리고 2단계('12~'15년)에는 하이브리드차의 양산 및 수출산업화 단계로 국내 시장에는 41만대를 정부지원을 통해 보급하고, 34만대를 수출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양한 세제혜택 통해 국내 소비자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계획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양산 및 성공적인 보급과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고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표 5〉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계획안

	1단계 (’09~’11년)	2단계 (’12~’15년)	합 계
개발 및 상품화 전략	국산화/양산진입	양산 및 수출산업화	-
양산물량(만대)	7.5	75	82.5
국내보급물량(만대)	6.5	41	47.5
수출물량(만대)	1	34	35
대당차액(만원/대)*	350 (Soft Type HEV)	250 (Hard Type HEV)	-

주: 대당차액은 선진국의 일반 휘발유차량과 하이브리드차량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추정.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휘발유차량과 하이브리드차량과의 가격차이는 현재 배기량별로 다르나 통상 약 3000\$ 수준으로 나타남. 2단계에서는 양산 및 수출산업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하락액 30%를 고려하여 대당차액을 추정함.
자료: 환경부(2007)

이러한 정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고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하다. 또한 고가의 하이브리드 부품, 정비인프라의 부족 및 부품 표준화의 미흡 등이 보급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친환경 건축 기준과 에너지효율 기준에 따라 지어진 친환경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 대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조속히 가령 경차수준으로 늘려 고연비 차량의 구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형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자동차산업 관련 각종 친환경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연비기준 및 오염배출 관련 세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IV. 환경친화자동차 세제지원 해외사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를 취득·보유·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과세표준과 기준 및 세부담은 다양하다. 또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 부하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즉, 최근 유럽 국가들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₂ 배출량을 고려하는데, 이는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차의 양산단계에 들어선 일본은 1998년부터 시기별로 적절한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과하여 환경친화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보급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에 일본, 유럽,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서 환경친화자동차의 시작단계인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차의 양산단계에 들어선 일본은 1998년부터 시기별로 적절한 각종 정부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과하여 환경친화자동차를 성공적으로 보급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 일본

일본은 환경보호 관점에서 자동차세제와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상호 연계하여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실시하여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저배출가스차 인증제도를 <표 6>과 같이 시행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저공해 가솔린차 및 대체연료차에 대해 ‘자동차 그린세제’ 시행하였다. ‘자동차 그린세제’는 질소산화물(NO_x), 입자상물질(PM) 등의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한편, 일정 연수가 지나 환경 부하가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2년 9월부터 ‘자동차 NO_x·PM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질소산화물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기준적합차로 대체하는 경우에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을 추가로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나 LNG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경감해 준다.

<표 6> 일본의 저배출가스차 인증제도

인증 레벨	기준	표기
2005년 배출가스 기준	☆☆☆☆	2005년 규제치 75% 저감차 ☆☆☆☆저배출가스차
	☆☆☆	2005년 규제치 50% 저감차 ☆☆☆저배출가스차
2000년 배출가스 기준	☆☆☆	2000년 규제치 75% 저감차 超-저배출가스
	☆☆	2000년 규제치 50% 저감차 優-저배출가스
	☆	2000년 규제치 25% 저감차 良-저배출가스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은 2004년 세법개정을 통해 '저배출가스차 인증제도'와 '자동차연비성능평가·공표제도'를 활용하여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본은 개인사업자, 법인(지방공공단체 출자법인 등) 및 리스회사 등이 신규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지방정부나 기업 등이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반차량 가격과의 차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100만대 이상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총리지시에 따라 2002년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공용차를 '클린구입법 기초방침'에 따라 대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방침을 따라 CNG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저공해차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만대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보유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관할기관의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2004년 세법개정을 통해 '저배출가스차 인증제도'와 '자동차연비성능평가·공표제도'를 활용하여 세계상의 우대조치를 시행하였다. 우선 2004년도의 세계개편에서는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 취득세의 특별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저배출가스인정차(신☆☆☆, 신☆☆☆☆), 연비기준 달성차, 연비기준 +5% 달성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시기간은 2004~2005년의 2년간이며 경감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그리고 2001~2005년도에 신차 신규 등록 시점으로부터 11년을 초과한 경유차(휘발유차·LPG차는 13년을 초과한 차)는 자동차세를 10% 중과세하였다.

<표 7> 일본의 자동차세 그린화 내역(2004~2005년)

	신☆☆☆차(저배출가스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50%달성)	신☆☆☆☆차(저배출가스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달성)
2010년도 연비기준 달성차	-	자동차세 25% 감면, 자동차 취득세 20만엔 공제
2010년도 연비기준 +5% 달성차	자동차세 25% 감면, 자동차 취득세 20만엔 공제	자동차세 50% 감면, 자동차 취득세 30만엔 공제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또한 2006년 4월부터는 종래보다 세제 혜택의 범위가 줄어들었으나, <표 8>과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2006~2007년 2년간 자동차세의 그린화 및 자동차취득세의 특례조치대상이 되는 저배출가스차 중 연비기준 + 20% 달성차 또는 연비기준 + 10% 달성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계지원을 하기



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및 메탄올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50%를 감면하고 자동차취득세도 경감해주었다.

〈표 8〉 일본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가솔린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저감차 (신☆☆☆☆저배출가스차)
2010년 연비기준 +10% 달성차	자 동 차 세 : 25% 경감 자동차취득세 : 15만엔 공제
2010년 연비기준 +20% 달성차	자 동 차 세 : 50% 경감 자동차취득세 : 30만엔 공제

주: 경자동차는 자동차취득세 감면조치만 있음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

〈표 9〉 일본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체연료차)

	2005년 배출가스기준 75% 저감차 (신☆☆☆☆저배출가스차)
하이브리드차(승용차)	자동차취득세 : 2.2% 경감
하이브리드차(상용차) ¹⁾	자동차취득세 : 2.7% 경감
전기자동차(연료전지차 포함), CNG차, 메탄올차	자 동 차 세 : 50% 경감 자동차취득세 : 2.7% 경감

주: 1) 버스, 트럭을 포함함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

그리고 2007년 세제개정에서는 저공해차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였다.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버스, 트럭)에 대한 자동차취득세를 연장한 반면 하이브리드승용차는 기존의 2.2% 감면에서 2008년 이후에는 1.8%로 감면폭을 축소하였다. 또한 저공해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는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8년 세제개정에서는 2년간(2008~2009년) 2009년도 자동차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취득세의 1%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취득세의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다만 200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0.5%로 축소하여 감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1년을 초과한 경유차(휘발유차·LPG차는 13년을 초과한 차)는 자동차세를 10% 증과세한다. 한편 일본은 대도시지역에서의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버스, 트럭사업자를 중심으로 CNG 버스나 트럭 등의 도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도 예산액 2,233백

2008년 세제개정에서는 2년간(2008~2009년) 2009년도 자동차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한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취득세의 1%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취득세의 특례조치를 신설하였다.



2006년 4월부터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및 메탄올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는 50%를 감면하고 자동차취득세도 경감해주었다.

만 엔을 배정하였다. 그래서 버스·트럭사업자가 CMG 차량을 신차구입(버스: 2대, 트럭: 3대로 한정)할 경우에 국가와 지방단체가 통상 차량가격과의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며, 사용경과차량을 CNG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개조비의 3분의 1을 보조한다.

〈표 10〉 일본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제도 개요(2006년도)

번호	보조제도	대상차종					대상자/보조내용	창구
		FCV	EV	CNG	HB	기타설비		
보조제도	1 저공해차(代에너지·省에너지)보급사업		●	●	●	●	지방공공단체/저공해차의 도입(구입 및 리스), 연료공급시설 정비	환경성
	2 차세대저공해차보급사업	●				●	지방공공단체/연료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DME자동차리스 도입	환경성
	3 저공해차보급촉진대책비 보조			●	●	●	버스·트럭사업자/저공해차 도입, 신장기규제 적합차 도입, 운행경유차의 CNG처리의 개조	국토교통성
	4 클린에너지자동차도입 촉진사업		●	●	●	●	민간사업자/클린에너지자동차 도입, 연료공급시설 정비	(사)일본가스협회 등
세제상 우대조치	1 저공해차의 자동차세경감 조치(자동차세의 그린화)	●	●	●		●	저공해차를 '06, '07년도에 구입한 경우 구입연도 다음연도 1년간 자동차세를 경감	-
	2 자동차 취득세 경감조치	●	●	●	●	●	FCV, EV, CNG, HB차의 취득시 자동차 취득세 경감	-
	3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 특례조치					●	저연비및저배출가스인정차(LPG차 포함) 취득시 일정액을 취득가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과세표준 특례조치	-
	4 디젤차에 관한 자동차취득세 경감조치					●	새로운 장기규제적합 또는 2015년도를 목표로 하는 연비기준달성차의 취득시 자동차취득세를 경감	-
	5 자동차NOx·PM법배출 기준적합차 자동차취득세 경감					●	트럭·버스 등, 자동차NOx·PM 법배출기준부적합차를 폐차하고 적합차 취득시 자동차취득세 경감 지정된 저공해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연도의 익년도1년간의 자동차세 경감	-
	6 소득세·법인세 우대조치	●		●	●	●	저공해차및 저공해차용 연료공급시설 취득에 관한 특별상각제도 또는 세액 공제조치	-
	7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저공해차용 연료공급시설)					●	연료공급설비 설치 관련,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8 고정자산세 특례조치					●	배출가스규제에 적합한 특정특이자동차에 관한 고정자산세 특례조치	-
재정투자유자제도	1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저리용자	●	●	●	●	●	주식회사·조합·재단법인 등 조직 형태의 기관	일본정책투자은행
	2 중소기업금융공고(公庫)의 저리용자		●	●	●	●	중소기업금융공고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금융공고
	3 국민생활금융공고(公庫)의 저리용자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국민생활금융공고

주: FCV : 연료전기차, EV : 전기차, CNG : 천연가스차, HB : 하이브리드차, 기타 : 메탄올자동차와 저PM인정차, 저연비및저배출가스인정차, 최신배출가스규제적합차, 디젤미립자제거장치 등
 자료: 일본 환경성, 『低公害車 가이드북 2006』



2. 유럽

유럽에서는 '유럽 수소 및 연료전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CUTE(Clean Urban Transport for Europe) 프로그램과 같은 수소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003년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첫 번째 연료전지 버스의 운행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EU는 2010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사업용차량(passenger cars)에 대해 CO₂ 배출량을 현재의 175.9g/km에서 120g/km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수소 및 연료전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CUTE 프로그램과 같은 수소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표 11〉 유럽 각국의 자동차 관련세의 과표 및 기준

국 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비영업용 기준)	
	부가가치세 세율(%)	물품세 혹은 등록세		과표 ¹⁾	기준 ²⁾
		과표 ¹⁾	기준 ²⁾		
오스트리아	20	구입가격	연비	동력 (KW)	동력 (KW)
벨 기 에	21	고정액	배기량, 차령	고정액	배기량
독 일	16	없음	-	배기량	CO ₂
덴 마 크	25	가격	가격, 차령	고정액	연비, 무게
스 페 인	16	가격	배기량	고정액	마력
핀 란 드	22	가격	-	고정액	차령, 무게
프 랑 스	19.6	없음	-	없음	-
그 리 스	19	배기량	배기량	고정액	배기량, 마력
아 일 랜 드	21	가격	배기량	고정액	배기량
이 탈 리 아	20	고정액	마력	동력 (KW)	동력 (KW)
룩셈부르크	15	없음	-	고정액	배기량
네 덜 란 드	19	가격	유류	고정액	무게, 유류, 지역
포 르 투 갈	21	배기량	배기량	고정액	배기량, 차령
스 웨 덴	25	없음	-	고정액	CO ₂
영 국	17.5	없음	-	고정액	CO ₂

주: 1) 과표가 고정액이란 것은 기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한 그룹에 속하는 자동차는 동일액수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

2) 기준이란 세율(혹은 세액)구간을 나누는 기준을 의미.

자료: www.acea.be; 김승래·박상원(2006)에서 재인용

우선 영국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유세를 유류와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1992년까지 자동차 보유세인 Vehicle Excise Duty(VED)는 모든 차에 정액으로 부과되었으나, 이후 점차 개정되어 2001년



배기가스 배출량은 연료소비량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지므로, 배기가스 배출량기준에 따른 보유세는 연비기준에 따른 보유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3월에 기존의 보유단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CO₂ 배출량으로 개편하여 완전히 배기가스 배출량과 유류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CO₂ 배출량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엔진크기(배기량) 기준으로 세제를 보완하고 있다. 배기가스 배출량은 연료소비량과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가지므로, 배기가스 배출량기준에 따른 보유세는 연비기준에 따른 보유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2002년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표 12〉 영국의 Vehicle Excise Duty (VED)

(단위: 파운드)

CO ₂ 배출량(g/km)	경유	휘발유	대체 원료
100 이하	0	0	0
101~120	50	40	30
121~150	110	100	90
151~165	135	125	115
166~185	160	150	140
186~224	195	190	180
225 이상 ¹⁾	215	210	200

주: 1) 2250이상은 2006년 3월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만 해당

2) 2001년 3월 이후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소유 기준

자료: www.dvla.gov.uk

한편 선진국에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동시에 청정연료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유차의 자동차세는 휘발유차의 약 5배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과세기준을 CO₂로 개편한 영국은 경유차의 세율에 대해서는 동급의 다른 연료 차량의 세율에 비해 3%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는 최저세율인 15%보다 낮은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및 가스차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저공해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EURO IV 기준을 조기 달성하는 차량과 CO₂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부터 5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휘발유차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Motor Vehicle Registration Tax는 연비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취득단계의 조세로, 새로 등록하는 신차에 부과되는 세



금으로 과세표준은 총구입가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구입가격(net purchase price)이며 승용차에만 적용된다. 만일 연비가 동일하더라도 사용유류에 따라 달라지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동시에 청정연료차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표 13〉 오스트리아의 Motor Vehicle Registration Tax (2002년 12월 기준)

종 류	구 분	세 율 (%)
모터사이클	엔진크기 125 ccm 이하	0
모터사이클	엔진크기 125 ccm 초과	$(\text{ccm}-100) \times 0.02$
경유차	연비 10ℓ/100km 미만	$(\ell/100\text{km}-2) \times 0.02$
경유차	연비 10ℓ/100km 이상	16
휘발유차	연비 11ℓ/100km 미만	$(\ell/100\text{km}-3) \times 0.02$
휘발유차	연비 11ℓ/100km 이상	16

주: 연비를 계산할 때 경유차는 경유 리터를, 휘발유차는 휘발유의 리터를 의미
 자료: Steve Berno(2002)

덴마크는 1997년 7월부터 Green Owner's Tax를 도입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연비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연비기준은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모터사이클, 버스, 밴 등은 무게 기준으로 부과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모두 무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승용차 제조업체는 EU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여 제공하며 매우 세분된 연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LPG 차량 혹은 전기차(Electric Vehicle)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해주고 있다.



덴마크는 1997년 7월부터
Green Owner's Tax를
도입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연비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표 14〉 덴마크의 Green Owner's Tax (연비기준 과세)

휘발유		경유	
연비 (km/l)	세액 (DKK) ¹⁾	연비 (km/l)	세액 (DKK) ¹⁾
20.0 이상	260	32.1 이상	80
18.2 초과~20.0 이하	510	28.1 초과~32.1 이하	370
16.7 초과~18.2 이하	760	25.0 초과~28.1 이하	660
15.4 초과~16.7 이하	1,010	22.5 초과~25.0 이하	980
14.3 초과~15.4 이하	1,260	20.5 초과~22.5 이하	1,300
13.3 초과~14.3 이하	1,510	18.8 초과~20.5 이하	1,610
12.5 초과~13.3 이하	1,750	17.3 초과~18.8 이하	1,930
11.8 초과~12.5 이하	2,000	16.1 초과~17.3 이하	2,250
11.1 초과~11.8 이하	2,250	15.0 초과~16.1 이하	2,570
10.5 초과~11.1 이하	2,500	14.1 초과~15.0 이하	2,890
10.0 초과~10.5 이하	2,750	13.2 초과~14.1 이하	3,210
9.1 초과~10.0 이하	3,240	12.5 초과~13.2 이하	3,540
8.3 초과~9.1 이하	3,750	11.9 초과~12.5 이하	3,860
7.7 초과~8.3 이하	4,250	11.3 초과~11.9 이하	4,170
7.1 초과~7.7 이하	4,740	10.2 초과~11.3 이하	4,810
6.7 초과~7.1 이하	5,240	9.4 초과~10.2 이하	5,460
6.3 초과~6.7 이하	5,740	8.7 초과~9.4 이하	6,090
5.9 초과~6.3 이하	6,230	8.1 초과~8.7 이하	6,740
5.6 초과~5.9 이하	6,730	7.5 초과~8.1 이하	7,350
5.3 초과~5.6 이하	7,240	7.0 초과~7.5 이하	7,990
5.0 초과~5.3 이하	7,740	6.6 초과~7.0 이하	8,640
4.8 초과~5.0 이하	8,230	6.2 초과~6.6 이하	9,270
4.5 초과~4.8 이하	8,730	5.9 초과~6.2 이하	9,910
4.5 이하	9,230	5.6 초과~5.9 이하	10,570
		5.4 초과~5.6 이하	11,200
		5.1 초과~5.4 이하	11,890
		5.1 이하	12,530

주: 1) 보유기간 6개월 기준
자료: ACEA (2002)



3. 미국

미국은 연비가 특정기준에 미달하는 신규모델 차량에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를 취득단계에 부과하고 있다. 동 과세는 1980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연비가 갤런당 22.5마일을 넘는 차량은 비과세하고 22.5마일 이하이면 과세된다. 이는 최저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연료의 과소비 여부에 따라 최고 7,5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은 연비가 특정기준에 미달하는 신규모델 차량에 연료과소비세를 취득단계에 부과하고 있다.

〈표 15〉 미국의 Gas Guzzler Tax의 세부담

연비 (MPG)	세부담 (\$)
22.5 이상	0
21.5 이상 22.5 미만	1,000
20.5 이상 21.5 미만	1,300
19.5 이상 20.5 미만	1,700
18.5 이상 19.5 미만	2,100
17.5 이상 18.5 미만	2,600
16.5 이상 17.5 미만	3,000
15.5 이상 16.5 미만	3,700
14.5 이상 15.5 미만	4,500
13.5 이상 14.5 미만	5,400
12.5 이상 13.5 미만	6,400
12.5 미만	7,700

주: MPG는 miles per gallon을 의미
 자료: US EPA; 김승래 · 박상원(2006)에서 재인용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2005년 8월에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차량 제조사별로 6만대까지 연비 향상률 및 연료 절감량 산정기준에 따라 차량모델별로 차별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령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3,400달러까지 소득세를 세액공제(Personal Income Tax Credit)하며⁵⁾ 연료전지차는 8,000달러까지 연방소득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량을 지원하고 대체에너지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2004년 혹은 2005년도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구매 첫해에 1회에 2,000달러의 소득공제

5) 이러한 세액공제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6만대 판매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그 혜택이 제거된다. 즉 제작사별로 6만대까지는 기준금액의 100%의 세액공제, 6만대 달성 이후의 3번째와 4번째 분기에는 50% 세액공제, 5번째와 6번째 분기에는 25% 세액공제, 그 이후에는 0%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고연비차량, 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차량 등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의 내수 증대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를 받을 수 있었고 매년 500달러씩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표 16〉 미국의 2005 에너지정책법

	이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기간	~ 2005.12	2006. 1. 1 ~ 2010. 12. 31
혜택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2,000 세액공제	하이브리드차/고급 디젤차: ~\$3,400 세액공제 대체연료차: ~\$4,000 세액공제 연료전기차: ~\$8,000 세액공제
대상	-	차량메이커별 최대 6만대까지

자료: www.irs.gov

V. 국내 환경친화자동차 세제지원 방안 및 전략

미국, 일본 및 독일 등 선발 자동차 기업들에 이어 최근 중국과 인도의 후발 업체들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뛰어들면서 소위 '미래형 청정 자동차' 경쟁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국제원유값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등 천정부지의 급등 행진을 거듭하면서 대체연료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에서와 같이 고연비차량, 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차량 등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의 내수 증대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적 사용을 독려하고, 국내 상용화 이후에는 일반구매자들에 대해서 특소세, 취득·등록세, 보유세 등 세제혜택이나 통행료, 주차료 등 각종 비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더불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중 친환경차 관련 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정책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본의 취득·등록세 감면, 자동차보유세 감면 조치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제의 개편은 해당 세목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재정 간, 국세와 지방세 간, 지방세 체제 내의 상



호 연관성을 가지므로 세제 감면이나 혜택시 종합적인 지역 재정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가령,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 부족분에 대한 보전 대책과 같이 지방세수 결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주행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전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촉진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지방세제상의 세제 혜택의 재정부담은 유류 관련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주행세를 통한 세수의 일정부분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환경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경친화기술은 누적생산의 증가에 따라 평균 생산단가가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을 가지므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2009년 이후 하이브리드차 양산계획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기술선도국으로 독점적으로 시장을 확보해 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구입보조금 지급은 수입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각종 혜택이 고스란히 일본차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 보조금보다는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제감면이나 이용단계의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관련 기타 혜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처럼 환경친화자동차 수요자의 소득관련 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특정기간에 걸쳐 완성차 제조사별로 세제혜택의 차량 대수를 기간별로 제한하고, 그 혜택도 시기별로 시장상황에 맞추어 점차 축소하는 방식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한시적인 소득 관련 세액공제 방식은 WTO 관련 대외 통상마찰 요인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하여 직접적인 차량가격 보조 방안에 비해 바람직하다.

더욱이 환경친화자동차의 국내시장 초기 수요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자동차 관련 각종 세제 혜택과 동시에, 국내 자동차산업의 체질강화(경쟁력 확충, 부품 국산화, 수출산업화 육성)를 위하여 완성차에 대한 단순 보전보다는 친환경 핵심기술개발, 부품산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08년부터 서울시가 신축되는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받을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동차세의 일부 재산세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원칙적으로 가격기준은 재산세적 성격이 강하고, 배기량 등 물리적 기준은 환경세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미래형 자동차 세제지원에 적정하

단순 보조금보다는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등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제감면이나 이용단계의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관련
기타 혜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적 관점에서
 세계 지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지방재정의 확보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도 동시에 필요하다.

계 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적 관점에서 세계 지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지방재정의 확보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도 동시에 필요하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의 주요 화두가 배기가스를 덜 배출하면서도 높은 효
 율을 보이는 친환경에 집중된 만큼 국제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KIP**

<참고문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새로운 전환-기후변화 4차 정부종합대책(5개년 계획, 2008~2012)』, 2007.12.

김승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세 및 예산개혁 방향」, 『재정포럼』,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6.10.

김승래·박상원, 『자동차분야 세계개편 영향분석: 한미 FTA 관련 자동차 세계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6. 8.

산업자원부,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포럼』, 코엑스, 2007. 5.

이영희 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외교통상부, 「한미 자동차 통상현안」, 통상교섭본부, 2006.3.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 산업』, 각 연호.

환경부, 『환경백서 2007』.

일본 環境省 홈페이지 (<http://www.env.go.jp>).

일본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세계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http://oica.net>).

ACEA, Motor Vehicle Taxation in Europe, 2002.

Barro, R.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2nd Ed., MIT Press, 2004,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홈페이지 (<http://www.fhwa.gov>).

Fullerton, D. and S. West, “Can Taxes on Cars and on Gasoline Mimic an Unavailable Tax on Emiss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3, 2002, pp. 135~157,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swoo@kipf.re.kr



조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회계사
jincho@kipf.re.kr

I. 서론

최근 정부부문에도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부문과 비슷한 시장기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 정부회계에서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근간으로 한 재무보고가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의 현금주의(cash basis)에 기초한 예산제도를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일치시키는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임동완(2008) 참조).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관리자가 사업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감(accountability), 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업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현금주의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웠던 공무원 연금, 정부의 대출 혹은 보증 정책과 같은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환경채무(environmental liabilities) 등을 발생주의에서는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더불어 발생주의는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22개국이 재무보고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통과시키고 2009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관리자가 사업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관리자의 책임감, 회계의 투명성,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통과시키고
2009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자산 및 부채를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별로 투입된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업별 성과평가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주의 회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여진다(편호범(2004) 참조). 더군다나 이미 국가회계법까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은 발생주의 회계를 어떻게 하면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다. 자연적으로 다음에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발생주의를 예산제도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즉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이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윤성식·권수영(1998)은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를 이유를 들어 발생주의를 예산에까지 도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김홍래(2005)는 예산과정은 지출에 대한 통제, 관리, 운영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산과정을 위해서는 예산과 실적의 대비를 위해 회계와 예산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임동완(2008)의 논의 역시 발생기준 도입의 효과를 심분 얻기 위해서는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예산에 까지도 발생주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까지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 호주, 뉴질랜드처럼 완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덴마크, 스위스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예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아주 일부분의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발생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폭넓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OECD 주요국들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현황과 각국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현금주의 회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장단점과 각국의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과 한계점, 각국의 발생주의 예산 도입의 경험과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발생주의 회계

1. 발생주의 회계의 특징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회계와 예산의 기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의 스펙트럼 중에서 양 극단으로 볼 수 있다. 현금주의하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거래를 인식하게 된다. 반면, 발생주의 하에서는 현금 입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 혹은 자원(resource)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거래를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세수입(tax revenue)의 경우 현금주의에 따르면 조세가 징수된 시점을 거래시점으로 인식하여 수입으로 기록하게 되지만, 완벽한 발생주의하에서는 경제적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기록하게 된다¹⁾.

정부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부 사업의 실제 비용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해 보자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비용을 공무원이 임용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공무원이 은퇴한 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한 번에 인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큰 규모의 자본투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한 번에 그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이나 보증, 혹은 이차보전 사업²⁾ 등에서 차입자의 파산위험 등도 고려하여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의 입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던 부분을 발생주의에서는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는 재정의 재무상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를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관리자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원의 투입 권한을 주고 그에 대한 비용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자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향상시키고 성과주의(performance)와 연관시키기 용이해진다.

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있어서 어떤 자산을 인식해야 하며, 인식된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기술적인 작업이다. 역사적 유물, 군사적 자산, 기간시설, 사회보험 등을 어떻게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또한 회계제도마다 매우 상이하다.

정부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부 사업의 실제비용을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해 보자는 데 있다.

1) 실제로는 조세 수입을 인식하게 되는 경제적 거래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세 부가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은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라고 한다.



자산 및 부채의 인식문제 외에도 발생주의의 또 하나의 난점은 평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역사적 원가법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 현재가치 평가법을 채택하자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적 유물의 경우 어떤 역사적 유물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뿐만 아니라³⁾ 대개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다⁴⁾. 군사적 자산의 경우 예외없이 자본화(capitalized)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군사적 자산은 조기에 파괴되거나 적국의 무기체계 발달로 인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경향 때문에 보통의 다른 자산처럼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군범용자산(military general purpose assets)과 군특정자산(military-specific assets)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본화시키고 후자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보통의 자산처럼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비용화하고 파괴되는 경우는 일시에 제각처리(write-off)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미래에 조세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채로 인식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⁵⁾.

자산 및 부채의 인식문제 외에도 발생주의의 또 하나의 난점은 평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역사적 원가법(historical cost)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 현재가치 평가법(current valuation)을 채택하자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역사적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면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한다. 역사적 원가법의 장점으로는 실제로 자산 획득에 지출된 가격을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제 자산의 결산시점의 공정가치(fair market value)와 자산의 장부가액(book value)⁶⁾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회계주체에 따라서 같은 자산이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종종 취득원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현재가치 평가법을 사용하면 역사적 원가법을 사용했을 경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재가치 산출을 위해 많은 가정들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현재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⁷⁾.

발생주의 회계하에서는 비용을 인식하고 자산 혹은 부채를 평가하는 데 많은 추정(estimation) 및 가정(assumption)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현금주의하에서 보다 중요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의 회계기준은 대체로 재무부에서 결정해 왔으나 회계기준의 객관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회계기준 결정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정부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3) 역사적 건물, 기념비,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곳, 박물관, 갤러리, 도서관 장서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역사적 유물의 인식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볼 때 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 감정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유의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5) 정부가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손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없음.
 6) 역사적 원가법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book value)은 취득원가에서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게 된다.
 7) 할인율(discount rate),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가치가 되는 자산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된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어 변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 재무부에 조언을 하고 수용 여부는 재무부가 결정하는 식이다. 미국의 경우 독립적 자문기구인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에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GAO에서 이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FRAB(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에서 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민간기구인 AASB에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 1] 참조). 국제적으로는 세계은행이 후원하는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도 공공부문 위원회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⁸⁾.

OECD 회원국 중에서 완전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무보고를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5개 국가에 이른다.

〈표 1〉 외국의 회계기준 제정기관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제정기구	GAO	재무부	재무행정부	재무부	재무부
자문기구	FASAB	FRAB	AASB	ICANZ	CICA

2. OECD 회원국가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최근 OECD에서 실시한 2007년도 ‘예산 실제와 절차에 관한 조사⁹⁾’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완전 발생주의에 따라서 재무보고를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5개 국가에 이른다(그림 1 참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국가들이 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흥미롭다¹⁰⁾.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일본 역시 완전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완전 발생주의를 포함하여 부분적이라도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국가는 23개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지출은 완전한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지만, 수입은 2%를 제외하고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재정상태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3.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 현금주의에 의해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¹¹⁾. 그러나 기업특별회계 및 대부분의 공공기금에 대하여

8) 회계기준은 아니지만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 보고 기준은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9)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10) 남미국가들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발생주의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1) 지방재정의 경우 2007년 결산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재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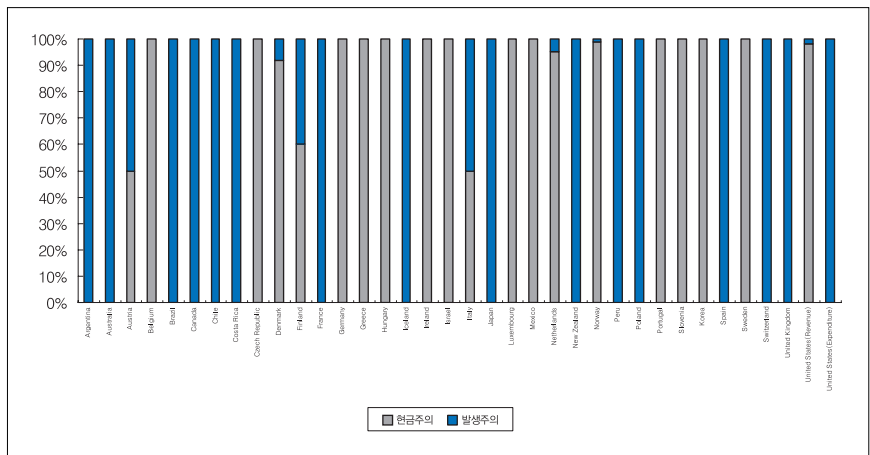
는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¹²⁾.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할 예정이다(재정부 보도자료, 2007). 우리나라 정부회계 및 결산의 근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단식부기·현금주의였다. 현금주의 회계는 이해가 쉽고 정부의 현금통제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산,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으로 관리되어 회계 및 결산의 신뢰성이 낮고, 재정 정보의 종합성·체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재정혁신과제의 하나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2000년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회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국가회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7년 10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에는 기업특별회계, 기금 외에도 현재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을 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결산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하지만, 현금이 주는 정보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현금주의에 기초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국가재정법 제58조).

12)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제27조, 동 시행령 제2조·제4조,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동 시행령 제4조·제6조 참조

13)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내에 정책기획수석실이 설치되고 주요국의 개혁논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방법을 연구하다가 정부회계 개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월 정책기획수석실 주관으로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1995년도 정부결산서를 기초로 일부 정부거래에 대한 계수적 연계작업을 시도했으나 각 부처 담당자들의 부정적 의견에다가 여론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편호범, 2004).

[그림 1]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자료: 2007 OECD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

[그림 2] 복식부기, 발생주의 도입 후 결산체계의 변화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를 통해서 재정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책임성 규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III. 발생주의 예산(accrual budget)

1. 발생주의 예산제도

제 II 장에서 설명하였던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서 재무행위의 결과를 사후적(ex post)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반면, 발생주의 예산은 발생주의 원리에 따라서 사전적으로(ex ante)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무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Schick(2007)의 분류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주의를 분석의 도구(analytic tool)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발생주의 회계는 재무보고를 통해서 재정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관리자의 의사결정 및 책임성 규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발생주의 예산은 발생주의를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결정규칙(decision rule)로서, 예산결정을 규정하는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예산제도와 도입 취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수의 OECD국가들이 성과주의와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는 국가는 남미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리 많지 않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전면적인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였고,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¹⁴⁾, 이탈리아¹⁵⁾ 정도가 비자본화 혹은 비감가상각 자산(no capitalization or depreciation of assets)을 제외한 부분적인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정도

모든 정부에 완전한 발생주의 도입	모든 정부에 현금통제를 가미한 완전한 발생주의	일부 부처에 발생주의 도입	일부 프로그램에 발생주의 도입	재정수지 계산에만 발생주의 도입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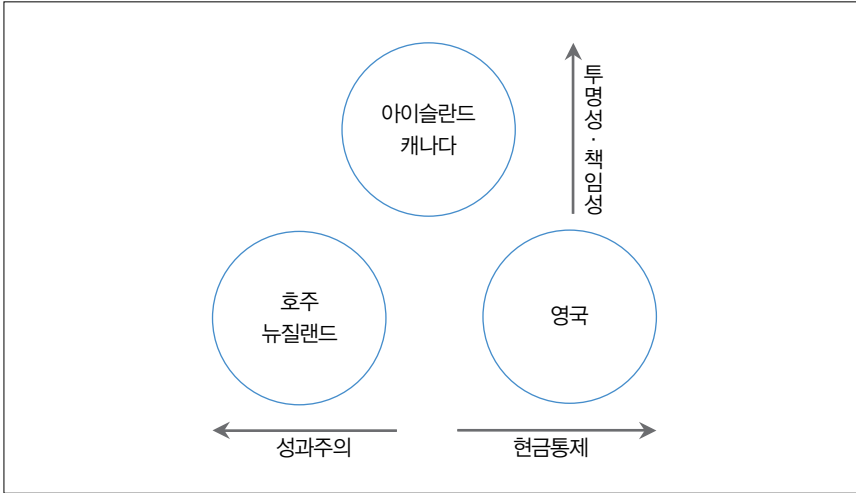
자료: GAO(2007)

발생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예산제도와 도입 취지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4) 참조).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한 호주와 1992년과 1994년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정부의 성과(performance)를 제고하려고 하였다. 반면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한 영국의 경우 성과주의에 대한 기대보다는 강한 현금통제(cash control)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일선 부처의 비현금 지출(non-cash expense)에 대한 지출(resources)을 지원하되 이의 사용 한도를 강력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이슬란드는 1998년 이후로 발생주의 예산을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제외한 상태에서 도입하였고, 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 현금주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4)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은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음.

15)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두 종류로 예산이 작성됨.

[그림 4]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목적



발생주의 예산을 통해 정책결정자는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어 예산집행에 규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¹⁶⁾으로는 다음과 같이 대개 여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발생주의 예산을 통해 정책결정자는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어 예산집행에 규율(discipline)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하에서는 다음 회계연도로 발생을 지연시킨 지출도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됨으로써 정책에 수반되는 총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관리자들이 자본에 대한 관리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더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하에서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통해 자산, 부채 상태가 파악 가능해짐에 따라 자산을 좀 더 잘 관리하고 필요없는 자산을 매각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자본 투자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친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한 번에 모든 비용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큰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현금주의 하에서는 초기의 성과가 큰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를 자본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처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편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넷째, 발생주의 예산을 통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정부의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6) 다음의 6개 부분의 경우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에 큰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I) 공무원의 혜택(civilian employee benefits), II) 군인의 혜택(military employee benefits), III) 퇴역군인 보상(veterans compensation), IV) 환경 부채(environmental liabilities), V) 보험 프로그램(insurance program), VI) 자본 자산(capital assets).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상태 파악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과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섯째, 재정개혁의 결정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재정개혁, 즉 투입중심에서 산출, 결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어 발생주의 도입이 공공부 분에서의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를 이용하여 재무보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 결산을 일치시키면 불필요한 혼란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¹⁷⁾. 회계와 예산의 인식기준이 다르면 발생주의 회계의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서로 상충되는 신호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발생주의 예산의 장점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상태 파악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둘째,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적 운영 혹은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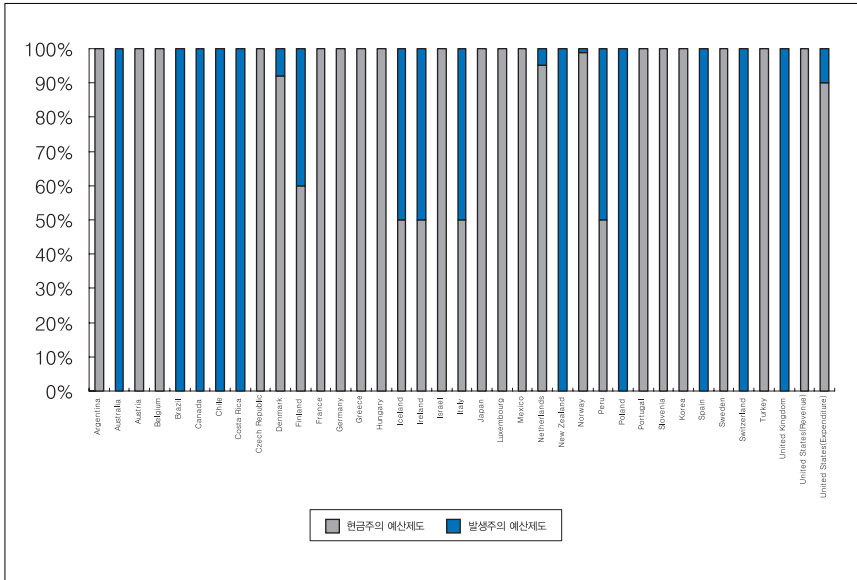
OECD 회원국 중에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등 10개국이 완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위의 4개국을 제외하면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남미 국가(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등)이다. 부분적으로라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9개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수입은 완전 현금주의에 의해서, 지출 부분도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사업은 신용 프로그램(Credit program), 일부 이자 지급(interest payments), 연방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등이다.

위와 같이 국가에 따라서 일부는 완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접근법이 매우 상이하다(그림 3) 참조.

17) 윤성식·권수영(1998)에 따르면, 예산과 결산제도의 불일치는 마치고 계획은 영어로 세우고 집행결과는 독일어로 작성해서 다시 영어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 예산담당자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독일어로 된 집행결과를 영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5]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예산 도입현황



호주와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중요 목적은 정부개혁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990년대 이후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더불어 발생주의를 회계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는 1999-2000년 회기년도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였고, 뉴질랜드는 1992년에 부처 수준에서 발생주의 예산으로 전환하였던 것을 1994년에 정부 전체로 확대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중요 목적은 정부개혁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생주의가 현금주의보다 좀 더 정확한 비용정보와 관리유인을 제공한다는 점과 재무보고가 발생주의에 기초해 있었으므로 이를 예산과 일치시켜 결산과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성과와 기대되었던 성과가 비교 가능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부처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전히 제공(fully funding)해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들 국가의 부처들은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용 발생, 환경 부채 등, 비현금 지출(noncash expenses)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총비용을 예산지원해 줌으로써 관리자로 하여금 부처 정책의 총비용을 인식하도록 해주고 있다. 두 국가 예산제도의 특징은 각 부처의 예산이 부처의 산출물(output) 혹은 정책 효과(outcome)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각 부처가 상당한 정도의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flexibility)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각 부처의 장관은 자기 부



미국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지출 통제에 좀 더 용이하고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처의 재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001-2002 회계연도에 소위 자원예산(resource budgeting)이라고 불리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호주, 뉴질랜드와는 다르게 성과주의에 근거한 예산제도를 강조하기보다는 현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영국 의회는 현금 총액 외에도 자원, 즉 부처의 서비스에 대한 발생주의에 기초한 총비용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 자원예산에 의해 감가상각, 공무원 연금 등의 발생주의에 기초한 비현금 비용을 완전하게 지원해준다. 하지만, 지원된 비현금 비용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현금통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위의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다르게 완전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함께 현금주의 예산제도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전체에 대한 예산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되지만, 소위 'main estimates' 이라고 지칭되는 지출안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의회의 조언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의 예산을 하나의 기준, 즉 발생주의로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였지만 미국의 예산제도¹⁸⁾는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현금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바도 있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지출 통제에 좀 더 용이하고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통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보다 재정갭(fiscal gap) 혹은 재정불균형(fiscal imbalance) 같은 다른 측도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현금주의 예산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르웨이의 경우 예산의 수입은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이를 현금흐름으로 전환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포기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노르웨이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이 투입 통제에 기초해 있을 경우에는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발생주의 예산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기반시설, 군사 무기 체계와 같은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의 의회 승인에는 현금주의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 발생주의가 성과주의 예산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별 부처에 자율성이 그만큼 주어질 것

18) 미국의 예산제도는 의무주의 예산제도(obligation budgeting)로 불리기도 한다.



때만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가 투입에 기초하여 통제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실정을 감안했을 때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no value for money).

주변국인 일본 역시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¹⁹⁾ 예산은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있다. 일본은 현금주의 예산제도가 의회의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채택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은 발생주의 예산의 한계 때문이다.

3. 발생주의 예산의 한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OECD 회원국들이 처음에 보였던 의욕과는 반대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03년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해 검토하였지만 재정정책의 역할이 현금주의 예산하에서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웨덴은 2004년에 현금지출에 대한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더군다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금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캐나다와 이탈리아처럼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특히, 재정의 포지션(position)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데 현금주의 예산제도하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처럼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재정지표들을 생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현금주의에 기초한 재정지표들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 많은 국가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채택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은 발생주의 예산의 한계 때문이다. 앞에서 발생주의 예산의 장점을 재정상태에 대한 더 나은 정보 제공,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공공부분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 등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들이 현금주의 예산제도하에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거나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가져올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 1993년에 중앙정부에 대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발생주의 예산은 현금 입출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되므로
정부가 지출을 늦춘다든가 조세를
좀 더 빠른 시기에 징수함으로써
재정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먼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첫 번째 장점은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금주의 예산하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미루거나 세수를 좀 더 일찍 징수함으로써, 즉 현금 입출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상태를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발생주의 예산은 현금 입출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되므로 정부가 지출을 늦춘다든가 조세를 좀 더 빠른 시기에 징수함으로써 재정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상태 조작으로 인한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의 차이는 중기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작다. 심지어 연간 예산의 경우에도 실제 현금주의 예산과 발생주의 예산의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2004년 예산의 경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예산의 차이가 0.8%에 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정부의 조작으로 인한 발생주의 예산과 현금주의 예산의 차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주의하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처분을 현금 수입이 아니라 파이낸싱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시점 조정을 통한 예산의 절감 부분은 기본 예측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조작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현금주의하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의 축적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연금은 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재정에 장기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같은 사회보험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해서 발생주의에 기초한 대차대조표를 이용하기보다는 장기 재정전망(long-term fiscal projections)을 이용하거나 재정갭 혹은 재정불균형과 같은 재정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장기 재정 전망과 재정지표들은 예산을 현금주의하에서 작성하던 발생주의하에서 작성하는 지에 큰 상관이 없다. 즉 현금주의 예산제도하에서도 이러한 재정지표의 생성을 통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관리자가 사업 혹은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총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은 관리자가 비용 결정에 대한 재정적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earmarked) 지정된 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리자에게 총비용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처에게 비용 결정에 대해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효과 여부도 현실에서는 회의적이다.

더 나아가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예산이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현금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기술관료들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 이자율,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좀 더 건전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기술관료들의 조작에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제도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현재의 현금주의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좀 더 정확한 성과측정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신중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제도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국가 회계의 투명성, 책임성, 성과주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가 200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 재정개혁의 하나의 요소인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따져 보고, OECD 회원국 및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최초의 열띤 반응만큼 채택되어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추가적으로 가져다주는 재정 혹은 성과에 대한 정보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할 순응비용(conformation cost)보다 훨씬 큰지는 신중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의 생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2009년부터 도입되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정착 여부를 보고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여부는 차후에 판단하



결론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우발채무, 보증, 대출 같은 사업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발생주의 회계가 충분히 정착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 지출에 대한 의회와 시민사회의 통제인데 발생주의 예산이 도입되면 기술적으로 복잡한 면 때문에 의회와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기술관료(technocrats)들에 의해 현금지출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우발채무, 보증, 대출 같은 사업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발생주의 회계가 충분히 정착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 도입 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발생주의 회계 외에도 현금주의 회계를 동시에 운용하여 예산과 결산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KIPF

<참고문헌>

김홍래 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윤성식 · 권수영, 『정부회계』, 감사원, 2000

임동완, 『외국의 발생기준 회계와 예산제도 개혁과 시사점』, 『예산현안분석』, No.17, 국회예산정책처, 2008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04

GAO, “Accrual Budgeting Useful in Certain Areas bu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Reporting on Out Nation’s Longer-Term Fiscal Challenge,” GAO-08-206, 2007

OECD, “Budgeting in Austria,” 28th Annual Meeting of SBO, 2007

OECD, “Performance Budgeting and Accrual Budgeting: Decision Rules or Analytic Tools?,” 2007

OECD, “Overview of Accrual Accounting and Budgeting Practices in Individual Countries,” 6th Annual OECD Public Sector Accrual Symposium, 2006

OECD, “Issues in Accrual Budgeting,” 25th Annual Meeting of SBO, 2004

OECD, “Budget Reform in OECD Member Countries: Common Trends,” Meeting of Budget Directors from the G-7 Countries, 2002

정책토론투리포트

■ 남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 본 원고는 2008년 5월 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남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일 시 2008. 5. 7(수) 16:00~18: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6:00~16:1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6:10~17:40 주제발표 및 토론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자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 안중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경대 교수)
 -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17:40~18: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8:00 폐회

(가나다 순)

I. 배경

-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본의 이동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 2000년대 이후 낮아진 성장잠재력의 강화 필요성 및 200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시장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성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 향후 높아질 복지수요를 성장의 촉진을 통한 고용과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세원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감당하겠다는 전략
 -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본의 경우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정책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단일시장을 형성한 EU의 경우, 국가간 자본 및 인력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여 법인세율 등의 인하 추세가 지속
 - 이러한 자본유치 경쟁은 향후 FTA 등에 따라 시장접근성이 높아질 아시아지역에서도 예상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국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위기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최근의 원자재값 폭등과 함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안정적인 세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공공재원 확보라는 조세의 기본적 기능 측면에서도 2006년 이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세수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민간부문으로 환류할 필요성 존재
 - 정부예산을 상회하는 세수징수는 필요 이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
- 저출산과 평균수명 향상에 따른 고령화, IT기술의 발달 등은 조세정책 운용의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필요
 -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인 재정지출의 증대를 야기하여 세부담 증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의료비용(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의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지출부문의 경우 개인의 책임성 강화 등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수입부문은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IT기술의 발달은 국가 및 납세자의 정보수집 등 납세관련 비용 축소를 가능케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 따라서 이러한 납세와 관련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기여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

해 세부담 수준과 재정소요, 세원구성, 세율수준 등에 대해 검토

- 다음으로 외국의 최근 조세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

II.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조세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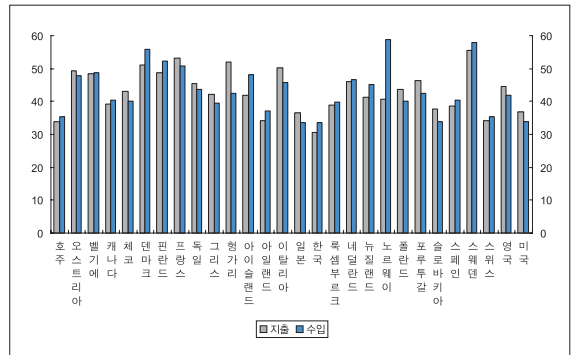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2006년 기준 GDP 대비 30.5%(일반정부 기준)로서 OECD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상황
 - 재정지출을 위한 자원조달도 활발하여 2006년 기준 33.5%로서 3.0%p의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
 - 재정수지 흑자는 적립단계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에 따른 효과를 제외할 경우(즉 관리대상수지), 소폭 적자
 - OECD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지균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재정적자를 보임.
 - 재정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므로 실질 국민부담은 현재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20%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하여 2007년 22.7% 수준까지 증가
 -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꾸준한 증가

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후 조세부담률 증가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28.6% 수준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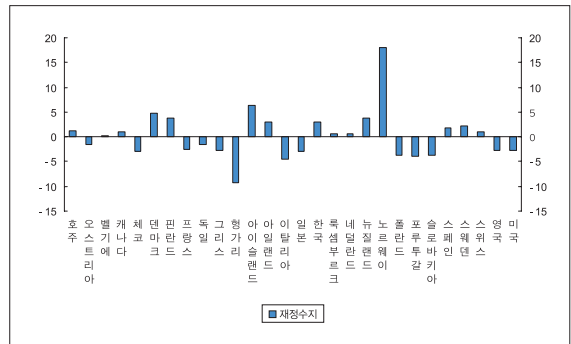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2005년 36.2%, 가중평균 32.1%)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나 미국, 일본 등의 27.3%, 27.4%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책적 주의가 필요
- 그러나 미국·일본은 재정적자를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규모(미국 3.7%, 일본 6.5%)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은 높은 수준

[그림 II-1] OECD 국가들의 재정규모 및 수지(2006년)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7.

〈표 II-1〉 우리나라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2	21.1	22.7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5	26.8	28.6

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GDP), 2007년은 기획재정부 추정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표 II-2〉 조세/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2005년)

(단위: %)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OECD
조세부담률	20.2	20.6	17.3	27.8	20.9	28.4	29.6	26.9
국민부담률	25.5	27.3	27.4	44.1	34.8	41.0	36.5	36.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7~2011년 중에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조세부담률이 2007년보다 소폭 낮아진 22%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수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한국조세연구원도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약 21~22%)으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국가채무비율을 소폭 낮추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최근의 높은 세수증가세를 감안하면 부담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3〉 2007~2011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 %)

구 분	'07	'08	'09	'10	'11	증가율
총수입	250.6	274.2	291.7	311.7	333.9	7.4
- 총국세	148.1	167.5	178.9	192.8	208.7	8.9
총지출	238.4	257.3	274.1	292.1	311.2	6.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2 (1.4)	16.9 (1.7)	17.6 (1.7)	19.6 (1.8)	22.7 (1.9)	-
사회보장수지	27.0	28.0	28.4	29.6	30.0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비율)	-14.8 (-1.6)	-11.1 (-1.1)	-10.8 (-1.0)	-9.9 (-0.9)	-7.4 (-0.6)	-
국채규모 (GDP 대비 비율)	302.0 33.4	318.8 32.9	335.3 32.3	353.3 31.8	369.1 31.0	-
조세부담률	22.2	21.8	21.7	21.8	21.9	-
국민부담률	28.0	27.6	27.5	27.4	27.4	-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

- 최근 재정수지는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7년 관리대상수지가 과거 적자 추세에서 벗어나 3.6조원(GDP 대비 0.4%) 흑자로 전환
 - 적립단계에 있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지를 포함한 재정수지는 33.8조원 흑자로 GDP 대비 3.8% 수준에 이름.
 - 이미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해 상당한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수지의 흑자는 민간부문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표 II-4〉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

	2005	2006	2007
총수입	191.4	209.6	243.6
총지출	187.9	205.9	209.8
재정수지 (GDP 비중)	3.5 (0.4)	3.6 (0.4)	33.8 (3.8)
관리대상수지 (GDP 비중)	-8.1 (-1.0)	-10.8 (-1.3)	3.6 (0.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최근의 국세징수 실적은 2004년과 2005년에 세입예산에 미달하다가 2006년 이후 세입예산을 초과하기 시작
 - 2006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에 의한 소득세 증가(3.3조원) 등 일시적 요인으로 2.7조원 초과징수
 - 2007년에는 일시적인 요인(7.1조원)과 함께 경기회복 및 그간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으로 총 14.2조원 초과징수
- 2006년 말에 공휴일인 관계로 발생한 납세이월(3.0조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실시 직전인 2006년 말 부동산 거래 급증에 의한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급증(3.0조원) 등
-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하여 민간부문의 부담이 증대
 - 2007년 14.2조원 중 소득세 6.1조원, 법인세 4.9조원
 - 세목별 조세효율성 분석에 따르면 소비세보다 소득세의 왜곡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5〉 세입예산 대비 국세징수 실적

(단위: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본 예산	95.9	103.6	113.6	122.1	130.6	135.3	147.3
추경예산	-	-	114.9	-	1,27.0	-	-
실적	95.7	104.0	114.7	117.8	127.4	138.0	161.5
실적-본예산	Δ0.2	+0.3	+1.0	Δ4.3	Δ3.1	+2.7	+14.2
실적-추경예산	-	-	Δ0.3	-	+0.4	-	-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2	5.0	4.9

- 한 나라의 재정규모 및 이에 필요한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

- 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구를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 규모는 평균 43%인데, 최저 30.5%(한국)에서 최고 55.6%(스웨덴)로 국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조세부담이 인프라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실정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보다 취약한 복지수준, 준조세성 법정부담금, 향후 예상되는 사회보장 관련 부담 증가, 의무병역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체감부담률이 낮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존재
 - 법정부담금은 2006년 기준 GDP 대비 1.4%에 달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적립단계에 있어 기여율(9.0%)에 비해 연금지급 규모가 작아 체감 국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향후에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율 상향, 건강보험 관련 부담의 지속적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 조세부담률만 고려하여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
- 다만 세계화 등으로 인한 국가간 차별성의 약화가 과거보다 조세부담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
 - Reed(2008)¹⁾에 따르면 미국 주별 분석에서 세 부담 수준은 유의미하게 개인소득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세부담 수준을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유

1) W. Robert Reed(2008), The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U. S. State Income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1.

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최근과 같은 소득세, 법인세 중심의 초과세수를 통한 세 부담 증가는 노동공급 및 이용, 민간 소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의 큰 변화는 복지지출 등 정부지출의 적정수준과 연계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임.

2. 세원구성

- 조세수입을 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 세원(tax base)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사회보장:소비:재산과세의 비중이 29:21:34:12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소비과세의 비중은 1980년 62.7%에서 2005년 34.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이는 주로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개별소비세의 수입비중 감소에 기인
 -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음.
 - 다음으로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서 1980년 1.1% 비중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함께 2005년 2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세원별 조세수입 구조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은 반면 소비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 소득과세 중 개인소득과세의 비중이 13.3%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17~35%에 비해 낮음.
 -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음을 시사
- 소비과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개별소비세의 영향
 - 개별소비세의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세수비중은 높은 수준

〈표 II-6〉 세원별 조세수입 비중 추이

(단위: %)

	'80	'85	'90	'95	'00	'04	'05
소득과세	25.5	26.4	34.6	31.9	28.8	27.9	29.3
• 개인소득	11.5	13.4	21.1	19.2	14.6	13.6	13.3
• 법인소득	11.0	11.4	13.5	12.3	14.1	14.3	16.0
사회보장기여금	1.1	1.5	5.1	7.0	16.7	20.7	21.0
급여세	0.5	0.5	0.4	0.3	0.2	0.2	0.2
소비과세	62.7	59.5	46.7	43.1	38.3	36.3	34.3
• 일반소비	22.0	21.1	19.7	18.9	17.0	18.0	17.5
• 개별소비	39.5	37.4	25.7	21.9	19.7	17.3	15.9
재산과세	8.0	9.1	12.4	14.8	12.4	11.3	11.9
기타	2.2	3.0	0.8	2.9	3.6	3.6	3.2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구조는 주요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인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고용주의 부담이 월등한 구조
 - 이는 상대적으로 큰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부담이 크기 때문임.

〈표 II-7〉 세원별 조세수입의 국제비교(2005)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소득과세	29.3	46.5	23.5	28.2	33.8	31.5	38.5
• 개인소득	13.3	35.1	17.3	23.3	18.3	25.5	28.6
• 법인소득	16.0	11.4	6.2	4.9	15.5	6.8	9.3
사회보장기여금	21.0	24.7	37.0	39.9	36.8	30.8	18.8
• 근로자	12.1	10.8	9.2	17.4	15.9	5.5	7.8
• 고용주	8.9	12.6	25.0	19.2	16.7	21.4	10.4
급여세	0.2	0.0	2.7	0.0	0.0	0.0	0.0
소비과세	34.3	17.4	25.3	29.0	19.4	26.4	30.3
• 일반소비	17.5	8.0	17.1	18.0	9.5	14.6	18.6
• 개별소비	15.9	6.6	7.6	9.9	7.7	9.2	10.5
재산과세	11.9	11.4	7.8	2.5	9.7	5.0	12.0
기타	3.2	0.0	3.5	0.0	0.3	5.9	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심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거래세의 비중이 높음.
 - 부동산세의 비중은 전체 세수입의 2.4%에 불과하여 미국, 일본의 10.5%, 7.4%에 비해 낮은 수준
 - 반면 거래세 비중은 8.6%로 다른 선진국들의 3배 이상 수준임.
- 이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기능이 약하고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표 II-8〉 재산과세 수입구조의 국제비교(2005)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재산과세	11.9	11.4	7.8	2.5	9.7	5.0	12.0
• 부동산세	2.4	10.5	4.9	1.3	7.4	2.0	9.1
• 부유세	0.0	0.0	0.4	0.0	0.0	0.0	0.0
• 상속증여세	0.9	0.9	1.2	0.5	1.2	0.0	0.7
• 거래세	8.6	0.0	1.4	0.6	1.2	2.5	2.2
• 기타재산세	0.0	0.0	0.0	0.0	0.0	0.5	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OECD(2008)²⁾에 따르면 동일한 세원을 조달함에 있어 성장에 유리한 세원구조는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왜곡효과가 적은 세원으로 이동하는 것임.

- 가장 성장친화적인 세원은 주거자산으로 재산과세 중 부동산세가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는 주로 지방정부의 세원이며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정폭에는 한계
- 다음으로는 소비과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과세 중에서는 개인소득과세, 기업소득과세의 순으로 왜곡효과가 높아짐
-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의 상충관계를 이해하여야 함.
- 개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이동은 세부담의 누진성을 완화하게 될 것이며, 법인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이동은 자본과세를 낮춤으로써 주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부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

■ 현재 우리나라 세수구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높아 보다 성장친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개선과제도 존재

- 가장 왜곡효과가 심한 법인소득과세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부분적인 세원구조조정이 필요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법인소득과세 비중을 축소하여 성장친화적인 세원구조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임.
- 소득과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W. Robert Reed(2008), The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U. S. State Income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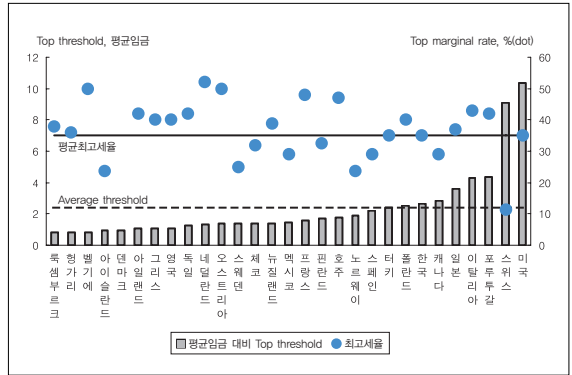
- 만약 세수비중이 하락한다면 저소득 계층을 목표로 한 재정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구조는 선진국들과 달리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에 어려움 존재
- 근로자들의 위험회피를 위해 자영업체제의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세수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 건강 등 외부비용 교정의 목적으로 전환하고 세수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III. 주요 세목별 구조

가. 소득세

- 우리나라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2006년 OECD 국가 평균 35.1%와 거의 동일한 수준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2.6배로 OECD 평균 2.4배와 유사한 수준
- 그러나 OECD 평균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미국, 스위스에 의해 크게 높아졌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1.8배 수준에 불과
- 이는 평균임금수준을 넘어서면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유럽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한계세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구조

[그림 II-2] 소득세 최고세율과 적용구간(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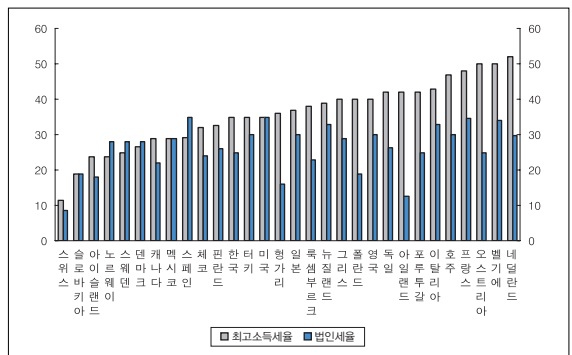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Taxing Wages, 2007.

- 소득세율은 소득이동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세율과의 균형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을 경우,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을 법인 내부에 유보하여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 존재
-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10%p로 OECD 국가 평균인 9.6%p와 유사한 수준
- 비교적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소득과세의 균형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가 필요

[그림 II-3]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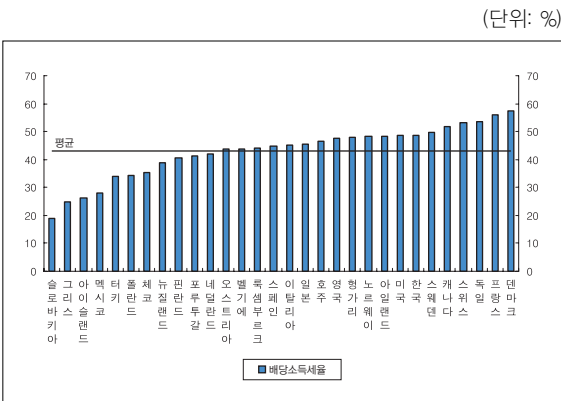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본투자에 대한 최종 세부담을 나타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2007년 기준 48.7%로 OECD 평균 42.9%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지 않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과세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 세부담이 선진국들보다 높음을 의미
- 창업 등 신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 소득세율의 조정에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그림 II-4] OECD 국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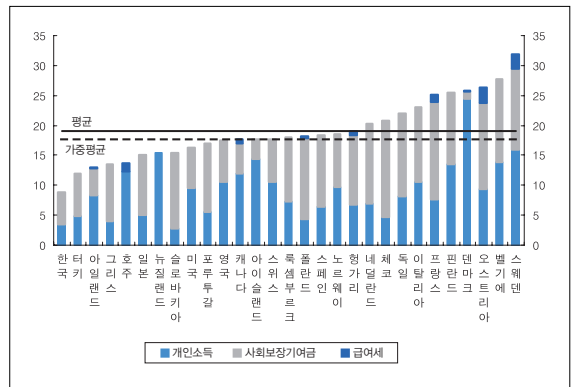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 급여세, 개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노동과세 부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한 29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총노동 관련 세부담은 GDP 대비 8.9%로 OECD 국가 평균 19.0%(가중평균은 17.6%)보다 크게 낮은 수준
-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은

- 15.1%이며 미국은 16.3%, 영국은 17.5% 수준
- 이는 노동 관련 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효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을 의미
- 노동과세의 구성은 개인소득세 3.4%, 사회보장기여금 5.4%로 OECD 국가 평균인 9.2%, 9.5%와 비교해 볼 때,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비례제 형태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큰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소득형평성 측면에서는 한계

[그림 II-5] OECD 국가의 개인소득 관련 세부담(2005)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은 2000년 이후 세율인하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세율인하가 없는 경우 매년 0.2%p 정도 증가
 - 소득세 평균세율은 2000년대 5% 중반대로 일정한 수준
-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약 3.5%내외, 종합소득세는 14%~15% 수준
- 2002년, 2005년의 세율인하 시기를 제외하면 소득세 부담률은 매년 0.2%p 정도 증가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
- 과세자 비중의 개선이 없을 경우, 납세자 계층

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그 정도는
 누진적 세율구조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
 - 2007년 소득세수(근소+종소)는 20.3조원으로
 2006년 대비 18.7% 증가

〈표 II-9〉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근로소득세	3.6	3.7	3.2	3.3	3.6	3.5	3.6
• 과세자비율	53.4	55.8	51.5	54.3	53.9	51.3	52.6
종합소득세	14.9	15.2	13.6	13.9	14.1	13.7	14.2
• 확정신고자비율	46.4	46.8	48.3	50.0	51.2	52.2	59.7
합 계	5.4	5.6	4.9	5.1	5.3	5.2	5.4

주: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급여총계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종합소득세 부담률은
 과세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의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
 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 지분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 또한 소득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 계층의 세부
 담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 편중
-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
 자영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과 동시에 추진하
 는 것이 필요
 -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
 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

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 또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 하에서도 좁은 과세
 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표 II-10〉 과표구간별 납세자분포

(단위: 천명, 십억원, 천원, %)

과세표준	1996년 귀속소득			2006년 귀속소득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인원	결정세액	1인당 세액
과세 미달자	2,953 (29.8)	0 (0.0)	0	5,974 (47.4)	0 (0.0)	0
0~1천만원	5,322 (53.7)	962.7 (19.9)	181	3,563 (28.3)	564.0 (4.9)	157
1천만~ 4천만원	1,579 (15.9)	3,101.6 (64.1)	1,964	2,665 (21.2)	5,231.9 (45.2)	1,963
4천만~ 8천만원	50 (0.5)	481.2 (9.9)	9,625	323 (2.6)	2,774.2 (24.0)	8,578
8천만원 초과	7 (0.1)	292.4 (6.0)	41,777	69 (0.5)	2,996.3 (25.9)	43,686
과세자 합계	6,958 (70.2)	4,837.9 (100)	695	6,621 (52.6)	11,566.4 (100)	1,747
전체 근로자	9,911 (100)	4,837.9 (100)	488	12,595 (100)	11,566.4 (100)	91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7.

나. 법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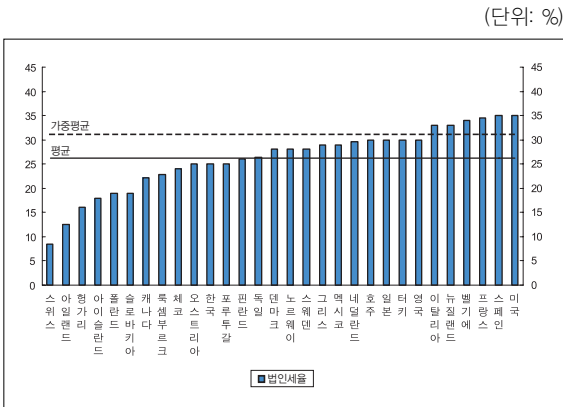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 26.2%와 유사한 수준
 - 그러나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 홍콩
 (17.5%), 싱가포르(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³⁾
- 미국·일본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커서 대외의
 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교적 높은 명목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율을 상당히 낮

3) 대만은 다시 2010년까지 홍콩 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며 싱가포르도 2007년 법인세율을 18%로 낮추고 GST를 2%p 인상하는 방안이 통과. 홍콩도 법
 인세율 1%p 인하안이 관보공고를 마치고 입법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은 수준으로 유지

-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을 중심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인세를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그림 II-6]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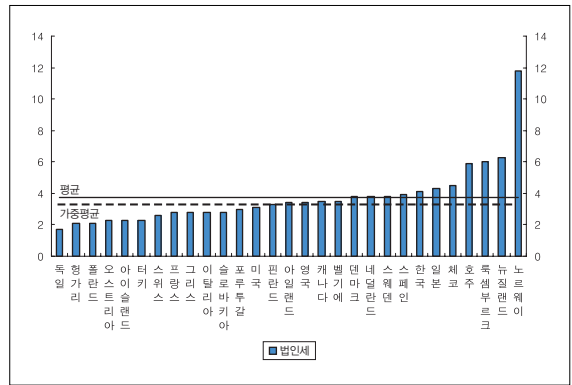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법인세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율수준과 달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인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을 의미
 - 우리나라보다 높은 부담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는 일본, 호주, 체코,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에 불과
 - 그러나 더욱 용이해진 기업의 국가간 이동을 고려할 때 높은 법인세 부담은 성장과 고용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림 II-7]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2005)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명목세율 외에도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임.
 -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 감면액/(감면액+법인세수입))은 17.2%로 영국은 55.1%, 캐나다는 28.5%, 미국은 23.4%보다 낮은 수준
 - 조세감면액 규모는 1997년 1.5조원에서 2005년 7조원으로 증가
 - 낮은 감면규모는 법인부문의 왜곡을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의 재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표 II-11> 주요국의 법인세 감면율(법인세수 대비) 비교

(단위: %)

국 가	2001	2002	2003	2004
캐나다	39.2	34.0	30.7	28.5
영 국	53.0	53.7	54.1	55.1
미 국	32.2	36.2	29.3	23.4
한 국	18.9	16.3	16.5	17.2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2000년대 이후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는데 이는 법인이익률(당기순이익/법인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
 - 명목세율 인하, 각종 세액공제 제공 등으로 인해 평균세율(법인세액/당기순이익)은 연평균 6.2%씩 감소하였으나,
 - 법인이익률이 연평균 15.8%씩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자본귀속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추세는 약함.

〈표 II-12〉 법인부문의 크기, 이익률 그리고 평균세율

(단위: %)

	법인소득 비중 (법인소득/GDP)	이익률 (당기순이익/ 법인소득)	평균세율 (법인세액/당 기순이익)	법인세 부담률 (부담세액/GDP)
2000	41.4	22.7	27.5	2.6
2001	39.0	26.7	26.6	2.8
2002	37.3	33.7	26.0	3.3
2003	36.4	34.4	23.8	3.0
2004	36.1	42.9	22.1	3.4
2005	34.7	47.3	19.9	3.3
평균증가율	-3.5	15.8	-6.2	4.9

주: 법인소득은 GDP 중 법인 귀속분으로 재산소득과 영업잉여의 합이며 당기순이익은 후자법인의 기업회계상 금액 그리고 부담세액은 국세청 신고기준임 따라서 법인세 부담률은 이전의 징수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유지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갈 필요 존재
 - 법인세 부담 인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보다는 법인세율의 인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또한 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와의 세율격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세경쟁 상황 대처에도 바람직
-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효과는 법인들의 이익규

모 및 분포에 의존

- 법인들의 이익수준이 낮거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고용효과는 제한적이므로 R&D 공제 등 특정행위와 연관된 제도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

다. 부가가치세 등

-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도입 이래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가도 있고 반면 인하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체로 낮은 세율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는 추세를 보임.
 - 일반적으로 OECD의 평균세율은 1994년의 17.1%에서 2004년의 17.8%로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7%(일부 지역 15%), 일본 5%, 스위스 7.6% 정도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선진국들에 비해 효율적
 - 부가가치세수의 민간소비 비중과 부가가치세율의 비율로 정의되는 소비효율성(C-efficiency)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
 -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수준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축소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 필요

〈표 II-13〉 주요 국가별 VAT 효율성(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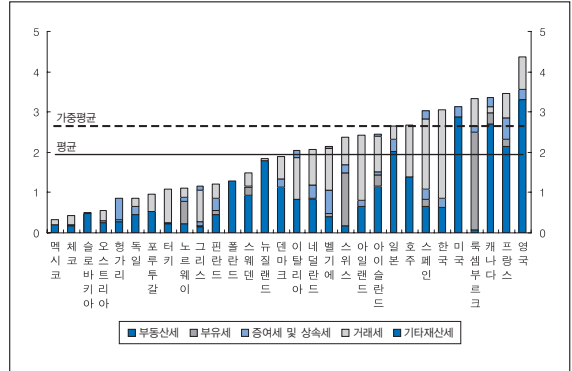
(단위: %)

	명목 VAT 세율	VAT 세수		C-효율성
		(민간소비 비중)	(GDP 비중)	
캐나다	7.0	4.8	3.5	0.68
일본	5.0	3.2	2.4	0.64
한국	10.0	6.9	4.6	0.69
프랑스	19.6	9.0	7.2	0.46
독일	16.0	8.3	6.5	0.52
이탈리아	20.0	7.6	6.1	0.38
영국	17.5	8.2	7.1	0.47
OECD 평균	17.7	9.2	6.9	0.54
유럽 평균	19.7	10.0	7.5	0.52

자료: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 성장친화적인 세원인 주거자산에 대한 세수는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0.9%에 비해 낮은 수준
 - 전체 재산과세(부동산세, 부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으로 구성) 수준은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9%(가중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2.2%)에 기인
 - 주요 선진국들의 부동산(주거자산 포함) 과세 수준은 일본 2.0%, 영국 3.3%, 미국 2.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 세부담 조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높은 세목이므로 신중한 접근필요

〈그림 II-8〉 OECD 국가들의 재산과세 부담(2005)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III. 해외 조세개혁 동향

1. 전반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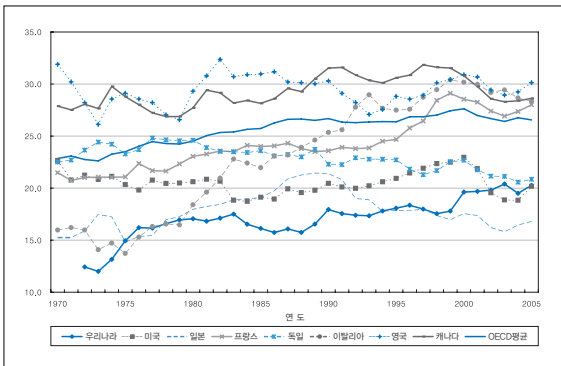
-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효율성 중심의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의 개혁추진
 - 영국(1984년)과 미국(1986년)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이 “낮은 세율-넓은 세원”으로 조세개혁 추진
 - 이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을 축소
 - 그 결과 1980년대에 45% 및 65%에 달하던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는 30% 및 50% 미만으로 낮아짐.
- 세원 확충 등의 노력을 병행하여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상승추세는 지속
 - 2000년대 들어서는 상승하기만 하던 조세부담률이 정체 내지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
 -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자본, 기술, 고급인력)

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OECD 30개국 중 1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15개국이 소득세율을 인하하였기 때문

- 2004년에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자의 악화에 따른 세입증대 정책의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이 소폭 상승
 - EU 국가들은 시장통합에 따른 강화된 법인세율 경쟁으로 세원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에너지관련세를 확충하여 세수 확보

[그림 III-1]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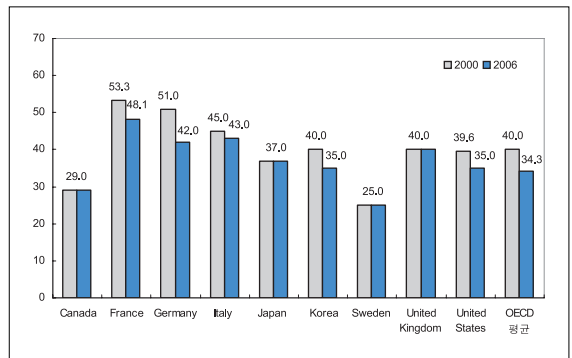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평균이 2000~2006년 기간 중 5.7%p(40.0%→34.3%) 인하됨.
 - G7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9.0%p(51.0%→42.0%)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며, 프랑스 5.2%p(53.3%→48.1%), 미국 4.6%p(39.6%→35.0%) 인하함.
 - 세율변동이 없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세율 인하방안이 2007년 예산안으로 제안됨.
 -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최고세율이 37%에서 40%로 인상되었으나 이는 단일 지방소득세율

의 적용을 조정한 것임.

-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최고세율을 5%p(40.0%→35.0%)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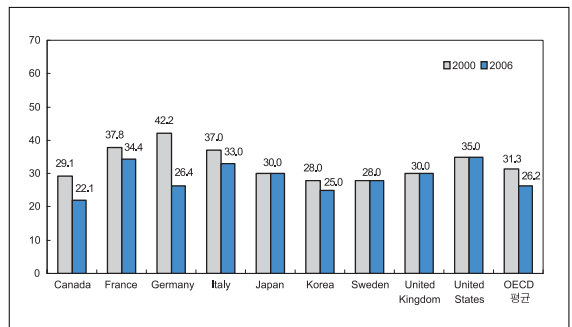
[그림 III-2] OECD 주요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법인세 세율 인하도 두드러지는데, OECD 국가 평균 법정법인세율(중앙정부)이 2000~2006년 기간 중 5.1%p(31.3→26.2%) 인하됨.
 - 동 기간 중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없음.
 - G7 국가 중 법인세율 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독일(15.8%p)이었으며 캐나다(7.0%p), 이탈리아(4.0%p) 순임.
 - 우리나라도 동 기간 동안 3.0%p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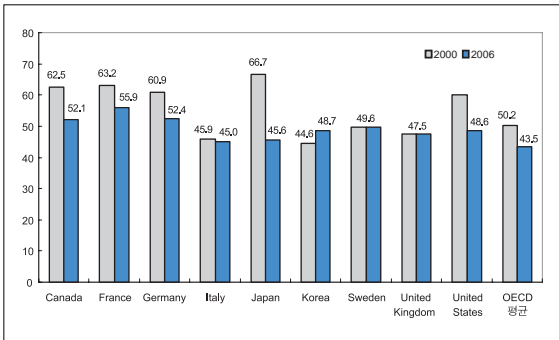
[그림 III-3]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율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거주자에 대한 부담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소득세율+법인세율,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하되었으며, OECD 국가 평균으로는 2000~2006년 기간 중 6.7%p(50.2%→43.5%) 인하
 -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규모가 가장 컸던 국가는 일본(21.1%p)이었으며 미국(11.4%p), 캐나다(10.4%p) 순임.
- 일본의 세율 인하는 2003년 도입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 적용에 따른 결과임.
- 반면 우리나라는 4.1%p(44.6%→48.7%)로 상승하여 지분투자자 부담 증대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에 따른 부담증가임.

[그림 III-4] OECD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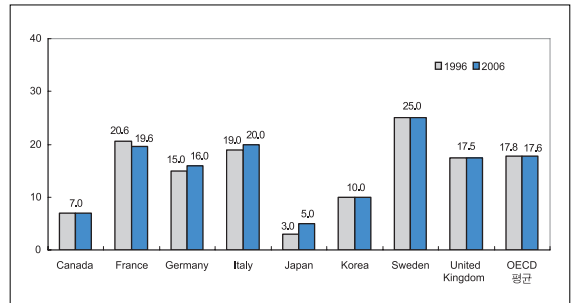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혹은 일반소비세) 평균세율은 1996년 이래 거의 변화가 없음 (17.8%(1996)→17.6%(2006)).
 -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 조달, 재정적자 해소, 연금보험료 인상 회피 등을 위해 1993년(14%→15%), 1998년(15%→16%) 등 2차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2007년에도 3%p 인상)
 - 영국의 경우 법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 보전을 위해 1979년(8%→15%), 1991년(15%→17.5%)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1995년 18.6%→20.6%, 2000년 20.6%→19.6%)
- 일본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부가세율을 2%p(1997년 3%→5%) 인상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소비세율(VAT) 변동



자료: OECD, Tax Database, 2007.

- 그 외 환경·복지 등의 변화하는 조세환경에 부응하여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세 개혁(green tax reform)을 실행
 - 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영국·스위스·네덜란드 등은 기존의 에너지세제와는 별도의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
 - 독일·프랑스 등은 기존 에너지세제의 세율 인상을 단행
- 미국(1975년), 뉴질랜드(1996년), 프랑스(2000년), 벨기에(2002년), 영국(1999년) 등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로서 근로소득지원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 운영 중
- 각종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참가 혹은 추가근로의 인센티브가 약화

됨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업자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노동의욕 고취가 목적

- 우리나라도 근로장려금제도로 2008년부터 소규모로 운영

2. 주요 국가별 조세개혁 동향

가. 미국

- 1980년대 2차레에 걸쳐 소득세율을 인하한 바 있었으나, 클린턴 행정부(1992~2000년) 시기에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 최고세율 인상 : 소득세율 28%→36%, 법인세율 34→35%
 - 이러한 증세 및 재정지출 축소 정책과 더불어 IT투자 등에 따른 경제호황으로 인한 세입증가 등으로 1998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반전
- 그러나 부시 행정부(2000년~현재) 시기에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하강에 대한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최고세율 인하: 소득세율 39.6%→35%, 법인세율 35%→32%)을 2001년 시행
 -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2010년까지)
 - 동 정책은 경기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소득재분배 및 재정수지 악화의 부작용도 초래
- 2001년 및 2002년 감세정책
 - 2001년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11년 동안(2001~2011년) 총 1조 3,500억달러 규모의 감세정책(EGTRRA⁴⁾) 실시

- 기존 5단계 소득세율을 6단계로 개편,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하
- 2002년 3월 9·11 테러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인 조세지원제도(JCWAA 2002⁵⁾) 수립
- 감세규모: 400억달러(2001), 400억달러(2002)

■ 2003년 감세안

- 소비 및 투자진작,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감세안 발의 및 통과
- 2001년 EGTRRA의 소득세 감축일정 단축과 배당세의 잠정 폐지 추진
- 감세규모는 향후 11년 동안(2003~2013년) 3,500억 달러

〈표 Ⅲ-1〉 미국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
(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4.9	△3.6	△3.1	△2.2	△0.8	0.4	0.9	1.6	△0.4	△3.8	△5.0	△4.7	△3.7
국가채무	75.4	74.6	74.2	73.4	70.9	67.7	64.1	58.1	58.0	60.3	63.4	64.0	63.8
경제성장률	2.7	4.0	2.5	3.7	4.5	4.2	4.4	3.7	0.8	1.6	2.7	4.2	3.6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최근 부시 대통령이 세제간소화(Simple), 형평성 제고(Fair), 경제성장 증진(Pro-Growth)을 위한 세수중립적인 조세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2005년 1월)
- 이를 위해 구성된 조세개혁자문단이 2005년 11월, 소득·법인세 간소화 방안(Simplified Income Tax Plan) 및 성장 및 투자지원 방안

4)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5)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 of 2002



(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의 2가지 대안을 제시

- 소득·법인세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배당소득 비과세(이중과세 조정 목적), 자본이득세율 25%(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축소), 반면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율 적용 등
- 성장지원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과세에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투자비 일시상각 그리고 개인의 자본소득(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15% 분리과세 등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 등 GDP 1%에 달하는 감세정책 추진

- 소득세 감세정책은 최저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며 법인세부담은 가속감가상각 혹은 즉시상각을 통해 경감

나. 독일

■ 1980년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3차례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던 독일은 1990년대 들어 통일재원의 마련을 위해 증세정책 실시

-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7.5%의 부가세(surtax) 도입, 부가가치세(1993년 14%→15%, 1998년 16%)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 시행

■ 그러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1998년 슈뢰더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Tax Reform 2000」(’01년~’05년, 3단계에 걸쳐 추진), 「Tax Reform Act 2002」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 소득세율(2000년 22.9~51%→2005년 15~42%) 및 법인세율(2001년 유보소득 40%, 배당소득 30%→유보·배당소득 25%)을 단계적으로 인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

〈표 Ⅲ-2〉 독일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
(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3.0	△2.3	△3.2	△3.3	△2.6	△2.2	△1.5	1.3	△2.8	△3.7	△4.0	△3.7	△3.9
국가채무	46.3	46.7	55.8	58.9	60.4	62.2	60.8	59.9	59.3	61.6	64.6	67.9	69.9
경제성장률	△0.8	2.7	2.0	1.0	1.9	1.8	1.9	3.5	1.4	0.1	△0.2	1.1	1.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5 대연정협약으로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인 3% 및 60%를 각각 초과하는 등의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정책을 추진

-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
- 이는 사회보장 인상과 노동비용 증가 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사회보험재정 충당을 보험료 인상 대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려는 의도

■ 증세 노력으로 독일의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

- 2007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46억(유로)로 2006년의 £258억(유로)에 비해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재정수지 개선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세수증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조세수입은 전년 상반기 £903억(유로)에 비해 18.4% 증가한 £1,070억(유로) 수준

- 2007년 독일 내각은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3월 14일 확정하고 2008년부터 적용할 예정
 - 법인세율(부가세, 주 영업세 포함)을 종전 38.64%에서 29.83%로 8.81%p 인하함.
 - 연방법인세율(부가세 포함)은 26.375%에서 15.83%로 10.545%p 인하
 - 세율 인하에 따라 연방법인세(CIT)에서 주사업세(MBT)를 공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

〈표 Ⅲ-3〉 법인세 인하계획

	종전	개정(2008)
A. 연방 법인세율 (Corporate Income Tax)	25%	15%
B. 연방 법인세 부가세 (Solidary Surcharge)	1.375%	0.83%
C. 주 사업세율 (Municipal Business Tax)	12.275%	14%
A+B+C 총법인세율 (Total Average Tax)	38.65%	29.83%

다. 일본

- 1992년 시작된 장기불황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990년대에 세계 개혁 단행
 -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누진구조 완화(10, 20, 30, 40, 50%→10, 20, 30, 37%)와 법인세의 세율인하(37.5%→34.5%→30%) 등 지속적인 감세 조치 시행(1994, 1998, 1999년)
 -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세입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만 심화되는 부작용
 - 최근 들어서야 경기회복 등으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

- 2000년대 이후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세율 인하 보다는 R&D 세액공제 강화 등 보다 특성화된 정책수단을 이용
 - 세율 인하가 1990년대 후반 이미 이루어진 점과, 법인들의 경우 이익수준이 미미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
 - 보다 투자 및 국내 고용효과가 있는 R&D 세액공제 방식 등을 이용

〈표 Ⅲ-4〉 일본의 재정 및 경제 상황 추이
(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2.4	△3.8	△4.7	△5.1	△3.8	△5.5	△7.2	△7.5	△6.1	△7.9	△7.7	△6.5	△6.5
국가채무	74.7	79.7	87.0	93.8	100.3	112.1	125.7	134.0	142.3	149.4	154.0	156.3	158.9
경제성장률	0.2	1.1	2.0	3.4	1.8	△1.0	△0.1	2.4	0.2	△0.3	1.4	2.7	2.4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6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구조를 개편(2007년 적용)
 - 5%/10%/13%의 세율구조를 지닌 지방소득세를 10% 세율로 단일화한 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소득계층의 세율은 인상
 - 개인소득세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표구간이 2구간 늘어남(기존 4구간→6구간).
 - 저소득구간에 5% 세율구간과 고소득 40% 세율구간 신설

〈표 III-5〉 주민세의 세율구조

2006년 이전		2007년	
적용과세소득	세율	적용과세소득	세율
330만엔 이하의 금액	10%	195만엔 이하의 금액	5%
900만엔 이하의 금액	20%	330만엔 이하의 금액	10%
1,800만엔 이하의 금액	30%	695만엔 이하의 금액	20%
1,800만엔 초과 금액	37%	900만엔 이하의 금액	23%
		1,800만엔 이하의 금액	33%
		1,800만엔 초과 금액	40%

〈표 III-6〉 주민세의 세율구조

2006년 이전		2007년	
적용과세소득	세율	적용과세소득	세율
200만엔 이하의 금액	5%	일률	10%
700만엔 이하의 금액	10%		
700만엔 초과 금액	13%		

- 일본의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부 자문기구 세제조사회의 최근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3년도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5가지 기본관점을 제시
 - 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경제활동에 중립적인 세제를 기본
 - ②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조세의 불공평성을 발생시키는 세제상 모든 조치를 적정화
 - ③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간소한 세제
 - ④ 안정적인 세입구조 구축에 이바지
 - ⑤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세를 충실하게 확보
- 이에 따라 2003년도 세제개편에 일본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IT투자 지원,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통합방안과 세율 인하 포함.

- 또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거래 및 주식에 대한 세 부담 인하와 세제 단순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면허세(거래세) 경감도 포함.

- 2005년도 세제조사회의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세방안 검토
 - 소비세제 분야에서는 소비세율 수준을 두 자릿수(10~15%)로 인상(현재 5%)하고 주류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고 환경세 도입을 검토
 - 소득·법인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의 조세 부담 수준의 인상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되, 법인세의 세율 인하에는 반대
 - 상속세제 분야에서는 상속세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생전증여 촉진을 위한 상속세 정산제도의 활용을 확대
 - 그러나 이러한 세제조사회의 증세방안에 대해 야당은 정부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소비세 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방안을 비판
- 2006년에도 세출분야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율 인상수준을 추계하여 제시한 재정제도 등 심의회(총리 자문기구)가 재무장관에게 제출한 「세입·세출 일체 개혁을 위한 건의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소요 충족에 필요한 소비세율은 12.5~15.5% 정도로 추계
 - 2006년 6월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세출 삭감을 선행한 후 필요시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할 것”임을 표명
- 2007년에 세제조사회의 권고는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인하보다 부분적 조세지원 강화, 개인 금융소득과세에 있어 형평성 확보 등을 포함

- 2003년 도입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이나 양도 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제도는 기한 도래시 폐지
- 상속세의 재분배기능 강화
- 납세환경 개선을 위해 납세자번호제도 도입
- 소비세의 사회보장재원 조달 역할 강화

라. 영국

- 1979년 집권한 보수당인 대처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제전환을 추진
 - 소득세율의 인하 및 누진도 완화(25~83%의 11단계→25~60%의 7단계)를 추진
 - 소득세율은 계속 인하되어 1988년에는 25%·40%의 2단계로 단순화
 - 반면 부가가치세 세율은 인상(8%→15%)됨.
 - 1984년에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52%→1986년 35%)하되 과세베이스는 확대
- 1990년대 초 집권한 메이저 보수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처 정부의 정책을 이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및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시행
 -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35%→33%)하였고, 지방세인 인두세(Poll Tax)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조세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5%p 인상(15%→17.5%)
 - 1992년부터 소득세의 기본세율(25%)·할증세율(30%) 이외에 경감세율(20%)을 신설하여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
 - 1996년 및 1997년에는 소득세의 기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25%→23%)
 - 동시에 영국 정부는 세출삭감 노력과 병행하여 1994년, 1995년, 1997년에 소득세의 과세베이

스 재검토 및 탄화수소세 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 추진

- 그 결과 1993년 GDP 대비 7.9%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1998년에 흑자로 전환
-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1997년 33%→31%, 1999년→30%(소규모법인 20%)) 단행
 - 또한 2000년 과세소득이 1만파운드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초(超)경감세율 10% 적용, 2002년부터는 연간 이윤 1만/30만파운드 이하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10%/20%에서 0%/19%로 인하)
 - 소득세의 기본세율 인하(2000년 23%→22%) 및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을 10%로 인하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
- 그 외 2000년부터 부부공제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는 주택용자 이자공제를 폐지
 - 인적공제로서, 과부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등을 폐지 및 개편하는 등 세원(tax base) 확대노력 지속

〈표 Ⅲ-7〉 영국의 재정 및 경제상황 추이 (GDP 대비 및 전년 대비)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재정수지	△7.9	△6.8	△5.8	△4.2	△2.2	0.1	1.0	3.8	0.7	△1.7	△3.3	△3.2	△3.1
국가채무	49.6	47.8	52.7	52.5	53.2	53.7	48.7	45.7	41.1	41.3	41.9	44.2	46.8
경제성장률	2.4	4.4	2.9	2.7	3.2	3.2	3.0	4.0	2.2	2.0	2.5	3.2	1.7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 2007년 3월 영국 재무장관은 예산발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개별 소비세 인상을 제시
 - 법인세율을 2008년부터 현행 30%에서 28%로 2%p 인하
 - 2009년까지 소규모 회사 법인세율(Small company tax rate)을 현행 19%에서 22%로 1%p씩 단계적 인상(2007년 20%, 2008년 21%, 2009년 22% 적용)
 - 이는 개인소득세 회피 목적의 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함.
 - 개인소득세는 2008년부터 기본세율(Basic rate)을 현행 22%에서 20%로 2%p 인하하고, 현행 10%인 최저세율(Starting rate) 구간을 폐지
 - 세수보전을 위해 연료세, 주세, 담배소비세는 인상
 - 연료세(fuel duty)를 2008년에는 리터당 £0.02 인상, 2009년 £0.018 인상
 - 맥주(£0.01/pint당), 과일주(£0.01/pint당), 와인(£0.05/병당), sparkling 와인(£0.07/병당)에 대한 소비세를 추가 인상
 - 담배소비세를 추가적으로 인상(한 갑당 £0.11)

〈표 Ⅲ-8〉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2007년		2008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최저세율 (starting rate)	£0~2,230	10%	-	
기본세율 (basic rate)	£2,230~34,600	22%	£0~34,600	20%
최고세율 (top rate)	£34,600 이상	40%	£34,600 이상	40%

마. 기타 국가

- 캐나다도 2007년 예산안을 통해 2012년에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정세율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세율 인하 추진(하원통과)

- 법인세 연방세율을 현행 21%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인하
- 법인부가세(연방소득세율의 4%)를 2008년부터 폐지
- 주 법인세율(Provincial-territorial statutory rate)도 2012년까지 10%로 낮추어 총부담세율 25% 목표 제시
-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2007년 38%(주세 포함)의 법인세율에서 약 13%를 낮추는 효과

〈표 Ⅲ-9〉 연방법인세율 인하 계획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현행·계획된 세율	22.12	20.5	20.0	19.0	18.5	18.5
2008 감세율	22.12	19.5	19.0	18.0	16.5	15.0
절감세율 point	-	1	1	1	2	3

주: 2007년 세율인 22.12%는 1.12%의 법인부가세(Corporate surtax)가 포함된 것으로, 법인부가세는 2008년부터 폐지됨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Economic Statement, Oct. 30, 2007, p. 75.

- 개인소득세의 가장 낮은 소득구간(현행 CAD 37,178)에 적용된 세율을 현행 15.5%에서 15%로 낮추어 2007년부터 소급하여 적용
- 현행 15.5/22/26/29% 체계에서 15/22/26/29%로 변경
-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캐나다의 재화·용역세(GST)의 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p 인하
- 스웨덴 정부는 현행 1.5%의 세율로 개인에게 부과되던 부유세를 2007년 말까지 폐지한다고 발표
- 부유세는 SEK1,500,000(부부는 2배)을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부과

■ 그 외 많은 유럽국가들도 2007년에 법인세율 인하, 소비 및 환경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계개편안 발표

- 이탈리아는 2008년 예산안에서 법인세율 인하 제시(33%→27.5%)
- 네덜란드도 2008년 예산안에서 소비세율 인상(19%→20%), 연료소비세, 담배 및 맥주소비세 인상 제시
- 2007년도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9.6%에서 25.5%로 인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1%p를 더 인하하는 방안 검토 중
- 핀란드도 주세 및 에너지/탄소세 인상방안 제시
- 덴마크도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및 에너지세 인상방안 제시
- 뉴질랜드도 법인세율 3%p 인하(33%→30%) 추진

■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거의 없었으며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세 등을 환경세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시행

- 영국은 1996년 10월 쓰레기매입세, 2001년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도입 시행
- 기후변화세는 2000년 3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발표된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통해 시행이 결정되었는데, 산업, 농업 및 공공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과세대상
- 스웨덴은 1991년 탄소세, 유황세, 및 질소세를 도입

3. 시사점

■ 조세제도의 효율성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소득관련 과세축소는 세계적 현상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인세율 및 최고소득세율 인하가 지속적으로 추진

- EU 단일시장의 영향으로 유럽국가 간의 기업 및 인력 유치경쟁 측면 존재
-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 환경세 등의 역할은 강조 추세
-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정체 혹은 완만한 변화 추세

■ 반면 세목 변화는 미미한 실정

- 신규 세목 설치의 어려움 존재
-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탄소세 등의 세목 신설이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부분 기존세목의 변화 혹은 확대

IV. 조세개혁 방향

■ 세계개편에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 조세원리들은 다양

- 국제적 경쟁환경에서 세수를 확보할 필요성
- 경제적 효율성의 회복: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고취
- 형평성의 유지: 소득재분배 및 소득분산의 축소
- 복잡성, 조세회피, 탈세축소를 통한 납세순응 개선

■ 각 조세원리 간에는 상충관계가 있으며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대전제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원리는 없음.

- 조세제도 개혁에 있어 각 원리간 상충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남.
- 조세수입 확보 vs 경제적 효율성
- 형평성 vs 효율성

- 조세제도의 복잡성 vs 세수 확보 및 형평성
 - 조화/경쟁에 대한 외부압력 vs 국가 자립
 -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추구하여야 할 원리들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
- 세계개편시 추구할 조세원리는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효율성·형평성·단순성 등 상충되는 각 원리들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정책결정에 달려 있음.
- 최근 OECD 국가의 세계개편 동향을 보면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추세
 - 2006년 호주 연방정부는 단순화 및 조세수입 확보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조세원칙임을 제시
 - 특히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중시하여 “넓은세원-낮은세율”과 “자본과세에서 소비과세로의 세원 전환”이 활발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필요재원 확보를 기본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세계개편의 원리가 되어야 함.
- 소규모 개방 국가인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기 때문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필요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부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의 조달을 위한 세원 확대 혹은 조정도 필요
-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부과는 시장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므로 감세정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감세정책은 정부의 활동영역을 보다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
 - 그러므로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감세정책의 추진이 필요
 -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조하에 세출예산을 10% 절감하기로 함으로써 감세정책 추진의 여건은 조성
-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낮은 세부담”이라는 성장친화적 조세구조를 형성해야 함.
- 먼저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낮추어 갈 필요
 - 최근 2년간 나타난 초과세수 중 일시적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것이 성장에 바람직
 - 조세부담률: 19.5%(2004) → 22.7%(2007)
 - 그 외 추가적인 세부담 인하정책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전반적인 세부담 인하규모는 중장기적인 정부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 낮은 세부담 수준을 가능한 한 단순한 제도로 구현할 필요
 -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낮은 세율-제한된 공제”의 형태로 단순화한 제도구성이 중요
 - 특히 낮은 세율은 대외 자본유치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
-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감소,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 그리고 효율성에 기초한 세원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
- 재정지출의 축소를 통한 세부담 경감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외국의 지출감소 사례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지속적인 축소는 어려움
 - 높은 수준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추

가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제도를 단순화하므로 납세관련 비용 축소에도 효과적

- 재원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의 역할 조정도 필요
 - 경제적 왜곡효과가 높은 세원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렇지 않은 세원의 비중은 증대
 - 세부담이 높아지는 세원의 경우 정치적 저항이 높으므로 전반적 감세정책과 함께 세원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세부담 수준의 인하는 세목의 효율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약화되는 형평성은 다른 정책으로 보완
- 경제적 왜곡효과가 큰 법인과세 등 자본과세는 그 수준을 외국과의 경쟁 정도를 감안하여 낮추어 나가야 하며,
 - 노동과세도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 추세를 완화할 필요
 - 감세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의 약화는 정책대상을 명확히 한 재정지원이나 조세정책을 통해 보완할 필요
 - 지원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광범위한 조세지원보다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기 때문
 -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지원대상이 특정된 제도의 역할 증대도 효율성과 형평성 양 측면에서 필요
- 대표적 자본과세인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해 낮추어 갈 필요
- 법인의 세부담이 GDP 대비 4.1%(2005년)로 30개 OECD 국가 중 7위 수준(OECD 평균 3.7%).
 - 경감방법으로는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

보다는 법인세율 인하가 바람직

- 다른 국가와의 세율격차를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는 조세경쟁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
 - 유럽지역에 이어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공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16.5~18%)를 추진
 -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
 -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는 법인들의 이익규모 및 분포에 의존하므로 이를 감안하는 것이 필요
 - 법인들의 이익수준이 낮거나 분포가 편중되어 있을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투자,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R&D 공제 등 특정행위와 연관된 제도개선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세율인하보다 R&D 조세지원 중심의 정책 실시
- 동시에 법인세제 선진화 및 감면제도 합리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법인세제 선진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연결납세제도의 정비가 필요
 - 감면제도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감면항목을 축소하고 투자관련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전반적 세율 인하가 노동시장 왜곡 축소, 자본투자에 대한 세부담 인하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
 - 소득세 부담증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납세자계



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이 편중된 가운데 2007년 세수는 20.3조원으로 18.7% 증가

- 소득세 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자영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납세자 비중 증대 등 구조개선 방안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
 -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하여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
 -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누진율 구조하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
-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율이나 세율변화에 따른 과급효과가 크고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 세율 변화는 지양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
 - 안정적 세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할 경우 다른 세목의 세부담을 크게 인하하는 데는 한계
- 그러나 환경, 건강 관련 개별소비세의 역할 증대는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에너지관련 세제의 경우,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에너지복지 등 직접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에너지산업 및 일반산업이 국제적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 기존의 산업경쟁력 측면을 감안한 조세정책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적인 산업생산구조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 **KIPR**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OECD(2008), Tax and Economic Growth, ECO/CPE/WP1(2008)4.
 OECD(2007), Economic Outlook.
 OECD(2007), Revenue Statistics.
 OECD(2007),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No. 16.
 OECD(2006),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OECD Tax Policy Studies, No. 13.
 Owens, Jeffery(2006), "Fundamental Tax Refor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ational Tax Journal, Vol. LIX, No. 1.
 Reed, W. Robert (2008), "The Robust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U. S. State Income Growth,"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1.
 Warren, Neil(2007), "Taxation in 2015? What can be expected and why?," Korea and the World Economy Conference VI.

토론 요약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세제개편 방안 요구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오늘 발표 내용은 앞으로 정부가 조세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발제자가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현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감세정책을 추진하게 된 몇 가지 배경 및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현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최근 5년간 약 19%대에서 22.7%로 약 2.7% 증가한 데 비해 다른 OECD 국가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다른 OECD 국가들이 조세경쟁력을 위해 법인세율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타 국가들은 자본, 노동 등 국가간 이동성이 심한 세원 중심으로 세율을 낮추는 경쟁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역시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 약 2%, 소득세율 5%를 인하하였으나, 법인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간 조세경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위주로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로는 지난 2년간 세금이 상당히 많이 징수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과세기반을 넓히고자 비과세·감면 부분은 줄이고 과표양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적정수준의 지출 및

세입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정 부분의 초과세수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MB정부는 7%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제완화 및 감세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중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훼손 및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지적사항인 재정건전성의 경우 나름의 분석에 의하면 초과세수 14조원 중 7조원은 일시적인 세입이고, 나머지 7조원만 과세기반 확충 노력으로 인한 영구적 초과세수분으로, 후자의 규모에 맞게 감세전략을 수립한다면 국가의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감세정책의 추진은 7조원 외에 추가적인 재원 발생으로 약 9조~10조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과표양성화 수준을 2015년까지 현재의 50~60% 수준에서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대기업 및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문제 역시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대기업에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세제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전부를 대기업 내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익의 일부는 제품 가격의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로, 임금 인상을 통해 종업원에게,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전가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세정책 도입 배경을 전제로, 정부는 감세정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1단계는 최근 개정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유류세율(10%p) 인하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한 감세정책이다. 다음으로 2단계는 금년 6월경에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감세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첫째 법인세 최고세

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둘째,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며 셋째,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다만 70년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큰 틀에서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을 한 정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세제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게 만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개편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소득과세에 대해 발표자는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소득세 인하를 제안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틀린 의견은 아니지만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 과세비중이 약 3.5~4%인 데 비해 선진국이 8~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소득세율 완화가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성화 위해 법인세 감면해야

안종범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 토론회는 그동안 지난 정부와 상당히 다른 방향의 조세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무척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지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지출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큰 정부를 만들어 국가운영을 하려던 기조였으나, 이번 MB정부 들어서서는 정반대가 되었으며, 이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감세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감세가 바람직할지, 지출확대가 바람직할지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있어서도 누진세를 기초로 한 조세제도 강화가 좋을지, 아니면 지출확대가 좋을지 또한 논의중에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염두에 둘 사안은 최근 들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나름대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세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활성화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감세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올 초 CBO에서 경기 진작을 위한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세금감면이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감세정책 도입 여부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 나갈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감세방식에 있어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감면은 매우 중요하며 일리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의견 제시가 쉽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발표자는 물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법인세 감면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경제상황이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부양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두 번째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수혜자가 궁극적으로 볼 때 대기업 또는 가진 자가 아닌 서민 또는 가지지 못한 자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경위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우선 과거 30년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경기변동 특히 경기하강기에 가장 고통받는 대상이 최저소득계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도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

세 인하에 따른 수혜 효과는 실질적으로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로 혜택을 보는 소비자 계층, 둘째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셋째는 배당받는 주주, 네 번째는 투자로 인한 미래투자를 위한 유보이다. 각 계층에 대한 수혜 비중을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잉여재원 중 50% 이상은 투자재원으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약 15%씩 나누어진다고 볼 때, 결국 대기업이 받게 되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 근로자 등의 계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감세방식으로는 조금 전 김낙희 조세기획관이 언급했듯이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단행이 필요하다. 단순히 법인세 인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고 깊이 있는 세제와 세정개혁이 구상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10년에 한 번 정도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조금씩 매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는 보다 신중하고 폭 넓은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국민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정하기에 앞서 공공부문의 범위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공부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공공부문을 어떻게 민간부문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검토하여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걸맞는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책정된 세금부담하에 여러 세목 즉 소득, 소비, 재산세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부담 수준에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를 포함한 부담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토론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수준보다 미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오늘

발표 내용에 조세정책의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메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대표적 세제인 소득세제와 관련한 세제개편 메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그 기능이 미약한 상황으로 세제개편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소득세제 정상화'를, 2단계에서는 '소득세제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화 단계에서 소득세 세수 비중을 확대시켜 소득세 기능을 강화한 후 2단계인 선진화 단계에서는 선진국처럼 소득세 비중은 낮추고 소비세 위주의 과세체제로 정비한다는 의미이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체적 노력들을 살펴보면, 소득세 정상화 단계에서는 과표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50% 수준에 불과한 납세자 비율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면세점을 낮추어야 한다. 면세점 인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근로장려세제는 면세점에 포함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출 및 감면혜택이므로 면세점 인하와의 적절한 조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출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면세점 인하 정책과 잘 접합시킨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 내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996년 이후 계속적으로 과세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진화 단계에서 필요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우선 물가에 연동되는 세율체제로 정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해 오랫동안 세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일정부분 세수초과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업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동

시에 양도차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는 많은 국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이 주식거래와 관련해 단순히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하기보다는 주식양도차익(차손)에 적절한 과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세제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해야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총세수 153조원 대비 약 10% 수준인 14조 2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7조원 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여 감세조치를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발표자는 법인소득세를 우선 인하하며 이런 과정 속에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소득세 인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동의한다. 본 토론자는 이와 같이 동의하는 정책방향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제를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세율이 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OECD 21개국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합산하고 이에 적용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이 경제활성화 및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규제완화 및 땅값, 임금 등의 요소가격 안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다음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47%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면세대상 비중을 줄임으로써 세원은 넓히고 소득세율을 인하는 작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중범 교수는 단계적인 진행을 언급했지만 본 토론자는 가능한 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년에 과표가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작년까지 11년 동안 과표가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적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걸로 판단되어 좀 더 과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소득세율 인가와 관련해 안중범 교수가 물가연동제도를 언급하였는데, 이 제도를 재산세 및 소비세 등 여러 세목 전반에 걸쳐 도입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발표자는 재산세제 특히 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보다는 국민 전체가 순수 재산세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라는 과표를 더 낮추어 세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2013년 이후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2001년 세제개편시 휘발유 대 경유의 세금비율을 100 : 85의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유보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CO나 CO2 등을 더 많이 내뿜는 휘발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에너지 간 세율 조정 또는 세부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입초과분 사회복지 지출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줘야

유경문 /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재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율 인하 혹은 세부담 인하정책은 기꺼이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세제도 및 재정운영에 있어 철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재정 및 세제에 관한 기본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경제사회 여건이 어렵더라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보다 많은 세부담을 안음으로써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분배우선의 철학, 두 번째는 경제가 어려우니 우선 경제부터 살리게 되면 분배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성장우선의 철학이다. 지난 정부가 분배 위주의 정책철학을 취했다면 현 정부는 성장 위주의 철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담 인하를 추진중에 있다.

2007년에 세수입이 14.2조원 초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를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세수입 초과분만큼 세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일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초과세수가 최근 몇 년간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토론자는 과거에 비해 4%대의 낮은 경제성장률하에서 세수초과가 발생한 원인은 IT산업과 연관된 전자정부라든가 조세행정의 전자화로 인해 경영이 투명화되고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세수입의 증가 추세는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 한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도 소득세의 경우 10~40%에서 8~35%로, 법인세도 18~32%에서 13~25%로 세율을 꾸준히 인하하였는 바, 초과세수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법인세율을 22% 수준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율 인하 추진시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앞서 소비자, 근로자 등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을 일부 토론자가 제시하였는데,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대기업이 세율 인하로 발생한 이득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에는 소극적인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과연 법인세 인하가 일반 서민에게 어느 정도의 수혜를 미칠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면세대상 비중이 높으니 납세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고소득자의 경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소비가 많음을 인식한다면 세율 인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세입초과분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짜 경제성장을 위한다면 세입초과분을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완화 방향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에 잉여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초과세수입을 미래 성장동력인 R&D에 투자함으로써 장래의 잠재성장률 상승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일본이 초과세수분을 R&D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초과세수입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 및 학교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가시적인 세율 인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부채가 약 300조원 수준인 현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초과세수를 세울 인하의 논리적 근거로 삼는 것은 국가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의견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5% 내외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잉여세수 및 추가세입 재원을 사회복지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뒷받침해 줄 경제사적 예로 1930년 경제대공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비과세 감면 줄인 후 소득세 인하해야

이 영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늘 발표된 자료는 전반적으로 조세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신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할지를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간단히 언급한 후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지출은 축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세율, 제한된 공제 더 나아가 세목의 효율성에 기초한 세부담 수준 인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법인세 부담 인하 외에 소득세 인하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을 지양할 것과 형평성 추구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새 정부하에서 논의 및 추진되고 있는 정책 내용은 앞서 살펴본 본 보고서의 정책방향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25%에서 20%로의 인하가 논의되고 있으며, 소득세율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p 정도 인하를 고려중이며 면세자 비중을 지금보다 낮춰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를 그리고 상속세는 구체적이진 않으나 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제 두 가지 정책적 입장에 대한 본 토론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인세 인하는 거의 대세인 것 같다. 본 토론자 역시 성장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세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소득세 부담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안중범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소득세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제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특이하게 개선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상당 폭 개선효과가 있다. Luxembourg Income Study는 각 나라에서 수집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모아 놓았는데 세금, 공적이전 및 국민연금에 소득분배에 미치는 개선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국가에서 조세가 소득분배 개선에 상당 폭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세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 영미식 국가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금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 폭이 적다고 해

서, 세금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향후 세원을 양성화하고 이를 위한 각종 감면 및 공제부분을 줄여 나간다면, 조세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본 토론자는 재산세와 관련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누진구조의 재산세라는 매우 예외적이고 왜곡적인 조세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일세율의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여야 하며, 세율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제도의 도입 합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면서 벤치마크 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의 재산세제에 대해서다. 즉 일부 미국의 주에서는 재산세 명목세율이 4%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수도 매우 높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세율도, 세수도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 정부에 납부한 재산세를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실제 재산세 부담이 명목세율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모기지 이자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 이런 모든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부담은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정말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장하고 싶다면 미국처럼 종합 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납부액을 소득공제해 주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경우 종부세는 유량이 아닌 저량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종부세제의 모순성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상속세의 경우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지나치게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다음의 두 가지 이론적 근거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생애기간 동

안 한 번도 과세되지 않은 소득, 대표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두세 가지 더 의견 개진을 해보면, 우선 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으로 이는 추경예산보다는 조세 감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직권 중 하나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직접적인 타깃으로 하여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방법보다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과감히 낮추거나 관세 등을 낮추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음으로 발표 내용 중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발표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 소득이전과 관련해 세율의 격차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법인으로 소득이 숨겨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는 위험감수(risk-take)에 대해 고소득 지급의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정 정도 세율 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국가로 아일랜드를 들 수 있는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의 경우 11%, 소득세율은 35%로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당연

황인학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오늘 발표에서 논의된 새로운 조세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각 국가들은 자본, 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산주체인 기업조차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조세혜택을 통해 생산요소는 물론 생산주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험과 전투적인 노동조합 등으로 기업유치에 불리한 점이 많아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마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는 물론이고 국내기업의 신규투자 유인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명목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실효세율을 보면,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약 20%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비해 미국은 10%도 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는 명목세율과 달리 실질 세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NBER 보고서에 의하면, 유효 법인세율이 증가할수록 국내 총투자율은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율이 높을수록 신규창업비율과 기업밀도가 낮아지는 반면, 지하경제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제 조세경쟁 시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도 경제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수관계인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국제기본법 등 약 50여개 법령에서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각기 달리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문제이다. 혈족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8촌까지,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6촌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요즘 같은 핵가족화 시대에 6촌, 8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모르고 신

고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조세와 관련된 사례를 들면, 국제기본법에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과점 주주에게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납세의무를 진다든지,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총수의 3%를 넘는 경우, 대주주는 물론이고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지 않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차체에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광범위한 규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발표문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상속세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자본이득과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상속세의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주주 할증과세는 당장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경영권과 관계된 최대주주의 지분이동에 대해 20%(지분율이 50% 이상이면 30%) 정도 할증과세하고 있는데, 최고 상속주식가액의 65%까지 세금으로 납부하면 사실상 가업상속이 불가능해진다. 대주주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율도 우리보다 낮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가업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은 100%, 상장법인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 시점이 세대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여서 할증과세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

한편 현행의 종합부동산세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의 50% 이상을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기업이 생산요소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고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이고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기업이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 **KIPF**



정책연구

-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 · 박상원 · 손원익
-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 · 전병목 · 박상원 · 박기백 · 김현아 · 이창용 · 이항용
-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 · 김현아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김우철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교통, 환경, 교육,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세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목적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다는 점에 입각하여 목적세 관련 현황, 기존 이론 및 목적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논란과 관련된 실증분석,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현황에서는 목적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미국 감사원(GAO, 1990)이 '법규에 의해 특정한 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세입'으로 목적세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도 부담금을 목적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세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18.9조원이 세금이며, 사회보험을 제외한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을 합하는 경우 그 규모는 29.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 등 사회보험 성격의 목적세를 합하면 전체 목적세의 규모는 85.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통합재정 세입 대비 40.8%에 이른다.

이론모형에서는 먼저 목적세입(주로 부담금)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재화가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 재화(private good)일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좁은 의미의 목적세는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표나 여론을 통해 표출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그 분야가 예산배분 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지가 높은 교육, 환경, 도로에 목적세가 주로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추세치를 포함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의 경우 모두 목적세가 도입됨으로써 세수 비중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Chow Test의 결과에서도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도입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세 모두 지출 증가와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는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분야에 비해 농어촌이나 수송 관련 지출의

변동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목적세는 지출의 해당 분야의 지출 증대보다는 전체 세수를 확대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조세(부담금)부문은 산업자원분야,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출과의 상관관계 및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적절성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부담금과 해당분야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와 건설·교통분야의 경우 부담금의 운용으로 관련분야의 지출이 확대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업자원분야의 경우 그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담금의 도입이 관련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부담금이 관련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수월성 때문에 부담금이 운용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즉, 분야 전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 조달되어야 할 재원이 부담금이라는 수단으로 조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각 분야가 포함하고 있는 부담금의 수가 많아서 각 개별 부담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개별 부담금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었다.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는 존치하되 세입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세를 비롯한 유류에 대한 과세는 일반과세(특별소비세), 환경세, 교통세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의 재원은 철도, 대중교통,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일반과세에 추가되는 교통세는 무상도로의 확충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



B5변형/152면/2007. 12/ 값 7,000원

로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의 폐지가 어렵다면 복잡한 세입 구조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혜택과 부담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액,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간소화 대상이다. 혜택 또는 지출 용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서도 FTA 지원 등 특정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경우를 보면 석유수입·판매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기여금의 경우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의 성격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조세로의 전환 등 다른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사업비가 전체 지출의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 운용에 지출되고 있어 부과효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2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용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항용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요약 및 정책시사점

재정위험이란 “정부가 재정정책의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Hemming and Petrie, 2000)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 당국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방안을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총량에 대한 재정위험과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분야별 재정위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총량에 대한 재정위험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Hemming & Petrie(2000)이 제시한 ① 현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② 단기적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재정의 민감도 ③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④ 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채택하였다.

제3장에서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우리 재정의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위험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및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본격화되는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 유지 및 세출 증가 관리,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재정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세입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고령화 그 자체만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2050년까지 GDP 대비 9%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될 경우 2050년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6% 및 10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과거 30년 동안 증가한 것처럼 향후 40여년 동안 상승한다면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현재 EU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상한인 GDP 대비 3% 및 60%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기반 유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우리 재정의 중장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인구고령화 그 자체에 의한 효과만을 포함시키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추정치의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건강보험재정의 법적 분담장치 등에 의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재정이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의료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비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져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될 남북경협 및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또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제도화된 재정규율만으로는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재정 재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정당국 및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보하는 보다 탄력적인 형태의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정비하고 복지 및 지방이전재원 등 지출 증가에 대한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당국의 보다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및 재정성과 평가 및 사업관리 내실화, 재정의 투명성 및 외부견제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총량 및 각 분야별 재정위험 등 전반적인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B5변형/451면/2007. 12/
값 22,000원

이러한 재정위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정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기 위한 재정위험백서(가칭) 등 정례화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재정의 총량적 측면에서의 위험과는 별개로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개별 분야별로 재정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위험의 개념 및 측정, 관리방법이 개별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다. 분야별 재정위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채관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공적연금 등 암묵적 채무, 정부의 신용보증·예금보험·수출보험, 민자투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인센티브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Ⅳ장부터 제Ⅶ장에 걸쳐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방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재정위험을 파악하여 그 위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에 따른 연구범위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확정채무> - 국가채무: III장(재정총량), VI장(지방정부), VII장(정부부채)	-보증채무: V장 4절 (보증채무) -신용보증: V장 2절 (정부신용보증) -기타: V장 3절 (민자투자: BTO)
	<미확정채무>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IV장 1절 (사회보장성기금) - 기타: V장 3절 (민자투자: BTL)	
암묵적 채무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부채: IV장 1절 (사회보장성기금)	- 공기업 채무: V장 1절 (정부출자·투자기관) - 중앙은행 채무: V장 4절 (통안증권) - 공적자금: V장 3절 (예금보험) -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III장 4절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주: 외환위기 직후의 공적자금 투입은 우발적/암묵적 채무 → 우발적/명시적 채무 (보증채무) → 직접적/명시적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국제전환)으로 과정을 거친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에 따른 연구범위

제IV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을 구성하는 회계 및 기금 중에서 재정위험의 성격이 일반적인 재정과는 다소 상이한 3개 공적연금(군인연금 제외),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기타 사회보장성기금 및 3개 사업성기금에 대해 각각 적절한 재정위험의 개념 설정 및 이에 입각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현 가입자에 대해 약속한 급여 중 기여금 등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는 '미적립부채'로 재정위험을 측정하였다. 추정된 미적립부채 규모가 국민연금의 경우 GDP 대비 38.6%(2006년), 공무원연금 21.2%(2006년), 사학

연금 3.9% (2006년)에 달해 모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규모는 기여-급여구조의 개혁이 없는 한 2050년 GDP의 98.9%, 30.3%, 5.1%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공적 연금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급여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들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장기간에 분포하는 약속된 급여가 거의 없고 단기간의 재정수지 적자는 기여금 요율 변경을 통해 조정되므로 미래의 지출 규모 자체를 재정위험으로 파악하였다. 즉, 미래 지출규모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혹은 조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재정위험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지출규모는 2008년 GDP 대비 각각 2.5%, 0.3%, 0.4%에서 2050년에는 6.8%, 0.5%, 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기금들의 재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각 위험에 대한 개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역할을 최소한의 필수서비스 제공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제도의 운영효율화를 통해서도 지출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성기금은 자율성, 신축성, 회계의 독립성, 재량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보다 재정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저리의 장기 채권을 강매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서는 순수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하여 신중한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규모가 크면서도 자체 재원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대표적 기금이다. 현재 사업규모가 유지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연간 5천억~6천여 억원의 일반재정 투여가 예상되는데,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위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향후 통일비용을 고민해야 하는바, 통일은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일 자원 규모, 조달 방법, 비용분담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중산기금은 기본적으로 재량적 사업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므로 재정위험이 높지 않다. 중산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강제성이 없어 구매 저항은 없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재원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민간차입금 규모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용자사업의 이차보전방식으로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 V 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위험을 야기하는 기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재정부담과 재정위험을 구분하여 재정부담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았다. 반면 재정위험은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경우 재정부담은 전년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부담으로 2006년 기준 약 5.1조원이다. 200%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정위험은 2006년 약 11.7조원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전체 재정 부담 및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신도시 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등이 원인이므로 향후 관련 투자가 안정화되면 공기업 관련 재정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신용보증의 경우 소요 비용이 1조 9천억원대에서 안

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현재의 손실 규모보다 2배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약 4조 7천억원 수준의 재정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파산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산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자산 평가 및 재무 안정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증공급 증가가 재정부담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증심사의 강화, 목표손실률 적용, 부실 대출에 비례한 금융기관 출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자투자사업, 예금보험, 정부보증, 외평기금, 통안증권 등의 재정부담 및 위험은 간략히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높은 이전재원 비중을 통한 세출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관리제도 또한 세입 내 세출의 예산원칙, 중앙정부의 과세권 및 세출 제한(투융자심사 등),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제 등으로 엄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정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제 VI 장의 지방정부 재정위험 분석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방정부 세원 하락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와 같은 지방정부 지출패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중앙과 지방이 나누느냐가 관건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정부단 계별로 상충되는 견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관리방안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정확한 재정수요

파악을 위한 DB 구축, 세출사무 부담완화를 통한 재정위험 부담의 구체화, 정부간 재정관리효과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거시경제적 충격완화·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위기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Ⅶ장에서는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재정부 국고국이 담당하고 있는 국채관리 기능을 선진국 수준의 PDMO 기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일선부서, 중간부서, 후방부서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운용시스템인 DRMS (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Systems)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종 부채발행 전략에 따른 부채상환비용과 위험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내용은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될 국가부채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관리 보고서는 국가부채관리 정책의 목적 및 업무내역뿐 아니라 국가부채의 규모와 구성, 정부의 자금조달계획, 만기별 국채발행계획, 현금관리정책, 외환보유고 관리, 국가 보증채 및 대출 포트폴리오 및 현황,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 분석 등을 포괄하여 발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부채 및 자산의 시장가치, 단기부채비율, 듀레이션, 평균만기, 회전을, 변동금리부채비율, 항목별 이자비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 위험관리 체계와 각 위험 유형(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에 대한 현황 및 관리체계, 시뮬레이션 모형의 소개 및 모형에 의한 차입비용 및 위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등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KI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4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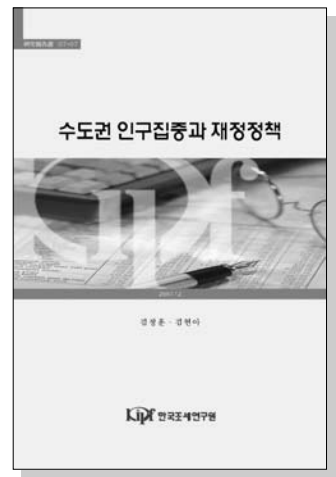
김정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시사점

분권은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키는가 또는 심화시키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대 정책목표가 일관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지난 5년간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참여정부 초기에 추진되었던 국세 세원의 지방 이양이다. 국세 세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 수도권에 대한 세원 이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국세 세원의 지방 이양은 이미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을 재정적으로 더욱 지원하는 것이어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충돌과 딜레마는 양 정책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분권정책은 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균형발전과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역간 격차 문제는 지역간 소득 격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의



B5변형/145면/2007. 12/
값 6,000원


높은 인구 비중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OECD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특징적이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취업기회 등 시장적 요소와, 수도권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시장 메커니즘이

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수도권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적 재화가 순수공공재, 즉 혼잡효과가 거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이를 굳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순수공공재의 공급비용은 이를 소비하는 주민들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효율, 즉 소비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여러 지방정부가 아닌 단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역할이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이전재원이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재정적 요인, 즉 지역 간 순재정 편익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전재원이 이를 거의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만약 수도권의 순재정 편익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인 이전재원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시사점은 단순하면서 명료하다. 대도시가 인구 증가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면서 세출 부담은 비례적으로 지지 않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제공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경우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는 이전재원을 통하여 여전히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

지만, 공공서비스의 일차적 제공 책임자를 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간 인력 배치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면서 또한 동시에 또 다른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7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시사점

국내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및 외국 일류기업들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는 법인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법인세수의 변동 원인을 밝혀보고,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보았다.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을 곱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동일한 법인세 부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

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의 변화는 법인세수 변동과 매우 관련이 깊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법인세수의 증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

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먼저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면, 이는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세부담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등의 총계지표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각 지표에 나타난 세부담이 유사한 수준에서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표별로 확연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 세부담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결손 기업의 실적이 제외되어 있고 실제 납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세부담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 유효세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세부담의 하락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담 결정요인을 명목세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목세



B5변형/147면/2007. 12/
값 6,000원

율과 이월결손금이 평균 유효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2005년 명목세율의 인하와 외환위기 이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증가는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기업 차원의 세부담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기간에는 -0.67%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 평균 3.4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익의 개선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재무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활동에 기인한다면 미래에도 수익 증가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재무활동에 기인한다면 향후에는 현재의

소득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외 손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4% 수준에서 위기 이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재무구조 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총계자료가 아닌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익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 등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하락은 경상이익률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경상이익률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개선이 경상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기업의 소득 증가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결과라면, 이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연결된다.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

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와는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 자체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의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인세수의 증가에는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 법인 수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의 증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법인 수의 증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법인소득뿐 아니라 법인 수를 포함해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수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 납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

류한 기업군의 소득 차별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또는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3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약 64%로 1.9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세수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과세표준(소득)을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평균 유효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은 느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의 증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법인세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 효과는 일정 정도 기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재무구조 개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진 상태로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차입이자율 역시 향후에 더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인 법인 수의 증가와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림에 따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09년 이후에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제도가 실시되면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규모의 양극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미래 법인세수의 안정적인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업회계 감독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과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개별 기업의 회계 및 세무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8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시사점

I. 주요내용

가. 배경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둘째,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한도를 기존의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연금불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였다. 넷째, 연금불입 도중에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 시 일괄하여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 간의 이전을 통해 개인퇴직계좌, 확정기여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일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한 후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고,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한하여 근속연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여덟째,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축소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세법개정을 통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 OECD 등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1차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통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하고, 2차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통하여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3차적으로는 개인연금을 통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다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편인데,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퇴직연금의 도입을 촉진할 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반드시 경감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추가 기여금에 허용되는 소득 공제는 명확한 이득인데 그 규모가 한계적 수준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소폭 축소되는 데 그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유인이 별로 없다.

나. 분석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았다.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서 수급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세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계층에서는 퇴직연금의 세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직전에 발표한 임병인·김세환(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



B5변형/194면/2007. 12/
값 8,000원

으로 퇴직연금의 세부담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완화되었지만, 수급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여전히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불리하며, 특히 고소득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폐지되었을 때 법인세부담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래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부담액의 절대금액이 상당폭 증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코스닥기업과 외부감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 증가액은 크지 않으나 법인세부담의 증가율이 상당폭 증가하여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체감할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 증액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기업을 제외하고 양(+)의 값을 가지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법인세부담의 증가는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3% 내지 10% 정도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산의 규모가 큰 기업은 법인세부담 증가액이 이들 기

업의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은 법인세부담 증가액이 작지만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II.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고 퇴직금이 노후소득보전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제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많은 퇴직자들이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 형태를 선호하도록 세제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및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에 대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분야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해 노후소득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형태를 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금 형태를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

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퇴직금의 세부담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시보다 과세상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세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를 가능한 사외로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의 손금인정한도가 소폭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만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의 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의 증가액이나 증가율이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한도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한도를 35%에서 30%, 20%, 10% 등으로 계속 축소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확정기여형 사용자 부담금한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기준에 의해 사외적립금을 적립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서 비용 증가분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에 추가하여 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도 설정하고 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와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 중에서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설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사외에 적립



하도록 하고 사외적립금 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서는 시행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연금지급 불능사태라는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확정기여형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와 통산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적절한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현재와 같이 통산하여 운용한다면 추가기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07-02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미국, 1억 3천만 가구에 세금 환급

-경기부양 위해 다음 주부터... 4인 가족 1,800달러 지급

미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대규모 세금 환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1억 3천만여 가구로 추산된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1,8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금 환급이 시작되면 경기를 부양하고 미국인들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환급금은 고물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기를 부양시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부시 대통령은 미국 경기가 침체 상태는 아니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다음 주 770만명이 세금 환급금을 직접 은행 계좌로 받게 될 것”이라며 “또 국세청은 다음 달 우편으로 세금 환급분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세청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제때 한 사람들은 오는 7월까지 은행 계좌나 수표를 통해 세금 환급분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2월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시장 신용경색 등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1,680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매일경제 2008-04-27]

인도, 상품거래세 도입 경제에 타격

인도 상품거래소가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의 상품거래세 도입이 자국 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미국 선물협회(FIA)가 경고하고 나섰다.

FIA는 이날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내각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상품거래세 도입이 인도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편지에서 존 M. 댄가드 FIA 회장은 “최근 몇 년 동



안 인도 상품시장은 거래 규모가 800%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예상 밖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상품거래 자금이 역외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인도 상품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세계 10대 상품거래소로 자리잡았다. 연 1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통적으로 금, 은 등 금속 수요가 많은 이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 인도 상품거래소의 하루 거래 규모는 약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인도 정부가 인도 최대 상품거래소인 멀티상품거래소(MCX)와 내셔널상품파생상품거래소(NCDEX)에 거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내년 3월 31일 마감되는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0.17% 상품거래세를 도입한다.

FIA는 국제 상품가 급등으로 한창 상품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거래세를 도입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농민 지원금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정부는 세수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서 거래세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신문은 인도 정부가 거래세 도입을 시작으로 설탕, 콩, 감자 등 각종 상품거래에도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여 상품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MCX와 NCDEX에서의 밀과 쌀 선물거래를 금지시켰다.

씨티그룹 인디아의 로히니 마카니 이코노미스트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인도 상품시장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기업기대지수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경제 2008-04-25]

브라운, ‘감세의 덫’에 걸리나

—영국, 정책 시행 뒤 빈곤층 되레 증가 예상
—중산층 이상만 혜택… 내주 지방선거 ‘악재’

‘감세정책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를 흔들 것인가.’

이달부터 시행된 영국 노동당 정부의 감세정책이 영국 정가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 브라운 총리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의 감세정책은 브라운 총리가 재무장관이던 지난해 3월 발표한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기본율을 각각 2%씩 낮추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모든 영국민에 대해 종전 22%에서 20%로 인하됐다. 노동당으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소득세율을 10%로 책정해 온 규정이 폐지되면서, 임금이 낮은 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감세안이 영국 내 약 53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BBC는 감세안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연간 소득수입이 1만 7,500파운드(약 3,470만원) 이상인 ‘중산층’이라고 전했다. 보수당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10% 소득세율’ 폐지로 30만명 이상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고 23일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당은 감세정책을 소재로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고, 노동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28일 의회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노동당 의원 41명이 예산안 승인 거부 결의했다. 브라운 총리와 내각이 감세정책을 보완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노동당 의원 86명도 감세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급해진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영국 언론들이 이 같은 움직임을 '세금 시위', '노동당의 반란' 이라 부르는 가운데 브라운 총리는 사석에서 "예산안 거부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노동당 내에서 의회 예산안 표결은 사실상 브라운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로 해석된다"면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경제 분야의 업적을 자랑해 온 브라운 총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동당 지지율은 바닥을 맴돌고 있다. 브라운 총리의 지지도 역시 개인적으로 낮은 인기였다 주력 위기, 세계 경제 침체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저조하다. 다음 달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노동당이 자유민주당에도 패해 제3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2008-04-24]

중국, 증권거래세 0.1%로 인하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24일부터 0.3%에서 0.1%로 내린다. 지난해 5월 증시 폭등으로 거래세를 올린 지 1년 만에 원상 회복시킨 셈이다. 중국 재정부는 23일 장 마감 후 이 같은 거래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거래세 인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4.15% 오른 3278.33에 마감하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정부는 작년 10월 16일 사상 최고치(6092.06)를 찍은 후 반년 새 주가가 반토막날 만큼 증시가 공황 상태에 빠지자 지난 20일 증시 수급의 최대 악재로 꼽혀온 비유통주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를 전격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장중 3000선이 깨지면서 시장에 선 추가적인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났

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증시 부양 조치로 상하이 증시가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한 펀드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모건스탠리 중국증권시장부의 리징 주석은 "내국인 전용 A주의 PER(주가수익비율)가 21배로 크게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외국의 우량기업이 연내 중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외자유치지침을 통해 조건에 맞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H주)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홍콩 H주 지수는 이날 3.11% 오르며 지난 3월 20일 연중 최저치(10,836)를 찍은 이후 한 달여 만에 27%나 상승했다.

오재열 한국투자증권 중화시장팀장은 "한국에서 팔린 중국 펀드의 경우 대부분 홍콩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8-04-24]

일본, 휘발유값 다시 오를 듯

1리터에 25엔이 내렸던 일본의 휘발유값이 다음 달부터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일본 총리는 어젯밤 자민당 간부 회의를 갖고 리터당 25엔씩의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율을 부활하는 내용의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중의원에서 재가결하기로 결정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휘발유 가격 재인상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와 지방의 세수 부족을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후쿠다 총리는 중의원 재가결 후 내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등 개혁 방침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휘발유 가격 재인상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 2008-04-23]

재정정책 ·

인도, 국부펀드 설립 논의 활발

- 경제수장들 “3,000억달러 외환보유고 활용해야”
- “논의 미흡, 좀 더 신중한 검토 필요” 주장도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일부로 국부(國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에서 국부펀드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몇몇 경제수장들이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3,00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다. 하지만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22일 의회에서 국부펀드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치담바람 장관은 만모한 싱 총리의 경제자문위원들도 국부펀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총리에게 조언했다고 말했다.

외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야가 베누고팔 레디 총재도 “정부가 국부펀드와 관련해 글로벌 기준 마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부펀드 설립을 둘러싸고 정부가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레디 총재는 “외환보유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만큼 일부를 따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국부펀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레디 총재는 국부펀드 설립안들이 아직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지난 2월 50억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곧 설립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50억달러라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들 중에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일본에서도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연금펀드로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달러에 달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 규모는 최대 3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04-24]

중국, 기업연금 2010년 143조원에 달할 듯

중국의 기업연금기금 규모가 오는 2010년까지 1조 위안(약 1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현지 시간)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퇴직자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이 아직 미숙한 중국에서 매월 3만개 이상의 중국 기업과 직원들이 기업연금기금에 돈을 쏟아 붓는다고 전했다. 기업연금기금은 지난해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와 1,500억위안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8개 금융업체가 기업연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시아경제 2008-04-22]



러시아, 에너지 국유화 역풍

- 민간기업 · 해외자본 축출로 새 유전 개발 중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창한 '강한 러시아'의 기반이던 에너지 국유화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원유 생산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 유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해외자본을 내쫓는 국유화 정책으로 러시아의 새 유전 개발 능력이 담보 상태에 놓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의 1·4분기 1일 원유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 하락한 976만배럴을 기록, 지난 10년간의 상승세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의 레니드 페둔 부사장은 "러시아 최대 유전인 시베리아 유전이 바닥을 보이고 채굴 비용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북극 유전 등 새 유전 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2003년 에너지 국유화 정책을 시작한 이래 새 유전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유코스를 비롯해 당시 흑자를 기록하던 민간 석유기업들을 국유화했다. 또 영국 정유회사 로열 더치 셸에 러시아 유전 프로젝트 지분의 절반을 러시아 국영회사에 매각토록 압력을 넣는 등 해외 기업의 경영에도 간섭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기업이 추진하던 새 유전 개발이 중단됐고 러시아 유전 개발에 참여한 해외자본도 쓸물처럼 빠져나갔다. 러시아 경제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연 6~7%의 고성장을 구가한 이면에는 이 같은 원유산업의 기반 붕괴가 존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가 향후 8년간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3,000억달러(약 29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에너지 국유화 체제에서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즈프롬, 루코일 등 국영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에 '돈 줄' 역할을 해왔을 뿐 시추 능력 확보 등과는 담을 쌓고 지내왔다.

모스크바 알파은행의 분석가 로널드 스미스는 "러

시아 정부가 최근 석유기업의 채굴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 40억달러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51% 이상의 러시아 자본 참여를 의무화한 투자규제법을 손질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08-04-22]

중국 정부, 석유업체에 보조금 지원

- 시노펙, 1분기 순이익 50% 급감 예상

중국 정부의 석유가격 통제로 인해 지난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페트로차이나)와 중국석유화공사(시노펙)가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성장 둔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 정유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시노펙은 지난해 49억위안(약 6,957억원)의 보조금을, 올해 1·4분기 들어 74억위안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지만 페트로차이나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는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원유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중국 내 석유가격을 통제해 정유사들의 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됐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8.7%나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거세지자 당국은 건축과 관련된 고육지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국유기업인 시노펙도 이 방침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76달러 이하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의 자리에 올랐던 페트로차이나는 지난해 11월 5일 공모가 이탈로 48위안이 넘던 주가는 16위안으로 폭락했다.

시노펙은 지난 19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그러나 전체 공급량의 20~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페트로차이나에 비해 공급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시노펙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오는 28일 발표된다.

[아시아경제 2008-04-21]



| 정책 흐름 |

- '08. 1분기 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08. 1분기 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 이 자료는 2008년 5월 6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에서 발표한 「'08. 1분기 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08년 1분기 중의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80.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4% 증가

'07년 1분기 '08년 1분기 증가율

- 신고금액 39.0억달러 80.1억달러 105.4%
- 신고건수 2,678건 2,838건 6.0%

◇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짐

* 한국석유공사의 미국 멕시코만 해상유전사업 지분 참여 (12.0억달러)

- 투자주체별로는 대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
 - 증가율 : 대기업 157.9%, 중소기업 67.9%, 개인 등 43.1%
 - ※ 투자비중(금액기준) : 대기업(56.2%), 중소기업(36.0%), 개인(7.8%)
- 업종별로는 광업, 도·소매업 투자가 크게 증가
 - 증가율 : 광업(673.5%), 도·소매업(155.3%), 부동산·임대업(101.9%)
 - ※ 투자비중(금액기준) : 제조업(26.2%), 광업(24.0%), 도·소매업(16.1%), 부동산·임대업(14.2%), 사업서비스업(7.2%), 건설업(4.6%), 통신업(1.6%)
- 국가별로는 미국, 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
 - 미국(256.5%) :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의 유전

사업 참여 등

- 베트남(263.0%) : 오투기와 금호렌터카의 현지법인 설립 등
- ※ 투자비중(금액기준) : 미국(29.1%), 중국(13.5%), 홍콩(9.7%), 베트남(8.5%), 모나코(3.6%), 러시아(3.2%), 캄보디아(2.7%), 말레이시아(2.5%), 일본(1.7%)

'08년 1분기 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I. 개요

- 2008년 1분기 중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80.1억달러이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은 41.1억달러(증가율 105.4%)로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달러, 건, %)

구 분	2007					2008
	계	1/4	2/4	3/4	4/4	1/4
신고금액	274.8	39.0	64.2	47.0	124.6	80.1
(증가율)	(48.3)	(1.3)	(92.6)	(Δ13.1)	(109.8)	(105.4)
신고건수	11,619	2,678	2,996	2,841	3,104	2,838
(증가율)	(15.4)	(20.0)	(19.8)	(12.0)	(10.8)	(6.0)

※ 연도별 및 분기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 금융·보험업 투자를 제외한 금액임

- 해외투자 규제완화, 자원개발 투자 확대,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등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추세

II. 투자주체별 동향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등 투자주체가 모두 전년에 비해 공히 증가
 - 대기업 투자는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157.9% 증가
 - 중소기업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67.9% 증가
 - 개인 등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43.1% 증가

〈투자주체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억달러, %)

구분	'06년	'07년	'08.1~3월		증감률 (전년 동기비)
			1~3월	1~3월	
전체	185.3	274.8	39.1	80.1	105.4
대기업	114.7	152.3	17.5	45.0	157.9
중소기업	57.0	105.3	17.2	28.8	67.9
개인 등*	13.6	17.2	4.4	6.3	43.1

* 개인, 개인기업, 비영리단체 등 포함

III. 업종별 동향

- 업종별로는 광업(673.5%)이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폭 증가
 - 주요 투자대상 국가는 미국(13.9억달러), 오스트레일리아(1.2억달러), 카자흐스탄(1.0억달러) 인도네시아(0.3억달러)
- 사업서비스업(199.7%), 도·소매업(155.3%) 및 부동산·임대업(101.9%) 해외투자도 많이 증가

- 주요 투자대상 국가
 - 사업서비스업은 홍콩(2.1억달러), 아일랜드(1.0억달러), 싱가포르(0.6억달러)
 - 도·소매업은 미국(5.1억달러), 홍콩(2.9억달러), 중국(2.2억달러)
 - 부동산·임대업은 모나코(2.9억달러), 베트남(3.5억달러)임

*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광고, 전문직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며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지주회사가 포함됨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억달러, %)

	'06년	'07년	'08년		증감률 (전년 동기비)
			1~3월	1~3월	
전체	185.3	274.8	39.0	80.1	105.4
제조업	78.8	94.9	17.7	21.0	18.5
광업	38.4	30.7	2.4	19.2	673.5
도·소매업	14.4	30.0	5.0	12.9	155.3
부동산·임대업	15.7	40.9	5.6	11.4	101.9
사업서비스업	7.3	35.5	1.9	5.8	199.7
건설업	9.8	17.6	2.4	3.7	51.9
통신업	3.1	3.6	0.1	1.3	1135.1
운수업	5.7	5.0	0.4	1.3	217.4
숙박·음식점업	3.6	3.9	0.9	0.9	7.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3	4.4	0.006	0.3	5580.1
기타	5.2	8.3	2.6	2.3	△11.5

IV. 국가별 동향

- 미국은 자원개발업체인 삼성물산과 한국석유공사의 미국 멕시코만 해상유전사업 지분 참여 등으로 투자규모가 확대(256.5%)
- 베트남은 식품업체인 오투기와 렌터카업체인 금호렌터카의 현지법인 설립 및 STX엔진·STX조선

의 종합 조선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투자액이 증대 (263.0%)

〈투자대상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억달러, %)

	'06년	'07년	'08년	증감률	
					1~3월
전 체	185.3	274.8	39.0	80.1	105.4
미 국	21.7	43.5	6.5	23.3	256.5
중 국	45.0	64.8	13.7	10.8	21.5
홍 콩	11.0	15.7	1.5	7.8	415.0
베 트 남	17.7	25.5	1.9	6.8	263.0
모 나 코	-	-	-	2.9	
러 시 아	1.0	4.3	0.4	2.6	569.4
캄보디아	1.7	8.1	1.5	2.2	43.3
말레이시아	6.2	9.0	0.6	2.0	243.6
일 본	2.9	6.2	1.6	1.4	△15.9
싱가포르	6.0	4.7	0.2	1.2	480.3
기 타	72.1	93.0	11.1	19.1	72.1

참 고

[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건, %)

구 분	구 분	2005	2006	2007	'07.1~3월	'08.1~3월
	건 수 (증감률)	8,738 (23.3)	10,071 (15.3)	11,619 (15.4)	2,678 (20.0)	2,838 (6.0)
금융 보험업 (B)	금 액 (증감률)	- (-)	- (-)	14.5 (-)	1.4 (-)	14.8 (957.1)
	건 수 (증감률)	- (-)	- (-)	92 (-)	8 (-)	49 (512.5)
금융 보험업포 함(A+B)	금 액 (증감률)	91.7 (13.0)	185.3 (102.1)	289.3 (56.1)	40.4 (4.9)	94.9 (134.9)
	건 수 (증감률)	8,738 (23.3)	10,071 (15.3)	11,711 (16.3)	2,686 (20.3)	2,887 (7.5)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융보험업은 '07년부터 집계 시작

[2]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신고기준)

(단위: 억달러,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금융 보험업 제외	금액 (증감률)	38.5 (88.9)	33.3 (80.6)	54.1 (91.9)	59.4 (140.8)	39.0 (1.3)	64.2 (92.6)	47.0 (△13.1)	124.6 (109.8)	80.1 (105.4)
	건수 (증감률)	2,232 (17.4)	2,500 (13.1)	2,537 (8.0)	2,802 (23.1)	2,678 (20.0)	2,996 (1938)	2,841 (12.0)	3,104 (10.8)	2,838 (6.0)
금융 보험업 포함	금액 (증감률)	38.5 (88.9)	33.3 (80.6)	54.1 (91.9)	59.4 (140.8)	40.4 (4.9)	72.4 (117.4)	50.7 (△6.3)	125.8 (111.8)	94.9 (134.9)
	건수 (증감률)	2,232 (17.4)	2,500 (13.1)	2,537 (8.0)	2,802 (23.1)	2,686 (20.3)	3,026 (21.0)	2,875 (13.3)	3,124 (11.5)	2,887 (7.5)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융보험업은 '07년부터 집계 시작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이 자료는 2008년 5월 2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정부는 5. 2일 오후 2:00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을 논의하였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08. 5. 2(금) 14:00/기획재정부 대회의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팀장),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토해양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 안건
 - 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 ②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방안(행정안전부 등)
 - ③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의 실효성 재 점검
 - 돼지고기, 양파,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농림수산식품부)
 - 밀가루, 빵, 스낵과자 등 가공식품 (농림수산식품부)

I. 최근 물가 동향 및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 최근 1~2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상승
 - * 로이터 상품지수 : (05말)1,797→(06말)2,229→(07말)2,593
→ (08. 2말)3,004

①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비 4.1% 상승(전월비 0.6%)

-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08. 3월부터 3% 초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동향(전년 동기 · 월 대비, %)

구 분	'04	'05	'06	'07		'08				
				4/4	1	2	3	4		
소비자물가	3.6	2.8	2.2	2.5	3.3	4.0	3.9	3.6	3.9	4.1
근원물가	2.9	2.4	1.8	2.4	2.4	3.1	2.8	2.8	3.3	3.5

② 부문별 동향

- (석유류) 국제유가 상승, 환율 상승 및 동절기 난방유 탄력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
- (공업제품) 국제 곡물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빵 · 비스킷 등 가공식품과 창틀 · 타이어 · 세

제·화장지 등의 가격이 상승

- (개인서비스) 3월에 비해 상승률은 낮아졌으나 밀가루 가격 상승 등으로 자장면·피자 등 외식비 중심으로 상승
- (농축수산물)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돼지고기·고등어·배추 등 일부 품목이 크게 상승

부문별 물가동향

구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요금	집세	개인서비스
			석유류	기타			
전월비(%)	0.6	0.6	1.2	3.1	0.4	0.3	0.3
기여도(%p)	(0.6)	0.05	0.37	0.19	0.06	0.03	0.10
전년 동월비(%)	4.1	△0.2	6.7	18.7	3.0	2.1	4.1
08. 4월 기여도(%p)	(4.1)	△0.02	2.03	1.04	0.50	0.20	1.45

③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 석유류제품,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품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기타 배추,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도 가격이 상승

- (배추) 월동배추 출하 종료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전월 대비 6.9%)하였으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가격안정 전망

- (돼지고기) 황사, AI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 등에 따라 13.1% 가격 상승

* 방송통신판매 수수료 인하(농식품부 예산 지원) 등 유통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수입업체들이 추진 중인 수입물량 확대도 가격안정에 기여할 전망

- (미늘) 전월 대비 3.8%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 가격 대비로는 △3.7% 낮은 수준으로 일상적 가격변동으로 판단

- (고등어) 4월 산지해역 강우·강풍 및 금어기 도래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량 부진으로 전월 대비

9.5% 상승

* 정부 수매·비축 물량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가격 변동 완화 중

- (양파) 재배면적 감소, 봄철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 등에 따라 상승(전월비 19.0%)했으나, 향후 출하량 증가로 하향 안정 전망

52개 품목별 상승률(전월비 상승률, %)

구분	1% 이상 상승(16개)	1% 미만 상승(14개)	변동 없음(13개)	하락(9개)
품목	양파(19.0)	휘발유(0.9)	우유(0.0)	파(△34.3)
	돼지고기(13.1)	라면(0.9)	바지(0.0)	식용유(△4.3)
	등유(11.9)	콩나물(0.8)	삼푸(0.0)	무(△4.2)
	고등어(9.5)	스낵과자(0.8)	전기료(0.0)	쇠고기(△1.6)
	배추(6.9)	밀가루(0.7)	전철료(0.0)	달걀(△1.0)
	경유(6.0)	쌀(0.6)	시내버스료(0.0)	공동주택관리비(△0.9)
	고추장(3.8)	설탕(0.6)	시외버스료(0.0)	위생대(△0.4)
	마늘(3.8)	학원비(0.5)	상수도료(0.0)	멸치(△0.2)
	빵(3.5)	목욕료(0.4)	쓰레기봉투료(0.0)	LPG(△0.1)
	화장지(3.0)	방송수신료(0.3)	이동전화통화료(0.0)	
	사과(2.2)	주거비(0.3)	외래진료비(0.0)	
	도시가스(2.1)	유아용품(0.1)	가정학습지(0.0)	
	두부(2.0)	납입금(0.1)	보육시설이용료(0.0)	
	자장면(1.1)	소주(0.1)		
	이미용료(1.1)			
	세제(1.0)			

II.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유가·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1)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보완방안

-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
- 정부중앙청사(5. 1 시행) 이외에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주차장 유료화 실시

- 공공부문 전광판의 심야 소등 의무화
 -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홍보전광판, 옥외광고물의 심야(저녁 10시 이후) 소등 의무화
 - * 지자체 : 즉시 시행, 공공기관 : 총리지침 개정 후 즉시 시행
- 공공기관 청사 야간 소등 의무화
 - 야간시간(저녁 10시 이후)에는 전원을 원칙적으로 차단 (6월)
- 공공기관 청사에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
 - 청사주차장 징수비 및 자체절감 예산 등을 활용하여 고효율 조명기구, 반사각 교체 등 고효율기기를 우선 설치 (6월)

(2)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민간의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여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사료업체, 제분업체 등 국내 주요 곡물수입업체와 식료품 생산업체 등의 해외 농업개발 등 지원
 - * '08. 2월 현재 작물 재배업체 11개, 바이오에너지 관련업체 6개가 해외 진출·운영 중
 - 해외 농업개발사업 추진전략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6월)
 -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12월)
- 해외 선물시장 및 물류관련 전문인력 채용·양성 (6월)
 -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농협에 선물시장 관련 전문가를 채용·양성하여 국제곡물가격 변동위험에의 대응능력 강화
- 주요 수입 곡물의 국내 대체생산 확대방안 마련
 -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재배 확대 등 생산대책 마련 (6월)
 - 기존 식용 보리 생산농가의 청보리 생산 전환 유도
 - 보리 재고량(07년 말 29.6만톤 추정)을 사료 원료

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

- 곡물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쌀 가공식품 보급 확대(농식품부)
 - 국제가격이 급등한 밀의 대체식품으로 쌀 가공식품 보급 확대
 - 쌀면(국수·라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5.20)
 - * 품목별 가격 : 밀가루 855원/kg, 쌀 공급가격 355원/kg
 - 쌀 가공식품 박람회 등 소비·홍보 행사로 쌀 가공 수요 확대 추진
 - * 쌀 가공식품 종류('07 점유율) : 떡(58%), 면류(0.2), 쌀과자(6), 주류(22), 기타(13.8)

(3)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대책의 추가·보완

- 생활필수품 100여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실효성 있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행위 유도(5. 20 일경 수입가격 공개)
 - 수입단가와 국내 판매가격과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등으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입단가 공개
 - * 예1) 안경테(원산지별 가격격차 큰 품목) : 이태리산, 미국산, 중국산, 일본산 등 원산지별 평균 수입단가 공개
 - 예2) 청바지(브랜드별 가격격차 큰 품목) :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브랜드 평균 수입단가
 -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1개월 단위로 공개
- 수입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적극 활성화하여 가격 경쟁 촉진
 - 화장품 수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규제 폐지(12월)
 - * 해외 제조업체가 병행수입업체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문제 해결
 - 모조품 방지 및 병행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검사 실시 등 보완 방안 마련(6월)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 등이 기재된 라

벨을 사전 심의를 거쳐 부착·첨부하는 경우에도 수입 가능하도록 개정(12월)

* 현재 식약청 고시에서는 제조 단계 또는 국내 재포장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직접 한글로 인쇄하도록 제한스티커 라벨 부착 상품은 수입 불가)

- 관련 수입업체, 소비자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및 병행수입 물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6월)

• 병행수입물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병행수입 촉진

* 통관보류 요건 : ①상표권자가 병행수입물품의 진정상품 여부를 의심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지적재산권 침해물품임이 명백한 경우(관세법 제235조)

■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하고 가격차이 발생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유도(소비자원)

•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인 커피·화장품·자동차 등의 가격차이 발생원인 분석 및 정보 공개

* 커피·화장품(5월), 자동차(6월) 가격차 발생원인 분석 및 정보 공개 예정

• 가격격차가 현저히 큰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시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범위만 여부 집중 점검 및 유통구조 개선

■ 소비자단체의 품질테스트 보고서를 내실화(한국판 Consumer reports 발간)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격·품질 경쟁 촉진

* 한국은 소비자원 등이 월 1~3건의 보고서 발간, 미국(Consumer reports), 영국(Which), 호주(Choice) 등은 월 8~9건의 가격 및 품질테스트 보고서 발간

• 현재 소비자원 등이 품질테스트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가격·성능 등의 복합적인 비교 분석이 미흡

* 미국의 Consumer Reports의 영향력 사례 : 미쓰비시 SUV

모델 결함 지적후 판매량이 60% 하락

• 소비자단체의 가격 및 품질테스트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품질테스트 비용 등 예산 지원

■ 쌀가격 안정대책 추진(농식품부)

• 쌀 가격이 '07년 국내산 생산량 감소(441만톤, 전년 대비 5.8% 감소)로 수확기 이후 상승

* 산지 쌀값 : ('07. 4. 25) 150,584원/80kg→('08. 4. 25) 157,808 (4.8%↑)

• 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공공비축 산물벼·수입쌀의 탄력적 공급으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지속 추진

- 밥쌀용 수입쌀(48천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물량(94천톤), 농협보유곡(5만톤) 공매(4. 8, 4. 30) 등으로 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쌀값 상승 둔화 노력

- 농협 보유곡 공매잔량 등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5월중) 정부곡은 민간재고 등 수급 상황을 고려 6월중 공매 검토

* '08. 4. 15일 기준 재고량은 농협 59만톤(월 13만톤 소비로 8월 말까지 소요량), 민간이 17만톤(월 6.5만톤, 7월 초) 수준으로 공급여력은 충분

■ 기타 유류비·통행료·통신비 등 서민생활비 인하 방안 지속 추진(5월 중 중점 추진 사항)

• 5. 1일부터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전액을 면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 5. 20일부터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대한 출퇴근시 통행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3인 이상 탑승시)

• 통신시장 신규진입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기정위 회부, 08. 1. 29일)

• 중앙공공요금 상반기 중 지속 동결 및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 유도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 상반기 중 약 40억원을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지급 예정, 지방공공요금 인상분 환원 조치한 청주시·원주시에 각 1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급 결정

* 지방공공요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조치사례(5. 2 현재)

- 금년 말까지 모든 공공요금 동결 : 대전, 광주, 제주 등 3건
- 인상 유보 : 서울(하수도), 전북(시내버스료 등), 사천시(하수도) 등 5건
- 인상 환원 : 청주(쓰레기 봉투), 원주(상수도료)
- 라면·과자류 등 32개 생필품의 용량을 조사(4. 2~4. 30일, 354개 제품)하여 부정적 표시 업체(5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예정(기술표준원)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매일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 「서민생활 안정 T/F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해외 주요국가 소비자 물가동향

국가	'06	'07	'08			정부전망치
	연간	연간	1	2	3	
미국*	2.2 (CPI: 3.2)	2.1 (2.9)	2.0 (4.3)	2.0 (4.0)	2.0 (4.0)	FRB는 근원 PCE 1~2%를 comfort zone으로 봄
유로	2.2	2.1	3.2	3.3	3.6	ECB의 중기 물가안정 수준: CPI 2%
일본	0.3	0.0	0.7	1.0	1.2	반기별 추정 예상물가를 근거로 통화정책 운용 08년 예상 물가상승률 : 당초 0.2~0.4%('07. 10)에서 0.9~1.1%로 상향조정 ('08. 4) 매년 전인대에서 경제운용 방향 발표 '08년 물가 목표('08. 3) : 4.8%
중국	1.5	4.8	7.1	8.7	8.3	싱가포르 통화청 '08년 예상물가상승률('08. 4) : 4.5~5.5%
싱가포르	1.0	2.1	6.6	6.5	6.7	-
홍콩	2.1	2.0	3.2	6.3	4.2	-
대만	0.6	1.8	3.0	3.9	4.0	-

* 미국은 근원 PCE 지수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나머지 국가들은 CPI(소비자물가상승률)

기추진 대책 점검 결과

과 제 명	점검결과	세부 추진실적
유류세 10% 인하	조치완료	• 3. 3일 관련법 일괄 개정 • 3. 10일 공포·시행완료 • 3. 10일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정상추진	•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4. 29일)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조치완료	• 실시간 공개 시스템 가동(4.15일부터)
택시LPG 유류세 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조치완료	• 택시용 LPG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전액 면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5. 1일 시행)
곡물·농자재·석유 제품 82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조치완료	• 곡물 관련 32개 품목 무세화(4.1일) • 니켈 등 원자재 37개 품목 무세화 • 석유제품 등 기타 1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
옥수수·대두 등 시장접근물량 확대	조치완료	• 14개 품목 시장접근물량 확대(3. 28일)
쌀면 보급 확대	정상추진	• 수요조사를 근거로 시범사업계획 수립(4. 23일) • 쌀면류 제조업체 토론회 실시(4. 28일)
교육비 관리 강화	정상추진	• 학원수강료 표시제 및 수강료 초과징수 점검 - 5,640개 학원 점검, 100개 학원 적발(4월)
모기지금리 동결	조치완료	• 국민주택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현 5.2%) 동결
중앙공공요금 동결	조치완료	•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 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여 인상 동결 완료(3. 3일)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조치완료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통해 협조요청(3.10일, 4.18일)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정상추진	• 광역자치단체 서비스 개시(4. 21일) •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개시(5. 19일 예정)
심야전력 요금 인상분 환원	정상추진	• 세부시행 방안 검토(4. 30일까지)
생활필수품 선정 및 가격동향 점검	정상추진	• 52개 생활필수품 선정(3. 25일) • 4월부터 10일 주기로 가격 동향 점검
철근 매점매석 고시	조치완료	• 매점매석 행위 고시 완료(3.11) • 1차(3.12~13), 2차(3.26~28), 3차(4.28~5.2) 단속 실시
합동점검반 구성	조치완료	• 소비자단체(246개)에 합동점검반 구성완료(3월)
통행료 50% 인하	정상추진	•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후 5.20부터 시행예정
수입가격 공개	정상추진	• 품목별 수입가격 공개 방안 검토 중(5. 20일경 공개)
용량표시 조사	조치완료	• 354개 업체 조사 결과 5개업체 적발, 고발 예정
Consumer reports 발간	정상추진	• Consumer reports 발간업체 선정(5월중)
국내·외 가격차 조사	정상추진	• 커피, 맥주 등 6개 품목 국내·외 가격차 조사 중

주요 세부대책 실천계획

순번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1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	행안부	7. 31일
2	공공부문 전광판 심야 소등 의무화 등	행안부등	6. 30일
3	공공기관 청사 야간 소등 의무화	행안부 등	6. 30일
4	공공기관 청사 고효율기기 설치	행안부 등	지속추진
5	해외 농업개발 시범사업방안 마련	농식품부	12. 31일
6	해외 선물시장 및 물류관련 전문인력 채용·양성	농식품부	6. 30일
7	수입 곡물의 국내 대체생산 확대방안 마련	농식품부	6. 30일
8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병행수입 활성화	복지부, 식약청	12월중
9	국내·외 가격차 조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소비자원	5. 31일
10	품목별 수입단가 공개	관세청	5. 20일
11	가격 품질테스트 정보 생산	소비자원	8. 31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 2008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

* 이 자료는 2008년 4월 25일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임
 - 금번 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둘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전략
 - ② '08~'12 나라 살림살이 규모·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③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 ④ 예산효율 10% 제고방안
 - ⑤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10여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등
- 이번 회의가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다른 점을 말씀 드리자면
 - ① 회의 명칭을 종전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서 금번에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로 변경하였음

- 이는 종전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재원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 앞으로는 재원배분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 ② 논의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는세출예산의 배분 중심이었으나 금번에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 재정의 전 과정에 걸쳐 논의를 하게 됨
 - 이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을 모두 보아야 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③ 회의 진행도 종전에는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반면, 금년에는 재정효율 10% 향상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토의가 되도록 하였음
 - 특히 공사비 절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구체적인 공사비 절감방안 발표는 전 부처로 공사비 절감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08~'12 국가 재정운용계획(시안)을 마련하고 '09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예정임(4월 말)

-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8~'12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9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10월)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 '08. 4월 말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 '09년 예산편성 지침 및 지출한도 통보
• '08. 5~6월	각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09예산 요구안 자율 편성
• '08. 6월 말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09예산 요구안 제출
• '08. 7~9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보완 ⇒ '09정부예산안 및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 '08. 10. 2	'09정부예산안 및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요

모든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재원투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행사

1 개최 의의

- ①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전략 마련
* 『감세와 효율』, 7% 성장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틀 마련
- ②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성장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 논의 및 세입·세출의 규모 설정
- ③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

2 회의의 특징

- ①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들 간의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벗고 국가재정운용에 대

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 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

3 그동안의 회의 개최 경과

- Top-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04년 도입·현재까지 4차례 개최

-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04. 6. 19
-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05. 4. 30~5. 1 (이틀간)
-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06. 4. 22~23 (이틀간)
-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 '07. 4. 14

외국의 재정전략회의 사례

■ 스웨덴

-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각 합의를 통하여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12월)	(1~3월)	(4~8월)
• 재정여건 점검 • 예비 회의	→ • Spring Fiscal Plan (3개년 재정운용계획) •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 1차 내각합의	→ • Budget Bill (1개년 예산편성) • 2차 내각합의

• 내각 합의 방식

- 주말을 활용하여 수상 별장에서 합숙, 재원배분 안전에 전념
- 「지출총액→분야별 한도→부처별 한도」 순으로 3단계 합의, 총액 내에서 각료간 제로-섬 형태로 경쟁

■ 네덜란드

- 집권정당연합의서(Coali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5개년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
-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4·7·8월 등 3차례 개최(각각 1일간)

■ 영국

- 3개년 재정운용계획(Spending Review)을 매 2년마다 수립
- 내각 합의방식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결정, 이의 제기시 PSX를 구성
(Public Service Expenditure Committee, 위원장 : 재무부 장관)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이 자료는 2008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에서 발표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향후 재정운용 방향

I. 그간의 재정운용 내용

①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위기 극복, 복지 분야 지원 확대

- ('97년 이전) 과거 빈곤탈피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육성에서, 농림·SOC 등 경제예산으로 재정의 중점 변화
- ('97년 이후) 금융구조조정 등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② 최근 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 빠른 속도의 복지지출 확대에 의한 비효율성 발생
 - 재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지제도가 동시에 도입
- *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07년 도입 결정)
- 복지전달체계 구축 미비로 지출성과 제고에 한계
- 적극적인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약화
 -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보장

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4~'06년 동안 적자 지속

	'03	'04	'05	'06	'07
통합재정수지(조원)	7.6	5.2	3.5	3.6	33.8
관리대상수지(조원)	1.0	△4.0	△8.1	△10.8	3.6

• 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165.3조원 증가하여 '07년 말 298.9조원 수준

	'03	'04	'05	'06	'07
국가채무(조원)	165.7	203.1	248.0	282.8	298.9
(GDP 대비, %)	(22.9)	(26.1)	(30.6)	(33.4)	(33.2)

II. 주요 재정운용 방향

1. 새 정부 비전과 국정지표

- ◆ 비전 : 선진 일류국가 건설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 ◆ 5대 국정지표
 - ① 섬기는 정부
 -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 엄격한 법질서 확립
 - ② 활기찬 시장경제
 -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과 공공성의 조화
 - ③ 능동적 복지
 -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 ④ 인재대국
 -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인재 유치
 - ⑤ 성숙한 세계국가
 - 비핵·개방·3000 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 新아시아 비전 외교, 한반도 경제공동체

2. 국정지표 달성을 위한 10대 재정운용전략

(1) 국정지표 : 섬기는 정부

① 절약과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예산편성→집행→사후평가」 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관리 강화

② 공기업 민영화와 국유재산 활용가치 제고

- 민간의 창의와 시장경쟁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정비
- 민간에서 공급가능한 기능을 가진 기관은 민영화, 민영화가 어려운 기관은 경영효율화 추진
- 기업경영 관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운용 효율화 추진

③ 재정운용의 자구 노력과 책임성 강화

- 재정지원에 상응한 민간의 자구 노력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지원비율을 자구 노력과 연계
- 교부금·보조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④ 국가채무 관리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년 내 30% 이하로 관리
- 국민연금 등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

(2) 국정지표 : 활기찬 시장경제

⑤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 민간의 자율·창의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능력을 제고하되, 재정은 대규모 기술개발(R&D), 창의적 인재육성 등 시장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

- 「성장-고용-복지」를 연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⑥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조세 및 재정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 수준 경기 뒷받침
-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⑦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제고

- 경제활성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감세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세입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
- 조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세무행정 개선을 통해 납세순응비용 최소화

(3) 국정지표 : 능동적 복지

⑧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일을 통한 복지), 등록금 부담 완화(교육을 통한 복지) 등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수 방지

(4) 국정지표 : 인재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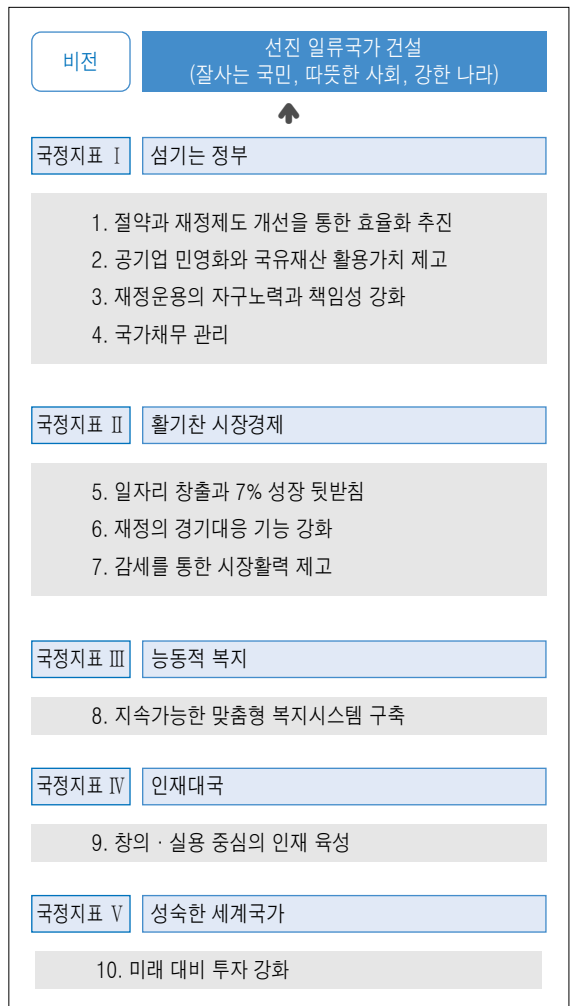
⑨ 창의·실용 중심의 인재 육성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 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실용인재 육성 등 중점 지원

(5) 국정지표 : 성숙한 세계국가

⑩ 미래 대비 투자 강화

- 해외자원 확보,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치안·식품·재난 등 안전성 확보, 문화강국 실현, ODA 등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지원 강화



200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재정운용 여건

① 대내외 경제 여건

- 금년에는 미국경제 둔화, 달러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나, '09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08년 중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09년 이후 회복세 예상
- '09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투기자금 유입 등의 문제가 완화되면서 다소 하락할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경제	4.9	3.7	3.8
(미국)	2.2	0.5	0.6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08.4월)

- 국내 경제는 금년 2/4분기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경기를 제약하여 '08년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성장 흐름 예상
- '09년 이후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고용창출로 소비·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② 세입·세출 여건

-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세 등의 요인으로 '09년에 다소 어려울 전망
- 국세수입은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증가율 전망
-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이 예상되나, 국유자산 운

용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라 추후 확대 가능성

- 세출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 '08년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 법정지출의 확대 등 신규 지출확대 소요 증가
- * 보육사업 추진방식,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 예산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지출최소화 방안도 병행 추진

2. 자원배분의 기본방향

기본방향

- ◆ 성장동력 확충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 민간의 자율·창의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서민생활안정 적극 지원
-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 교육기회 확대·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지원방식 개선·낭비요소 제거 등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 자원, 기후변화, 안전, 문화 콘텐츠, 글로벌 경제협력 등 선진 경제의 인프라 확충 지원

①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 R&D 분야는 기초원천연구, 융·복합 및 미래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정과제 및 경제성장능력 확충을 지원하되,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비효율 방지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산업 중점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신재생에너지기술·해외자원 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등 중점 지원
- 정보화 분야는 기상예보시스템 확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보보호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강화

- 통일·외교 분야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자원·에너지 확보 강화 등을 위한 실용 외교 추진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성과관리·평가시스템 운용과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 건전성 제고에 중점

②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위주로 중점 지원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
- 교육 분야는 영어공교육 등 학교교육 내실화, 대학의 연구력과 자율성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 체제구축에 중점
-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환경성 질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자연·환경보호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 문화·관광 분야는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문화지원 확대, 관광·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적 관광중심지 육성에 중점

③ 국가와 사회 안정을 통한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

- 국방 분야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방개혁 2020」 과제를 보완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법질서 확립,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해양방제 등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이 자료는 2008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에서 발표한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본 자료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협약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대응 현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1.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이, 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3. 외국의 인프라 구축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I.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이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의 38%가 최우선의 제로 선택('07. 1)
 -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 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 요인으로 지목
- 교토협약 이후의 Post-2012체제 논의는 EU 주도의 “포스트 교토협상”(기존 교토체제 확대)과 미국 주도의 “주요국 회의”(기존 교토체제와 다른 방식)로 대별
 - Post-2012 체제논의를 위한「발리로드맵」 채택 ('07. 12)

-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1 국가의 경우 '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확인
-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Post-2012 목표 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II.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의 '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억 CO₂ 톤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1.7% 차지 (OECD 국가 중 6위, 세계 10위)
 - ※ 주요배출국 : 미국 21.8%, 중국 17.8%, 러시아 5.8%, 일본 4.6%, 인도 4.1%
- '90년 대비 98.7% 증가했으며, 획기적 감축노력이 없을 경우 '20년 배출량은 '05년 대비 37.7% 증가 예상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OECD와 비교)

배출량 관련 지표	우리나라	순위	비고
배출량('05)	5.9억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9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05)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임에도 교토의정서상 Non-Annex I 국가로서 제1차 이행기간 중('08~'12년) 감축의무 미부담
 - 그러나, 제2차 이행기간('13~'17년)에는 감축의무 대상국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 ※ 온실가스 배출량(세계 10위)·배출 증가율(OECD 국가 중 1위) 등을 근거로 주요 기후변화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목
 - ※ OECD 국가 중 제1차 이행기간 중 감축의무 면제국은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임
-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
 -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¹⁾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07)
 - 기후변화 관련지표를 포함한 WEF의 EPI²⁾ 순위 하락
 - ※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순위(149개국) : 42('06)→51('08)

III. 외국의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사례와 시사점

① 관련특별법 제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영국, 일본 등)

- 영국의 'Climate Change Bill' ('07)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부처 특성에 따른 감축목표치를 할당하여 달성을 의무화
-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98)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 배출량 공표 의무 등을 규정
 - ⇒ 기후변화대책의 종합적·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 검토 필요

② 탄소세 도입 등 별도의 재원대책 마련(독일, 영국 등)

- 유럽 각국은 에너지 소비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 또는 기후변화부담금 도입
 - ※ 독일은 '99년에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세(Eco-Tax : 석유세, 전기세) 도입
 - ※ 영국은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을 도입('01)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기후변화부담금의 80%를 면제
- ⇒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개편 필요
- ⇒ 현행 산업지원형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환경친화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개발·환경시설 투자 등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행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운용방안 검토 필요

1)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NGOs 모임
 2)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격년)하는 지수로 기후변화 관련지표는 총 38개 중 온실가스배출량 변화 등 8개

③ 대중교통 이용 및 녹색교통 활성화(프랑스 등 EU)

- 네덜란드, 프랑스(Velib) 등 북구유럽은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력한 리더십 등을 통해 녹색교통정책을 지속 추진

※ 자전거 보유율 : 독일(74%), 네덜란드(75%), 일본(56.9%)
 ※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 : 독일(26%), 네덜란드(43%), 일본(25%)

- 프랑스는 CO₂ 배출 할인·할증제³⁾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형차 선호를 적극 유도

※ 경차(800cc) 비중(%, '06) : 한국(6.3), 일본(32.7), 프랑스(34), 이탈리아(38)

⇒ 기존 도로에 보행량·자전거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행·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연계성 강화, 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 자가용 이용 억제(차고지 증명제 등), 소형차 이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④ 탄소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EU, 미국 등)

-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⁴⁾) 등 청정기술개발보다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적펀드 운영
- 비자발적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미국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차거래 및 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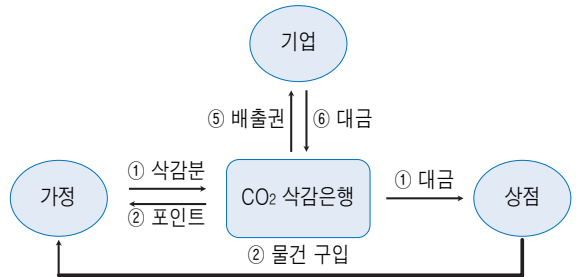
※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 EU(ETS), 미국(CCX, 개방형), 호주(NSW), 싱가포르(ACX)

⇒ 신성장동력 창출 및 탄소시장 확장('10, 150조원)

에 대비하여 탄소펀드 등 에너지펀드 확대, 배출권거래 전문회사 도입,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⑤ 민간의 자발적 CO₂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일본)

- 일본은 CO₂ 삭감은행⁵⁾, 친환경대출⁶⁾(미쓰이·SMI 토모은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CO₂ 감축 노력 유도



• 참가 : 3,000세대, 20~30개 기업
 • 거래 단가 : CO₂ 1kg당 5엔(약 44원)

※ 일본 CO₂삭감은행 작동 원리(자료 : 일본 교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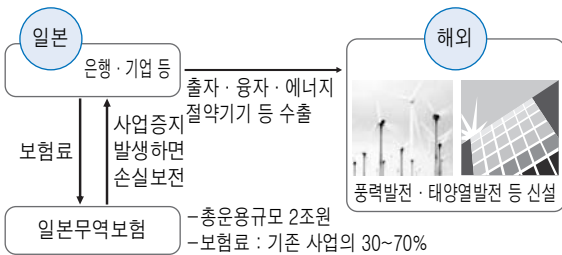
- ① 가정 : CO₂ 삭감량을 은행에 신고
- ② 은행 : 가정의 전기·가스 절약분을 확인 후 환경포인트 지급
- ③ 가정 : 환경포인트로 상점에서 물건 구입
- ④ 은행 : 상점에 물품대금 지급
- ⑤ 기업 : 은행을 통해 가정의 CO₂ 삭감량(배출권) 구입
- ⑥ 기업 : 배출권 대금 지급

⇒ 정부·에너지관련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자동차의 CO₂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 이하 차량은 차값을 깎아 주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프, '08)
 4)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의무감축 미부담국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
 5) 가정에서 CO₂ 배출을 줄인 만큼 은행으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고 그 포인트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6) 태양열 주택 등 에코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주는 상품

-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⁷⁾을 체결한 공기업이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여 목표를 달성
 - 일본은 해외환경산업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은행·기업 등의 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지구환경보험 도입
- ※ 일본 환경산업 시장 규모 : 59조엔('05)→83조엔('15)
- ※ 지구환경보험⁸⁾ 작동 원리(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 북한 산림녹화사업 등에 적용 가능 검토 필요



- ① 적용대상 : 해외 환경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와 기업
- ② 적용분야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최첨단 석탄화력 발전
 - 풍력·원자력 발전소 등 에너지 절약형 발전 설비 및 중개사업
 - 해외 산림사업
 - 소비전력량이 적은 가전제품 수출산업 등
- ③ 목표 : 환경산업 성장의 인프라 구축

⇒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해외 환경산업(CDM 포함) 진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 검토 필요

7)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는 한전 등 공기업이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정부와 협약 체결('06~'08년중 한전 및 6개 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총 1조 2,613억원 협약체결)

8) 일본무역보험은 보험자산 운용총액 14조엔의 15%(약 2조엔, 한화 18조원)을 지구환경보험으로 활용할 방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이 자료는 2008년 4월 2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07. 12. 31 공포) 및 시행령('08. 2. 22 공포)에 이어 동 시행규칙 개정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08. 4. 29. 공포 ·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2)

- 종전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만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던 것을
 - 국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OEM방식)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 *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득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15%(소기업 30%) 감면
- * 수도권 내 소기업 : 소득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감면

※ 적용시기 : 2008사업연도에 제조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대구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 (주)○○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번 조세특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제제조업에 해당, '08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

2. 문화산업 관련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 허용(§7)

-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예: 게임개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등)을 시키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 허용

* 지금까지는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대학,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훈련비만 R&D비용세액공제 허용

※ 적용시기 : 2008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주)○○는 소속직원 30명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교육훈련을 위탁하고 위탁훈련비로 3천만원의 지급, 이번 조세특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는 3천만원의 15%인 45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3의2, 별표8의6)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주)○○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이 규제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리콘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제조설비에 1백억원을 투자.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는 1백억원의 10%인 10억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정 (§13의3)

- 한미 FTA 등에 대비하여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 예: 공기조절설비, 자동화관리시스템, 포장설비, 밸리데이션 측정장비, 실험·분석장비, 공장건물 등

※ 적용시기 : 20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주)○○ 제약회사는 한미 FTA에 대비하여 새로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제조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려 공장 신축, 자동화관리시스템 등 약 1백억원을 투자.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약회사는 1백억원의 7%인 7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5. 금지금(金地金)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 (§48의4)

- 금지금*(金地金) 거래의 투명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도입('07. 12. 31)하여 '08. 7. 1부터 시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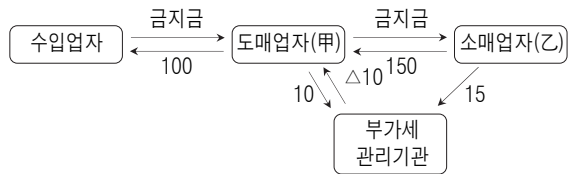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 동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금지금 도매업자가 현재에 비해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수수하지 못함에 따른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시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당해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적용시기 : '08. 7.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례) 금지금 도매업자(甲)가 수입업자로부터 100원짜리 금지금을 매입하고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세 관리기관에 110원(금값100+부가세 매입세액 10원)을 입금한 후, 동 금지금을 소매업자(乙)에게 150원에 다시 파는 경우 소매업자(乙)도 금거래계좌를 통해 관리기관에 165원(금값150원+부가세 매출세액 15원)을 입금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기관은 도매업자(甲)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10원)을 즉시 환급



금지금 매입자 납부 특례

◇ (도입배경)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

- 현재는 금지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신고기간 중에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 매출세액 : 매출시 매입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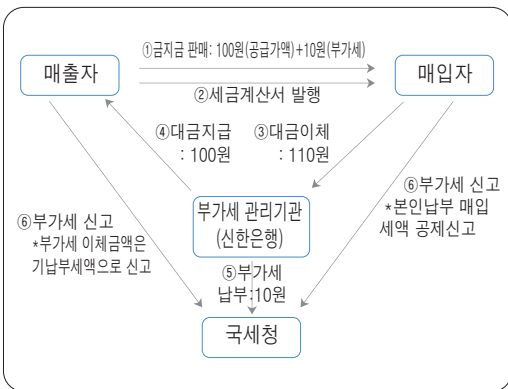
** 매입세액 : 매입시 매출자에게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 이에 따라 밀수금 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도주)하는 탈세(소위 "세금폭탄")가 만연

〈무자료 탈세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 거래〉



◇ (제도 내용)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



◇ (기대효과) 금지금 거래가 투명화되고 탈세방지로 세원이 양성화되어 귀금속산업의 발전에 기여

6. 8년 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내 양도규정 완화(§27)

-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 내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보상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 양도하더라도 예외 허용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 이 자료는 2008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발표한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는 한편,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조세체계의 효율성·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R&D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07년말 현재 총 219개, 22.7조원)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면은 정비하기로 하였음
- 특히, 조세감면을 민간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하여 감면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 연장('08년 말→'09년 말)은 숙박료 인하와 함께 추진하여 서비스 수지 개선과 가격 경쟁력 향상 유도

- 또한, 감면제도 중 (i)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 (ii)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감면(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등 35개), (iii) 감면 규모가 연간 1천억원 이상인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4개)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8. 5. 31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08. 7.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2008년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I. 2008년도 조세정책 기본방향

-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임
 - 규제완화·감세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
- 이에 따라 금년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 ① 경기회복·지속성장을 위해 세계 전 분야에 걸쳐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
 - ②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넓은 세원”을 지향하여 과세기반 확충

- ③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효율화 추진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의 획기적 감축” 추진

- ▶ 이를 위해 국제기준·조세원리에 맞도록 “근본적 세계개편”을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상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34개) 외에 모든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비과세·감면의 타당성 검토

II. 최근 조세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조세감면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

-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감면 규모는 증가 추세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비과세·감면 증가율	7.2%	18.9%	4.4%	9.9%	6.6%	6.4%

②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로 재정운용에 차질 발생

-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각 부처의 조세감면 신설 건의 및 의원입법안 급증
-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 없이 기존 감면의 존속·확대만 건의

③ 복잡한 조세감면제도로 인하여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가 적지 아니한 수준

-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초래

④ 지원대상이 포괄적인 단순보조금 성격의 조세감면이 많아 기업의 투자·R&D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못함

III. 2008년 조세감면제도의 운용방향

① 기본 방향 :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근본적 세계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일몰시한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감면제도가 검토 대상
 - 지원타당성·실효성이 낮은 등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축소 원칙
 -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지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
 - R&D,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

■ 인하되는 세율에 대응하여 감면수준을 재검토

-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 검토

② 조세감면제도의 구체적 운영 지침

가. 중점 검토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 모든 조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되,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강화·축소·폐지 등 개선 여부 결정
-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
 - 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34개 감면

- ②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도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환경보전 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35개 감면
- ③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
 - 농어업용 면세유,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 득공제 등 24개 감면

나. 타당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 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감면제도 정비
 - 국제적 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제도의 우선 정비
 - 지원대상·목적이 포괄적이어서 기업의 투자·지출 의사결정에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단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 정비
- 2) 실효성 없이 납세협력비용만 초래하는 감면제도 정비
 -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 감면대상·요건 등이 매우 복잡해서 조세체계를 왜곡하고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하는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의 축소·폐지 추진
- 3) 조세지원과 재정지원간 효과성 검토
 - 조세감면보다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 폐지·축소

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 유지

- 1) R&D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장기적 성장동력 창출 지원
 - 현행 지원세제가 실제 R&D투자로 내실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

안을 강구하되

-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쟁국제도 등을 감안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결정
-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지원

라. 조세감면 신설 통제 및 철저한 사후관리

-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폐지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신규 감면 신설을 원칙적으로 불허
- 신규감면 요청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판단자료로 이용
- 조세감면은 민간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 조세지원 전에 민간업계의 자구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감면 여부 및 감면수준 결정
- 조세감면 조치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조치와 package로 추진

IV. 향후 추진일정

- ◇ 조세감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
- 동 계획은 조세감면의 기본적인 정비방향으로서 각 부처가 감면건의 등에 사용
- 기획재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8. 5. 31까지 각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08. 7.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 2008. 5월말 : 각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조세감면 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접수
- 2008. 6월말 : 평가·분석 완료
- 2008. 7월말 : 관련부처 등과 실무협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확정
- 2008. 9월말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2008년 일몰도래 감면제도 현황

번호	조문	조세지원 내용
1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2	§7의2	【기업의 어려움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외사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결제시 0.3%공제 (31~60일은 0.15%)
3	§1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 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10%)
4	§23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80% 과세이연】
5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6	§33②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7	§43의2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한국농촌공사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분할 균등 익금산입
8	§60	【공장의 대도시외 이전시 과세특례】 공장 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 익금 산입
9	§61	【법인본사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특례】 양도차익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10	§63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시 5년 100%, 2년 50% 감면
11	§63의2	【법인공장,본사 수도권외 이전시 감면】 수도권외 이전시 5년 100%, 2년 50% 감면
12	§87의5	【선박투자회사 액면 3억원 이하 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13	§88의2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60세이상 노인(여자55세), 장애인 등 3천만원이하
14	§88의4 ⑨⑩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의 액면 3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 '09년부터는 1,800만원
15	§8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 1인당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9% 저율과세
16	§9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등】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은 5% 저율 분리과세
17	§91의4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의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제도 내역

번호	조문	조세지원 내용
18	§92	【복권 당첨소득 등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 * 당첨금 3억원 초과분은 30% 분리과세
19	§91의5	【부동산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99의4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과세특례】
21	§104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2	§104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3	§105 5,6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사료 등) - 어업용 기자재(어구·어망) 영세율 적용
24	§106 ①4의2 ② 9호	【공동주택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주택관리용역,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25	§106의4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
26	§108의2	【고속철도운영자산에 대한 VAT 매입세액공제】
27	§118 ①10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
28	§122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상당액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의 5% 상당액 * ①, ② 중 선택하여 적용
29	§140⑥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0	§55④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31	§74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32	§91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3	§117① 3.4.5.1 0	【증권거래세의 면제】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
34	§136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

<2006년 신설 조세감면>		
번호	조문	조세지원 내용
1	§8	【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수증시 일시상각총당금 산입】 대기업소유 사업용자산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기증자 손금산입, 수증자 익금불산입
2	§10의2	【연구개발관련출연금 과세이연】 연구개발목적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이연
3	§12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등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감면
4	§33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 세액감면】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이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5	§46의4	【자가물류시설양도차익 분할익금】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6	§46의5	【물류사업 분할후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분할 후 물류 전문법인과 합병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7	§46의6	【물류법인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받은 주식 이월결손금 3% 이상인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8	§7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전액을 감면
9	§85의2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이연】 내국법인은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거주자는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10	§85의3	【기업도시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시 총당금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시 토지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총당금 계상
11	§85의5	【보육시설용 토지등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인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개인은 대체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12	§91의6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비과세】 해외자원개발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액면 3억 원까지 비과세, 3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13	§91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배당소득 저율과세】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 5% 분리과세
14	§104의12 5,6호	【서비스업등에 대한 종부세 저율과세】 관광·휴양업 등에 대해 200억원 초과시 0.8% 세율 (200억원 이하는 재산세만 과세)

<2007년 신설 조세감면>

번호	조문	조세지원 내용
15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7% 세액공제
16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17	§30의6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18	§63의3 ①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세액공제】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도 R&D 세액공제 허용
19	§63의3 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설비 7% 세액공제
20	§77의2	【공익사업을 위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21	§85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22	§85의7	【공익사업 수용등 공장이전시 양도세 분할납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23	§86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공제,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
24	§91의2 ②	【간접투자를 통한 국외주식 양도차익분배금 과세제외】 간접투자기구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 과세제외
25	§91의8	【공익기부투자신탁 배당소득 기부금 지출시 비과세】 공익기부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부분 배당소득 비과세
26	§104의 13	【향교·종교단체 부동산 실소유자에 중부세 과세】 중부세 과세기 실소유자인 개별향교·종교단체별과 과세
27	§104의 1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 세액공제
28	§104의 15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금액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9	§104의 15②	【해외자원개발보조금으로 투자시 총당금 과세이연】 보조금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자신 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30	§104의 16①	【대학 부동산등 대체취득시 분할익금】 양도차익에 신규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31	§104의 16④	【학교법인인 출자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산입】 대학이 전액 출자하여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
32	§106의4 §122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금사원자간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 금거래계좌 이용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당해연도 익)
33	§106의 5	【고공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고공 취득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34	§122의 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신용카드 가맹, 복가부기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35	§136	【문화접대비 추가손비 인정】 공연·전시·운동경기 입장권 등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손비 인정

감면규모 1천억원 이상인 감면제도 내역

번호	조문	조세지원 내용
1	§6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2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3	§1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와 총지출액 15% 중 선택 대기업 :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40%와 총지출액 3~6% 중 선택
4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5	§69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거주자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6	§70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대체취득한 자(신·구농지 모두 3년 이상 자경)의 양도차익 100% 감면(한도 5년간 1억)
7	§72	【농협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협등에 대해 (당기순이익 - 손금불산입된 기부금·접대비)의 12% 저율과세
8	§73 (법인세법 §24)	【기부금 손금산입】 법정기부금 75%, 특례기부금 50%, 지정기부금 5% 손금산입
9	§88의2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60세이상 노인(여자55세), 장애인 등 3천만원이하
10	§89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 1인당 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9% 저율과세
11	§89의3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비과세 * '09년까지 비과세, '10년 이후 5% 과세, '11년 이후 10% 과세
12	§105① 1호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3	§105① 3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4	§105① 5,6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사료 등) - 어업용 기자재(어구·어망) 영세율 적용
15	§106의2 ①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면제

번호	조문	조세지원내용
16	§108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수집자 취득가액의 8/10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17	§117①	【투자신탁에 속한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투자신탁 가입자 증권거래세 면제
18	§121의 2 §121의 4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또는 외국인투자지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등 소득·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19	§121의 3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자본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등 면제
20	§126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 20%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21	소득령 §25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 이자소득 비과세
22	부가세 법 §32의2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최종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 공제
23	개소세법 §1③ §19의2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세】 내국인 저율과세(3,500원), 외국인 면세
24	개소세법 §18 ①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병원, 택시업계, 렌터카업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음영부분은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 행안부,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재정상태 분석 -

* 이 자료는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에서 발표한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재정상태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에 발표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는
 - 2007년 1월부터 전 자치단체에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조사한 재정현황의 총괄집계자료로서, 자치단체에 먼저 도입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최초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 각 자치단체는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05~'07년) 기초재정상태보고서 확정
 - ※ 국가는 국가회계법 제정('07. 10)을 통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09년부터 시행 예정
 - 동 기초재정상태보고서는 법(지방재정법)에 의거 금년 8월에 전 자치단체에서 일제 공시되는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의 핵심이 되는 기초자료로써, 이의 분석을 통해 전 자치단체의 자산·부채 유형별 현황('06. 12. 31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 재무보고서 구성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분석 결과,
 - 2006년 말 현재 기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794조 1,874억원이며, 총부채는 총자산의 3.7%인 29조 2,606억원으로 나타났다.
 - 전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본청)의 자산이 111조 7,319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27조 2,448억원)의 49%에 달하는 규모이다.
 - 반면, 인구 수 및 세입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유사하고, 면적은 더 넓은 경기도(본청)의 경우 자산이 26조 290억원(도 총자산규모 129조 2,079억원의 20%)으로 서울시의 1/4 수준이다.
 - 이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평균공시지가가 도보다 더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도 넓어 소유자산의 범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 특별시·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시민회관,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 단위에서는 시·군 사무(특·광역시 자산)도 자산, 자치구 자산(시·군 자산)
 - ※ 평균공시지가('06년 기준) : 특·광역시(72만원), 도(24만원), 시(31만원), 군(6만원), 구(103만원)
 - 시 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16조 4,554억원)가 공시지가가 높고(203만원, 시 평균 31만원의 6.5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고,

※ 시 단위 자산규모 최소단체인 충남 계룡시 (4,874억원)의 33.8배

- 군·자치구 단위에서는 충북 청원군(2조 2,601억원)과 서울 강남구(4조 4,103억원)의 공시지가가 높고(청원 9만원, 군평균 6만원/강남구 738만원, 자치구 평균 103만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많아 자산규모가 최대였다.

※ 청원군은 청주시에 인접(대부분의 시설이 청주시 내 위치)한 관계로 평균공시지가가 타 군에 비해 높음

• 부채의 경우 경기도(본청)가 3조 5,048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2조 3,670억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1조 9,658억원(83%)은 기초자치단체에 용자

⇒ 이 부분은 채권으로써 자산(투자자산)에도 반영

- 일반적으로 특·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의 영향으로 시·군·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 특·광역시 단위에서는 부산광역시(2조 8,552억원)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지하철,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 관련 차입금(1조 3,818억원)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고,

- 시 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5,888억원)가 군자매립지(시화지역) 토지연부매입 일반미지급금(4,900억원)으로 인해 부채 금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 군 단위에서는 전남 무안군(713억원)이 기업도시 조성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682억원) 영향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송파구(418억원)가 퇴직급여충당부채(165억원), 토지매각 선수금(59억원) 등의 영향으로 부채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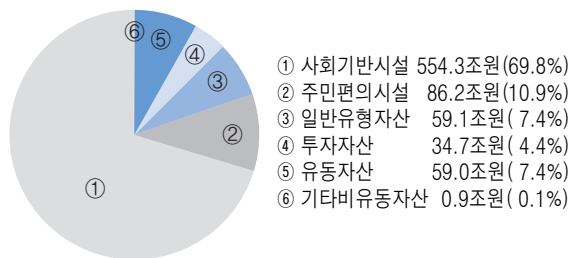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최대·최소 단체>

(단위: 억원)

구분	자 산				부 채			
	계	평균	최대	최소	계	평균	최대	최소
총 계	794조 1,874	3조 2,284			29조 2,606	1,189억		
특별시·광역시	227조 2,448	32조 4,635	111조 7,319 (서울특별시)	5조 5,197 (울산광역시)	10조 929	1조 4,418	2조 8,552 (부산광역시)	6,142 (울산광역시)
도·특별자치도	129조 2,079	14조 3,564	26조 290 (경기도)	7조 6,814 (충청북도)	9조 1,436	1조 159	3조 5,048 (경기도)	5,360 (전라남도)
시	254조 2,940	3조 3,906	16조 4,554 (경기 성남시)	4,874 (충남 계룡시)	7조 2,310	964	5,888 (경기 시흥시)	51 (경기 과천시)
군	100조 665	1조 1,636	2조 2,601 (충북 청원군)	2,176 (경북 울릉군)	1조 6,126	188	713 (전남 무안군)	20 (충북 보은군)
자치구	83조 3,742	1조 2,083	4조 4,103 (서울 강남구)	1,734 (부산 중구)	1조 1,805	171	418 (서울 송파구)	56 (울산 중구)

■ 지방자치단체 자산구성의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 유형별 구성>



• 자산유형별 구성은 사회기반시설 69.8%, 주민편의시설 10.9%, 일반유형자산 7.4%, 유동자산 7.4%, 투자자산 4.4%, 기타비유동자산 0.1%로 토지·도로·건물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다.

※ 사회기반시설(도로, 하천, 상수도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서관, 공원 등),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 유동자산(현금, 보통예금 등), 투자자산(장기대여금, 공기업출자금 등), 기타비

유동자산(보증금, 무형자산 등)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포함하는데,

※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고,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부회계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공공서비스 잠재력)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총자산의 80.6%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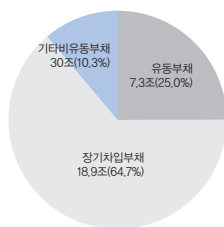
※ 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서울 강남권(송파 1.5조원, 서초 0.9조원 등), 경기남부권(성남 3.9조원, 고양 4.9조원 등) 단체의 비중이 높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서울시(69.5조원)를 제외하고는 광역에 고른 분포(10조~20조원)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 부채구성의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유형	부채액 (조원)	비율 (%)
특별시·광역시	10.1조	34.5%
도·자치도	9.1조	31.3%
시	7.2조	24.7%
군	1.6조	5.5%
자치구	1.2조	4.0%

〈부채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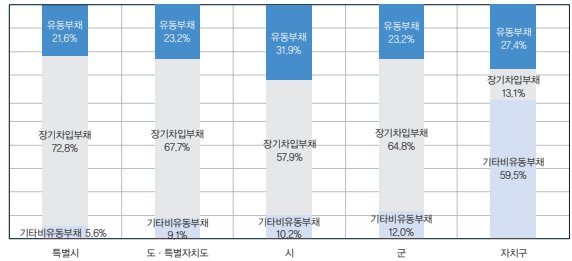


• 부채유형별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7%, 유동부채 25%, 기타비유동부채 10.3%로 지방채 등 차입부채의 비중이 높다.

※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등),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

• 자치구의 기타비유동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환경미화원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으로 추가된 부채항목



■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 재산·채무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재산(현금, 채권, 공유재산)은 복식부기 자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 복식부기 자산은 재산(현금·채권·공유재산)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기존 예산회계 재산(308조원)에 비해 486.2조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예산회계 재산 (06.12.31 기준)					복식부기 자산 (사회기반시설)	차이
재정자금	공유재산	채권	기타채권	계		
37.5조원	246.4조원	17.1조원	4.3조원	308조원	794.2조원 (554.3조원)	486.2조원

※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도로조성비·하천부속시설 등) 구축물의 자산계상이 주원인임

• 복식부기 부채는 현행 현금주의 예산회계 채무에 반영되지 않던 발생주의 부채가 추가로 계상되어 차이(11.8조원)가 발생하였다.

※ 추가된 발생주의 부채 : 유동부채(선수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및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 채무부담행위 및 공사·공단채는 복식부기부채에 불포함(채무부담행위는 주석으로 공시, 공사·공단채의 경우 추후 연결재무제표 형태로 표시 가능)

지방채무 (06년 말 순계기준)	복식부기 부채				차이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계	
17.4조원	7.3조원	18.9조원	3조원	29.2조원	11.8조원

- 지방채무 17.4조원은 복식부기 부채 중 장기차입부채에 대부분 포함(지방채무 일부는 유동부채인 유동성장기차입부채에도 포함)
- ※ 차이액 11.8조원 관련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중 기초자치단체 용자액(3.7조원)이 복식부기 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수 발생주의에 의한 차이(순계)는 이를 차감한 8.1조원

- 2008년 8월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반영된 재무보고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작성 및 공시되게 되면,
 - 기존의 정부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의 정보제공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주의·단식부기의 문제점

-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자산·부채) 파악 불가능
- 자산의 비용화(감가상각비) 개념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과 비교 곤란

- 또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제도」에서 도출되는 정보와 복식부기 정보가 결합하

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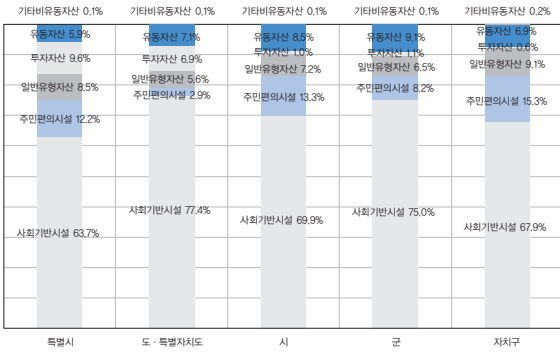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경제적 자원으로서 자산·부채 등 미래관리정보뿐만 아니라, 원가정보 등 통합재정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중심적 예산운영 유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경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지역의 재정 상황 기간비교(시계열분석) 및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결과가 제공되어 주민참여 증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화·고도화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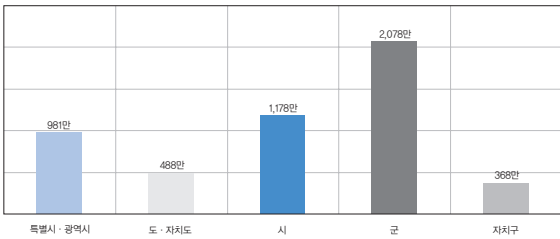
- 다양한 분석지표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무보고서 보는 방법」 개발 등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기 쉬운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살림살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진단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존 예산회계 재산 및 채무와의 정합성 제고 및 국가회계 발전을 위해,
 - 자산·부채의 범위 및 평가방법 등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조화된 일원화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 국가도 2009년 1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시행 예정

기타 자산·부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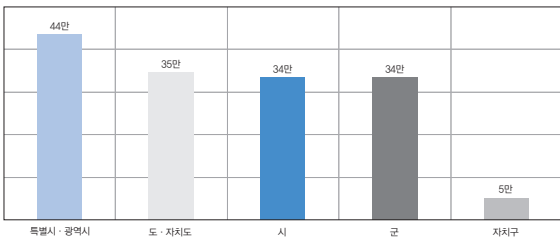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유형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자산 유형



■ 주민 1인당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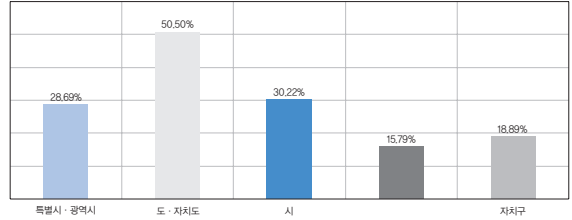


■ 재무적 안정성 지표(총부채 / 회수가능자산)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안정성은 회수가능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인 재무상환능력지표로 판단 가능

※ 회수가능자산 :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등)+투자자산(장기 금융상품 등)

총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 기업의 경우 유사지표로 유동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이 200% 이하일 경우 재무적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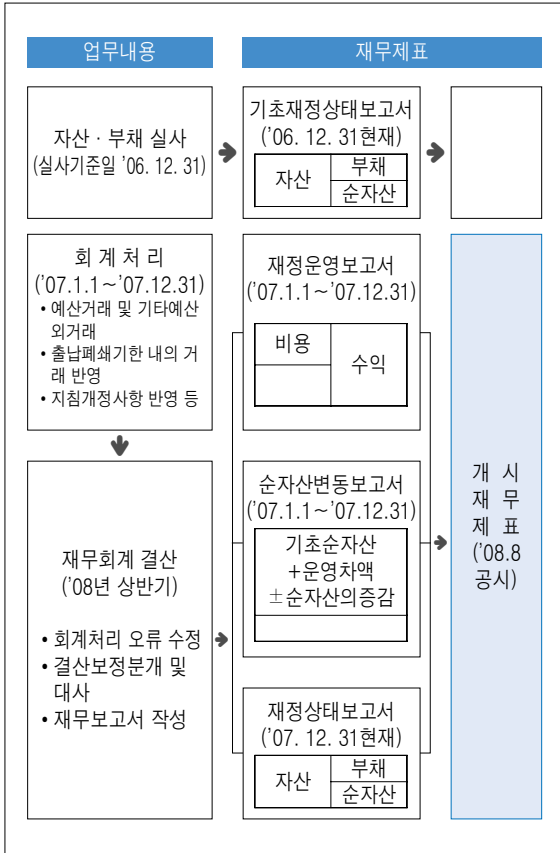
■ 자산 유형별 최대·최소단체 분석

구분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특·광역시	694,771억 (서울시)	36,259억 (울산시)	167,269억 (서울시)	6,658억 (울산시)	103,296억 (서울시)	4,015억 (대구시)	52,873억 (서울시)	5,356억 (울산시)
도	160,931억 (경기)	60,783억 (충북)	11,323억 (경기)	771억 (경북)	22,294억 (경기)	3,949억 (충북)	30,664억 (경기)	4,744억 (전북)
시	97,683억 (수원시)	2,200억 (계천시)	39,450억 (성남시)	706억 (나주시)	17,476억 (성남시)	366억 (나주시)	27,371억 (성남시)	643억 (남원시)
군	17,675억 (청원군)	675억 (울릉군)	2,375억 (청원군)	341억 (증평군)	2,429억 (달성군)	159억 (영양군)	5,875억 (평창군)	410억 (예천군)
자치구	28,794억 (서울 강남)	790억 (부산 중구)	14,691억 (서울 송파)	239억 (대구 중구)	4,636억 (서울 강남)	242억 (대구 남구)	3,594억 (서울 강남)	269억 (부산 수영)

■ 부채 유형별 최대·최소단체 분석

구분	장기차입부채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특·광역시	18,978억 (부산시)	5,029억 (울산시)	8,179억 (부산시)	279억 (대전시)	2,418억 (대전시)	43억 (광주시)
도	20,756억 (경기)	3,788억 (전남)	7,753억 (경기)	1,298억 (전남)	6,539억 (경기)	7억 (경남)
시	3,250억 (성남시)	5억 (과천시)	5,091억 (시흥시)	14억 (과천시)	1,704억 (안산시)	3억 (진해시)
군	643억 (무안군)	- (양구군 외)	203억 (연기군)	7억 (청송군)	82억 (청원군)	6억 (보은군)
자치구	176억 (인천 서구)	- (서울 중구 외)	256억 (서울 송파)	6억 (부산 중구)	232억 (서울 강남)	26억 (대전 유성)

복식부기회계 처리결과 산출물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회계 도입 사례

■ 도입사례

국가	주요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회계는 회계기준위원회(ASB)를 중심으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의 일관성 유지 발생주의에 기초한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정부는 1998년에 자원회계를 도입, 2000년에는 자원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복식부기 도입·적용, 1994년에 발생주의회계 도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SB No.34(99. 6)에서는 주·지방자치단체 통합재무보고서 발생주의 적용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 규모에 따라 2001년부터 3단계로 구분·시행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결산시 예산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할 때 조정하여 적용하는 이원시스템(Dual basis) 활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이후 자치단체는 총무성방식(종합 재정분석)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기준 도도부현(동경도 포함)과 정령지정도시는 모든 단체가, 시구정촌의 경우 50%가 대차대조표 작성(총무성에서 각 자치단체 비교·평가)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부터 중앙·지방 모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 채택 기업회계에 가장 근접한 정부회계개혁 추진(자원회계방식 적용)

■ 도입사례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체계 비교

국가	재무보고 체계	주요 특징
영국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AB)」를 통해 발생주의 기준을 모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 발생주의 결산보고 : 기획·예산·결산 연계
미국 (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통일, 펀드유형별 결산보고는 병행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 수정발생주의 결산보고 : 재무제표 + 예산실적(참고)
일본 (II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병행, 예산결산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보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 : 현금주의 결산보고 : 예산결산 + 재무결산(참고)



| 재정통계 |

- 내국세 납세 인원
-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 조세행정소송건수

0%

1. 내국세 납세 인원

(단위: 십억원, %)

연 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합계	2,873,425	3,265,978	3,309,552	3,469,139	3,686,974	3,797,717	4,022,545	4,247,012	5,036,667	5,305,832	5,867,601
직접세계	1,679,916	2,019,248	2,014,287	2,094,538	2,242,083	2,296,670	2,419,783	2,692,253	3,021,699	3,176,137	3,581,040
소득세 ¹⁾	1,606,710	1,946,982	1,945,922	2,025,774	2,164,359	2,224,349	2,341,040	2,597,759	2,893,320	3,054,785	3,364,343
종합소득세 ²⁾											
양도소득세 ³⁾											
법인세 ⁴⁾	33,775	37,185	39,406	41,284	44,677	48,437	54,453	63,080	73,522	85,454	96,629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23,381	4,103	94,147
상속·증여세 ⁵⁾	39,431	35,081	28,959	27,480	33,047	23,884	24,290	31,414	31,476	31,795	25,921
상속	1,105	1,144	1,110	1,324	1,140	1,414	1,703	2,294	2,869	3,438	2,291
증여	38,326	33,937	27,849	26,156	31,907	22,470	22,587	29,120	28,607	28,357	23,630
종합부동산세 ⁶⁾											
자산재평가세	302	430	176	125	127	187	204	150	131	94	144
원천세 ⁷⁾											
간접세계	1,193,509	1,246,730	1,295,265	1,374,601	1,444,891	1,501,047	1,602,762	1,554,759	2,014,968	2,129,695	2,286,561
부가가치세 ⁸⁾	1,168,672	1,221,161	1,269,342	1,341,398	1,420,082	1,472,424	1,577,183	1,530,308	1,988,821	2,102,203	2,253,105
특별소비세 ⁹⁾	9,083	9,392	9,650	10,341	7,284	7,436	3,935	4,689	4,443	4,376	3,937
주세 ¹⁰⁾	1,531	1,518	1,504	1,497	1,482	1,459	1,458	1,433	1,414	1,379	1,363
전화세 ¹¹⁾	1	1	1	1	1	1	1	1	3	4	4
증권거래세 ¹²⁾	14,222	14,658	14,768	21,364	16,042	19,727	20,185	18,328	20,287	21,733	28,152
교통세	-	-	-	-	-	-	-	-	-	-	-

1. 내국세 납세 인원 (계속)

(단위: 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185,504	6,542,792	6,834,534	6,937,775	6,965,720	6,903,783	7,544,891	8,294,140	10,071,031	10,293,212	10,438,451	10,543,729	11,363,123
3,760,775	3,974,365	4,210,686	3,963,364	4,065,165	3,858,952	4,084,822	4,503,500	6,001,642	6,187,984	6,381,742	6,281,285	6,958,886
3,603,528	3,793,262	4,016,608	3,747,093	3,831,236	3,614,181	3,803,616	4,164,893	4,741,118	4,849,189	4,981,162	4,855,211	5,204,127
		3,687,226	3,437,838	3,495,183	3,407,662	3,480,371	3,808,476	4,160,795	4,227,354	4,363,257	4,369,881	4,580,357
		329,382	309,255	336,053	206,519	323,245	356,417	580,323	621,835	617,905	485,330	623,770
125,413	142,084	160,071	179,316	181,835	206,354	242,652	286,352	317,154	330,187	341,866	360,821	372,393
-	-	-	-	-	-	-	-	-	-	-	-	-
31,834	39,019	34,007	36,955	52,094	38,417	38,554	51,627	56,710	56,161	104,832	64,741	90,500
2,549	3,464	2,850	2,805	3,455	2,020	1,389	1,982	1,661	1,720	1,808	-	-
29,285	35,555	31,157	34,150	48,639	36,397	37,165	49,645	55,049	54,441	103,024	-	-
											70,676	340,747
88	152	200	150	1,256	1,031	1,630	628					
								886,660	952,447	953,882	929,836	951,119
2,424,729	2,568,427	2,623,848	2,974,411	2,900,555	3,044,831	3,460,069	3,790,640	4,069,389	4,105,228	4,056,709	4,262,444	4,404,237
2,388,044	2,526,198	2,580,113	2,930,116	2,855,369	2,998,956	3,390,772	3,709,035	3,963,454	3,994,665	3,942,247	4,121,612	4,260,946
3,988	3,671	3,651	6,587	5,907	5,868	6,093	6,444	7,492	7,787	7,627	7,642	7,647
1,358	1,352	1,333	1,294	1,275	1,284	1,293	1,292	1,304	1,380	1,433	1,422	1,406
4	4	4	12	12	12	12	12	12	12	12	-	-
31,330	37,197	38,742	36,397	37,987	38,706	61,894	73,852	97,122	101,379	105,385	131,768	134,238
5	5	5	5	5	5	5	5	5	5	5	-	-

주: 1) 소득세 납세자는 원천징수 납세자가 불포함되어 있으며, 2002년 이후 통계치는 원천징수 납세자를 원천세로 인원에 포함시킴.

2)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당해년의 귀속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3)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당해년의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이며, 2004년 이전은 결정인원도 포함됨.

4) 법인세 납세자는 당해년 12. 31일 현재 가동법인을 기준으로 함.

5) 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당해년에 상속·증여세를 결정한 인원임.

6)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당해년 12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함.

7) 원천세 납세자는 당해년 이행상황신고서상의 원천징수의무자 수입.

8)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당해년의 2기 확정신고자 수입.

9) 특별소비세 납세자는 당해년의 12월분 신고자 수입.

10) 주세 납세자는 당해년 12. 31일 현재 주류 제조면허 수입.

11) 전화세는 징수의무자임.

12) 증권거래세 납세자는 당해년 귀속 신고인원의 합계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¹⁾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³⁾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²⁾	기각	경정			
1975	5,024		5,024	4,896	690	2,598	1,608	-	464	128
1980	3,959	55	3,904	3,820	1,074	1,669	1,077	-	4,105	139
1981	5,606	139	5,467	5,011	1,488	2,197	1,326	-	4,838	595
1982	8,361	595	7,766	7,899	2,352	3,652	1,895	-	14,906	462
1983	5,457	462	4,995	5,166	1,735	2,450	981	-	5,335	291
1984	4,215	291	3,924	3,923	1,473	1,945	505	-	5,665	292
1985	4,197	292	3,905	3,985	1,673	1,964	348	-	3,276	212
1986	3,667	212	3,455	3,474	1,423	1,842	209	-	1,992	193
1987	2,001	193	1,808	1,961	804	1,049	108	-	2,607	40
1988	1,621	40	1,581	1,551	545	891	115	-	2,042	70
1989	1,912	70	1,842	1,854	596	1,076	182	-	3,711	58
1990	2,217	58	2,159	2,132	692	1,246	194	-	3,408	85
1991	2,686	85	2,601	2,347	735	1,411	201	-	4,172	339
1992	2,752	339	2,413	2,652	741	1,712	199	-	4,369	100
1993	4,377	100	4,277	3,721	1,352	2,073	296	-	9,638	656
1994	3,469	656	2,813	3,369	340	2,633	396	-	14,150	100
1995	4,408	100	4,308	4,207	887	2,479	841	-	41,242	201
1996	4,344	201	4,143	4,075	732	2,125	1,218	-	40,181	269
1997	4,644	269	4,375	4,352	414	2,040	1,898	-	59,221	292
1998	4,973	292	4,681	4,593	304	2,185	2,104	-	63,513	380
1999	4,552	380	4,172	4,132	321	2,231	1,580	-	66,178	420
2000	3,979	420	3,559	3,582	253	1,663	1,666	-	112,741	397
2001	7,261	397	6,864	6,528	368	3,254	2,906	550,300	111,156	733
2002	8,685	733	7,952	7,708	689	4,098	2,921	824,600	94,169	977
2003	9,060	977	8,083	8,061	799	4,269	2,993	777,822	116,662	999
2004	9,805	999	8,806	8,963	758	4,512	3,693	969,495	144,246	842
2005	7,980	842	7,138	7,488	1,007	4,041	2,440	1,093,130	169,562	492
2006	6,835	492	6,343	6,486	946	3,658	1,882	703,704	61,765	349

주: 1)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2) 각하 건수에 작권시정분 포함.

3)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¹⁾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처리세액	감세액 ³⁾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²⁾	기각	경정			
1975	1,589		1,589	1,168	56	874	238	-	1,906	421
1980	2,761	298	2,463	2,390	273	1,428	689	-	4,327	371
1981	3,625	371	3,254	2,892	321	1,711	860	-	6,018	733
1982	5,839	733	5,106	5,085	517	3,188	1,380	-	18,343	754
1983	4,817	754	4,063	4,478	438	3,306	734	-	8,423	339
1984	3,403	339	3,064	3,074	362	2,370	342	-	6,920	329
1985	3,555	329	3,226	3,266	398	2,607	261	-	12,266	289
1986	3,714	289	3,425	3,307	361	2,749	197	-	1,813	407
1987	2,963	407	2,556	2,743	269	2,288	186	-	2,268	220
1988	2,806	220	2,586	2,386	178	1,978	230	-	8,797	420
1989	3,783	420	3,363	3,462	291	2,832	339	-	12,090	321
1990	4,206	321	3,885	3,780	285	3,203	292	-	11,841	426
1991	5,319	426	4,893	3,980	352	3,355	273	-	12,379	1,339
1992	6,468	1,339	5,129	5,908	410	5,056	442	-	14,482	560
1993	7,664	560	7,104	5,316	562	4,312	442	-	15,513	2,348
1994	9,225	2,348	6,877	8,527	485	7,012	1,030	-	35,912	698
1995	7,202	698	6,504	6,329	426	5,205	698	-	19,184	873
1996	6,350	873	5,477	5,862	398	4,685	779	-	42,939	488
1997	5,592	488	5,104	5,021	388	3,580	1,053	-	47,534	571
1998	6,132	571	5,561	5,336	407	3,544	1,385	-	97,078	796
1999	5,749	796	4,953	4,960	269	3,205	1,486	-	296,821	789
2000	2,287	789	1,498	2,054	141	1,119	794	-	175,459	233
2001	1,968	233	1,735	1,595	151	907	537	337,958	81,758	373
2002	2,073	373	1,700	1,426	104	815	507	190,205	67,632	647
2003	2,186	647	1,539	1,718	193	1,006	519	397,731	75,390	468
2004	1,889	468	1,421	1,533	171	770	592	283,396	56,755	356
2005	1,834	356	1,478	1,538	115	767	656	224,585	46,014	296
2006	1,592	296	1,296	1,387	138	805	444	223,794	63,911	205

주: 1)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함.

2)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3)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조세행정소송건수

(단위: 건)

연 도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¹⁾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취하	각하	국가승소	국가일부 승소	국가패소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973	524	325	199	228	-	-	194	-	34	296	-	-	-
1974	467	296	171	231	-	-	186	-	45	236	-	-	-
1975	330	236	94	149	-	-	109	-	40	181	-	-	-
1976	346	181	165	133	-	-	91	-	42	213	-	-	-
1977	482	213	269	173	-	-	114	-	59	309	-	-	-
1978	608	309	299	254	-	-	165	-	89	354	-	-	-
1979	759	354	405	256	-	-	152	-	104	503	-	-	-
1980	768	505	263	374	-	-	211	-	163	394	-	-	-
1981	859	394	465	265	-	-	161	-	104	594	-	-	-
1982	1,119	594	525	346	-	-	199	-	147	773	-	-	-
1983	1,671	773	898	625	-	-	360	-	265	1,046	-	-	-
1984	1,906	1,046	860	804	-	-	443	-	361	1,102	-	-	-
1985	2,157	1,101	1,056	876	-	-	404	-	472	1,281	-	874	407
1986	2,335	1,281	1,054	703	-	-	334	-	369	1,632	-	1,060	572
1987	2,845	1,632	1,213	1,283	-	-	556	-	727	1,562	-	1,032	530
1988	2,388	1,562	826	973	-	-	442	-	531	1,415	-	707	708
1989	2,360	1,415	945	998	-	-	514	-	484	1,362	-	990	372
1990	2,519	1,362	1,157	802	-	-	490	-	312	1,717	-	1,369	348
1991	2,930	1,717	1,213	901	-	-	563	-	338	2,029	-	1,552	477
1992	3,836	2,029	1,807	1,422	-	-	872	-	550	2,414	-	1,826	588
1993	3,871	2,414	1,457	1,727	-	-	1,085	-	642	2,144	-	1,448	696
1994	3,997	2,144	1,853	1,534	-	-	896	-	638	2,463	-	1,965	498
1995	4,039	2,463	1,576	1,558	-	-	1,032	-	526	2,481	-	1,976	505
1996	4,244	2,481	1,763	1,923	-	-	1,249	-	674	2,321	-	1,853	468
1997	3,750	2,321	1,429	1,888	351	30	898	112	497	1,862	-	1,493	369
1998	2,923	1,862	1,061	1,490	325	25	765	96	279	1,433	586	543	304
1999	2,696	1,433	1,263	1,069	362	15	500	65	127	1,627	997	350	280
2000	2,840	1,626	1,214	1,010	394	21	495	49	51	1,830	1,125	448	257
2001	3,062	1,830	1,232	1,157	408	33	597	45	74	1,905	1,197	505	203
2002	3,115	1,905	1,210	1,200	321	26	729	58	66	1,915	1,078	602	235
2003	3,175	1,915	1,260	1,126	344	29	636	40	77	2,049	1,210	578	261
2004	3,114	2,049	1,065	1,166	341	34	633	52	106	1,948	1,041	701	206
2005	3,245	1,948	1,297	1,259	412	36	643	49	119	1,986	1,109	646	231
2006	3,351	1,986	1,365	1,285	395	30	687	38	135	2,066	1,217	639	210

주: 1) 계류건수는 처리대상건수에서 처리건수를 차감한 것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 소득세 인하 고려 안해

조세연구원 조세정책 토론회서
“선진국 대비 소득과세 비중 낮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조세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소득과세 비중은 GDP 대비 8% 수준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기획관은 또 이명박정부의 감세 기조가 재정건전성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과 관련, 감세시 2조원에서 3조원가량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초과세수 중 7조여원이 항구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감세를 위해서는 9조~10조원이 더 필요하고, 잉여와 부족을 합산하면 결국 2조~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꾸준한 과표 양성화 노력 등으로 세수 기반을 높이면 이 2조~3조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기획관은 “하반기에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여당이 추진키로 한 소득세율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조세정책 방향이 주제가 됐던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걸린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즉 정부의 추경 추진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다수의 참석자들이 이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토론자 중 한명인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장(서경대 교수)는 초과 세수를 감세 재원이나 경기부양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교육비 보조나 사회복지, 과감한 연구개발(R & D) 투자재원, 국가채무 상환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 성장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당장 가시적인 세율인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세계잉여금은 추경보다는 조세감면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문제를 직접 타깃으로 하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서민생활이 어렵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경기부양보다는 유통세를 낮추고 관세를 낮추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부작용이 적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8년 5월 7일자)

“성장동력 확보위해 법인세·소득세 내려야” 조세연구원, 조세정책 운용방향 제안

- 초과세수 중 구조적 요인, 민간으로 돌려줘야
- 법인세 부담 OECD 7위, 감면확대보다 세율 인하
- 소득세율 인하, 납세자 비중 확대와 동시 추진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득세 납세자 비중은 높이는 반면 소득세 납세자의 한계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세제개편 동향을 보면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중시되는 조세정책으로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은 정부의 영역을 보다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단순하고 낮은 세 부담’이라는 조세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의 감소,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 효율성에 기초한 세율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4조 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에서 7조 1000억원은 납세이월(3조원), 양도소득세 급증(3조원)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증가했으나 나머지 7조 1000억원은 과표양성화 노력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전 연구위원은 “초과세수 중에서 일시적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를 통해 민간으로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에 대해 전 연구위원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증대를 위해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담은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로 OECD 평균(3.7%)보다 높고 30개 OECD 국가 중에서 7위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의 조세경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의 확대보다는 법인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시장이 형성된 EU지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도 공격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 전 연구위원은 “소득세 부담증가의 완화와 법인세와의 과세 균형을 위해 소득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납세자 비중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은 세율 변화가 없는 경우 매년 0.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이 편중된 가운데 지난해 세수는 20조 3000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전 연구위원은 “세금을 내는 사람만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계세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전 연구위원은 또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해 노동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관련 세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20% 내외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증가해 지난해 22.7%까지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의 꾸준한 증가로 지난해 28.6%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최근들어 매년 1%포인트씩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높아진 세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2008년 5월 7일자)

특별기고 감세정책 왜 필요한가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 대응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와 세금 인하로 나눌 수 있다.

정부지출 확대는 정부가 특정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세금 인하는 정부 재량이 아닌 경제주체들의 지출 결정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동일한 재원을 정부가 지출하느냐 시장의 경제주체가 지출하느냐가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를 통한 지출 확대는 조세징수와 지출 의사결정 등 정부부문의 비용이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선택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점은 투입 자원 대비 단기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세를 통한 경기대응은 반대로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으나 지출을 특정부문에 집중할 수 없는 점은 단기적인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있어 직접적 경기부양 목적과 별도로 내국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국가간 조세부담 차이 조정도 중요하다.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조세 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신규 투자지 결정과 대외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변국가와 자본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차원에서 세율 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적 관점에서 실시되는 각종 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효율성

중심의 조세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특히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법인세율 부문에서는 두드러진 인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0~2006년 OECD 국가 평균 법정법인세율(중앙정부)은 5.1%포인트(31.3→26.2%) 인하됐다. 이 기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없어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28%에서 25%로 3.0%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기업 및 자본유치의 잠재적 경쟁지역인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 그 격차를 다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내자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의 33%에서 2008년 25%로 인하했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해 자국소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주로 소득세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기부양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세정책도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000~2006년 기간 중 5.7%포인트(40.0%→34.3%) 인하됐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2000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40.0%→35.0%) 인하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아시아 주요국들과 법인세율 격차를 축소해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성장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원조정 등을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은 법인세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다. 감세정책의 성장촉진 효과가 법인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 소득세율 인하는 초과세수가 지속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수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장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008년 5월 5일자)

연소득 4000만원 넘으면, 조세부담) 재정 혜택

조세연구원 재분배효과 분석

연간소득 4000만원이 넘는 가계는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성명재·박기백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내놓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분위별 조세 부담과 재정지출 혜택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혜택

(단위 : 만원, 자료 : 조세연구원)

구분	연소득	조세부담	재정지출 혜택	순혜택
1분위	590.4	116.7	414.5	298.1
2분위	1401.0	204.5	492.7	289.5
3분위	1972.0	287.2	516.0	231.7
4분위	2468.4	379.5	573.9	200.4
5분위	2946.5	468.0	599.3	138.7
6분위	3459.4	578.7	605.4	35.1
7분위	4025.8	678.8	648.0	-30.8
8분위	4741.2	825.4	707.0	-118.4
9분위	5820.5	1008.6	722.7	-285.9
10분위	9398.4	1600.7	843.0	-757.7

분석은 통계청의 '2006년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토대로 했다. 조세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담배소비세·소비세분 교육세·주행세), 공적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했다. 재정지출은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보장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교육·보험·주택서비스 등이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30%인 8~10분위 가구는 조세 부담 규모가 더 커 손실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고, 소득 하위 60%(1~6분위)는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더 커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7분위는 가구당 순부담이 30만 8000원으로 혜택·손실 가구가 섞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소득 7분위의 연간소득이 4026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재정지출 혜택보다 조세부담이 더 큰 셈이다.

고소득층은 손실통, 저소득층은 순혜택을 보는 것은 고소득층이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 최상·최하 10%의 세 부담 상대비를 구해 본 결과 상위 10%의 소득세 부담은 하위 10%의 241.8배였고, 기타 사회보장 기여금(25.3배), 공적연금 기여금(22.9배) 등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수십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배소비세(2배), 주세(3배), 특별소비세(5.8배) 등은 격차가 적었다.

(경향신문 2008년 4월 13일자)

재정포럼

2008년 5월호 통권 제14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5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5호(통권 제14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